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306-01

##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2008. 11.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전 병 서

# 서 문

- 베트남에서는, 종전에는 외국계기업과 내국기업이 구별되어, 외국투자법, 국내투자장려법이 각각 적용되었지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투자법 및 기업법에서는 이를 통합시켜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똑같이 새로운 투자법과 기업법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증권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되는 것의 확보를 목적으로 증권법이 2007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새로운 투자법, 기업법, 증권법 및 관련 법률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35억 달러로 1위이고, 2007년 투자금액은 45억 8천만 달러로 2년 연속 베트남 투자국 가운데 최고이듯이, 베트남은 우리나라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로, 베트남에의 투자진출을 위하여 베트남의 새로운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베트남에 대한 우리 투자자에게 적절한 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 베트남의 외국의 투자에 따른 司法的 시스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및 금융관련 법제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의 분석과 함께 법령의 번역본과 원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의 종합적 분석과 체계적 인식을 통하여 우리 투자자에게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 및 개인에게 베트남 투자와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port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to provide our investors with an overview of Viet Nam.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not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Viet Nam's economy or its foreign investment formalities, but to give a general introduction and supply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our investors who are looking at potenti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country. I believe that this will be a helpful guidereport for our investors in Viet Nam.

## 요 약 문

- 베트남은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 刷新 또는 改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자유로운 시장 형성과 사유재산 보장을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후 15-20년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아울러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파산법, 지적재산법, 전자거래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여 왔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하여 온 「외국투자법」과 1998년 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투자법(No. 59/2005/QH11)을 새로운 기업법(No. 60/2005/QH11)과 함께 2005. 11. 29.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2006. 7. 1자로 발효).

□ 베트남의 새로운 투자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투자법의 목적 관련

- 투자의 자율성의 향상(예를 들어 현지 자본출자비율 30% 이상 철폐)
- WTO에의 가입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내외 격차의 시정, 즉 외국자본·내국자본이 동일한 환경 하에서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됨

▷ 투자형태 관련

- 종전 외국투자법에는 투자형태에 대하여 단독투자, 합작투자, BCC(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OT(건설-운영-양도: Build-Operate-Transfer), BTO(건설-양도-운영: Build-Transfer-Operate), BT(건설-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종전 외국투자법보다 다양한 투자형태가 규정됨
-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직접투자형태로 그 밖에도 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지분(shares)의 매입 또는 자본의 출자, 기업의 합병·매수(M&A)를 위한 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직접투자 등 다양하게 명시함(투자법 제21조 : 이하 조문만 표시)
- 기존 외국투자법에는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등 간접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제26조 제1항)

▷ 투자분야 관련

- 투자법 및 그 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에서 투자우대 분야·지역,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투자는 자유임

▷ 투자 인센티브 관련

-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행하는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음(제32조)
- 투자법 제33조부터 제37조에 걸쳐 세금, 회계, 토지사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투자증명서에 투자우대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제38조)
- 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함(제33조)
- 그리고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자본출자,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세금 우대 규정, 설비, 자재, 차량 및 그 밖의 제품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규정, 위 투자우대분야에 대한 투자시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제33조)
- 또한 투자우대분야 및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한 경우에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제36조)

▷ 등록 및 평가(심사) 체계 관련

- 국내 투자자의 경우에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소규모 투자(150억 VND 미만)의 경우에 등록절차를 면제함(제45조 제1항)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니더라도 3,000억 VND 미만 사업은 등록대상이며, 투자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를 발급토록 규정함(제46조)
- 또한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조건부 투자분야와 조건부 투자분

야가 아니더라도 3,000억 VND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조-제49조), 신청 후 30일 이내, 연장한 경우라도 최대 45일 이내에 평가(심사)를 종료하여야 함(제47조 제2항)

- 모든 외국인 투자는 등록 또는 평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외국투자자와 내국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규정과(제4조 제2항), 기존의 외국투자법과 내국투자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에 어긋리지 않음

▷ 정부보증 관련

- 정부는 중요한 투자사업(important investment projects)에 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 공급, 제품의 판매, 지급보증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규정함(제66조)

▷ 투자 프로젝트 기간 및 종료 관련

- 내국투자 프로젝트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50년 또는 베트남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연장하여 70년으로 활동기간을 정함(제52조)
-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사유와 관련, 법률위반(in case of violation of law)을 이유로 투자관리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하고 있음(제65조 제4항)

□ 200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도 동일하게 새로운 기업법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기업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법은 개인기업,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의 형태

에 따른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있음

-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자계기업은 유한회사의 형태의 회사설립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외자계기업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할 수 있게 됨
- 개인기업은 개인 1인이 기업주이며 동시에 기업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증권을 발행하지 않음(제141조)
- 1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한회사의 설립도 가능함
- 다음과 같은 기업(외자계 기업 포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9조)
  - 사업등록증명서에 기재한 분야 및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행하여야 하고, 조건부 분야에 관한 사업을 행할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조건을 담보할 의무
  - 회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록을 작성하고, 정확한 재무제표를 회계기간에 맞추어 제출할 의무
  -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
  -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 기해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그 밖의 보험제도를 시행할 의무
  -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시된 표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의무
  - 통계법의 규정을 준수한 통계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정보와 기업의 재정현황을 규정 양식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성실히 보고할 의무, 보고서 또는 신고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적시에 수정·보완할 의무
  -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자원 및 환경 보호, 역사·문화 유적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증권법, 은행법, 보험법 등과 같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중요 법령과 베트남의 외국의 투자에 따른 司法的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및 금융관련 법제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의 분석과 함께 투자법 등 관련 법률의 번역본과 원문을 제공하였다.

#### Abstract

- In recent years, Viet Nam's economy has benefited from its Government's open-door policy of 1986. With a stable political environment and its economic potential, Viet Nam i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Viet Nam has promulgated the Constitution of 1992 (amended in 2001) to strengthen legal institutions and to pave the way for its party-led economic reform.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been endeavoring to create a favorable investment environment by continuing to revise Viet Nam's legal system and introducing important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ors.
- The new Investment Law(No. 59/2005/QH11 of November 29, 2005) provides for investment activities for business purposes;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assurance of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investment incentives and preferences; state management of investment in Vietnam and of investment

abroad. The Law applies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that perform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Vietnamese territory or make investment abroad; an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investment activities.

- The new Law on Investment covers both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although its main focus is on direct investment.
  - a. Direct investment includes the following:
    - i. Setting up a wholly owned economic organization.
    - ii. Joint venture with domestic investors.
    - iii.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Transfer (BT).
    - iv. Investment in business, technological expansion.
    - v. Contributing share capital in a (newly established) Vietnamese entity (at a ratio determin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 vi. Merger and acquisition.
  - b. Indirect investment, subject to laws on stocks and securities, includes:
    - i. Investment in stocks, shares, bonds and other valuable instruments.
    - ii. Investment through securities investment funds.
    - iii. Investment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 The Law on Enterprises(No. 6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regulate the establishment forms and procedure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nd dissolution of enterprises in all economic sectors.
- The new 2005 Law on Enterprises provides a uniform legal

framework for domestic and foreign invested companies and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 a.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b. Limited liability shareholding companies
- c. (Un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 d. Private enterprises in Vietnam.
- e. Both foreign and domestic invested enterprises, i.e. enterprises established in forms (a)-(d) above.

○ Foreign investors now have more choices of legal form for their subsidiary in Vietnam which could be any of the following.

- a.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which includes:
  - i. 2-member LLC, which must have 2 and not more than 50 members.
  - ii. 1-member LLC, which is wholly owned by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 b. Limited liability joint stock or shareholding company ("SC"), which must have more than 3 shareholders.
- c. Un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hich must have at least 2 individual partners

Under the current Law on Foreign Investment, the only legal form of company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is the LLC.

# 차 례

|                                 |    |
|---------------------------------|----|
| I. 연구의 목적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1)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 1  |
| 2) New Investment Law           | 3  |
| 3) Land for Opportunity         | 4  |
| 2. 연구의 필요성                      | 8  |
| 3. 연구의 개요                       | 9  |
| II. 투자법령의 분석                    | 10 |
| 1. 새로운 투자법의 의의                  | 10 |
| 1) 입법 연혁                        | 10 |
| 2) 투자법의 구성                      | 11 |
| 3) 투자법의 적용대상                    | 12 |
| 4) 그 밖의 투자 관련 법령                | 13 |
| 2. 투자법의 주요 내용                   | 14 |
| 1) 투자법의 특징                      | 14 |
| 2) 투자의 종류 및 형식                  | 16 |
| 3) 투자정책                         | 21 |
| 4) 투자보장                         | 22 |
| 5)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 27 |
| 6)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 29 |
| (1) 투자분야, 지역                    | 30 |
| (2) 투자우대 및 지원                   | 48 |
| 7) 직접투자활동                       | 53 |

|                         |    |
|-------------------------|----|
| (1) 투자증명서 취득 절차 .....   | 53 |
| (2) 투자프로젝트 진행(전개) ..... | 64 |

### III. 외국인투자 관련 그 밖의 중요 법령의 분석 .....69

|                             |    |
|-----------------------------|----|
| 1. 새로운 기업법 .....            | 69 |
| 1) 기업법의 의의 .....            | 69 |
| 2) 기업법의 특징 .....            | 72 |
| 3) 기업법의 주요 내용 .....         | 73 |
| (1) 기업법의 적용대상 .....         | 74 |
| (2) 외자계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의무 ..... | 75 |
| (3) 회사의 종류 .....            | 76 |
| (4) 회사의 기관 .....            | 77 |
| (5) 의사결정 .....              | 79 |
| 2. 금융 관련 법제 .....           | 80 |
| 1) 금융감독기관 .....             | 80 |
| 2) 금융기관 법제 .....            | 81 |
| (1) 의의 .....                | 81 |
| (2) 금융기관 .....              | 82 |
| (3) 외국계 은행 .....            | 85 |
| (4) 은행카드 .....              | 87 |
| 3) 증권법 .....                | 88 |
| (1) 증권제도 .....              | 88 |
| (2) 증권법의 내용 .....           | 92 |
| (3) 증권의 공모 .....            | 94 |
| (4) 증권의 상장 .....            | 95 |
| (5) 증권거래시장 .....            | 95 |
| (6) 증권회사의 설립 .....          | 96 |

|                                                |     |
|------------------------------------------------|-----|
| (7) 베트남에 증권투자 .....                            | 96  |
| 4) 보험업법 .....                                  | 97  |
| 3. 그 밖의 투자관련 법령 .....                          | 98  |
| 1) 토지법 .....                                   | 98  |
| (1) 토지법의 의의 및 구성 .....                         | 99  |
| (2) 외국투자자의 토지사용권 .....                         | 101 |
| 2) 환경보호법 .....                                 | 103 |
| (1) 환경보호법의 의의 .....                            | 103 |
| (2) 환경보호법의 내용 .....                            | 104 |
| 3) 건설법 .....                                   | 107 |
| <br>IV. 외국인투자에 따른 사법적 시스템 .....                | 109 |
| 1. 분쟁해결 .....                                  | 109 |
| 2. 사법제도 .....                                  | 109 |
| 3. 법원제도 .....                                  | 110 |
| 1) 법원의 종류 .....                                | 110 |
| 2) 법원의 조직 .....                                | 111 |
| 3) 심판 .....                                    | 111 |
| 4. 법령의 체계 .....                                | 113 |
| 5. 변호사제도 .....                                 | 113 |
| 6. 법무부 .....                                   | 114 |
| 7. 투자관련기관 .....                                | 115 |
| <br>V. 투자 및 금융 관련 법제의 전망, 경제적 효과 및 우리의 대응방안 .. | 116 |
| 1. 투자국으로서의 매력 .....                            | 116 |
| 2. 투자법제의 평가 .....                              | 123 |

|                                |     |
|--------------------------------|-----|
| 3. 증권법의 평가 .....               | 125 |
| 4. 기업형태의 전환 · 재등록 .....        | 125 |
| 5. 국영기업의 민영화 .....             | 126 |
| 6. 금융정책의 전개 .....              | 127 |
| 7. 환율제도 .....                  | 128 |
| 8. 기업회계 관련 규정의 정비 .....        | 128 |
| 9. 법인세의 인하 스케줄 .....           | 129 |
| 10. 관세의 인하 스케줄 .....           | 130 |
| 11. 외국인 주택소유제도 .....           | 131 |
| 12. 외국기업의 지점 · 주재원사무소 설립 ..... | 132 |
| 13. 파산제도 .....                 | 133 |
| 14. 우리의 대응 .....               | 134 |
| 1) 투자에 있어서 과제 .....            | 134 |
| 2) 투자형태 및 회사형태의 선택 .....       | 134 |
| (1) 투자형태 .....                 | 134 |
| (2) 회사형태 .....                 | 138 |
| 3) 전망 .....                    | 139 |
| 참고문헌 .....                     | 141 |

#### 부록: 법령번역

1. 투자법
2. 증권법
3. 건설법 발췌
4. 환경보호법 발췌

#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 I.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배경

#### 1)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 베트남은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 刷新 또는 改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자유로운 시장 형성과 사유재산 보장을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음
- 이후 15-20년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하여<sup>1)</sup> 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아울러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 왔음
- 1992년 12월 베트남과 한국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sup>2)</sup> 양국 사이에 날로 발전하는 관계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2001년 8월에는 양국 정상<sup>3)</sup>이 만나서 “21세기를 향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

1) 1992년 개정 헌법은 사회주의 정치이념 하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으로(이후 2001년에 총23개 조항의 헌법 개정이 있었음-No. 51/2001/QH10) 도이모이 정책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헌법 변천 과정에 대하여는 법무부 발행의 베트남 改革開放法制 概觀(2005), 268면 이하 참조.

2) 1975년 4월 외교관계가 단절된 이후 17년 8개월만이다.

3) 1993년 5월 보 반 끼엣 총리 방한, 1995년 4월 도 무어이 공산당 서기장 방한, 1996년 11월 김영삼 대통령 방월,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방월, 2001년 8월 쩌 득 르엉 국가 주석 방한이 있었다.

-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를 무사히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향상시켜 줌
- 2007년 1월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15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sup>4)</sup>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후 베트남 시장 자체에 대하여 외부에서 우려하였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면서<sup>5)</sup> 외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개방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됨
- 2008년에도 외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한해 동안 1171건, 602억달러 투자유치로 사상 최대 기록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2008년 연초의 베트남 경제불안(높은 인플레이 및 무역적자), 하반기 국제금융 위기에 따른 투자비용 급등(환율 급등)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의 투자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5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기 때문임.

《외국의 베트남 연도별 투자 동향》(단위: 건, 백만 달러)<sup>6)</sup>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투자건수 | 723   | 798   | 833   | 1,554  | 1,171  |
| 투자금액 | 2,222 | 4,003 | 7,839 | 18,718 | 60,271 |

- 
- 4) 2006년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받은 베트남은 의회의 비준과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2007년 1월 11일 WTO 회원국 등록을 마무리 지었다.
- 5)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라.
- 무역에 관한 투자조치(TRIMS; 2007년 11월 발효) : 수출입 균형, 수출입에 대한 외자관리조치, 수출제한, 국내조달의무 등의 제도의 철폐
  - 지적재산권의 보호 : WTO 가맹시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의 실시
  - 투명성 : WTO 관련 법적 지시서에 관한 공개문서를 작성하고, 모든 법적 문서를 공개
  - 서비스업의 시장개방
    - 경영서비스, 통신, 건설, 건설 관련 산업, 유통, 의료, 보험, 교육, 관광, 환경, 금융, 오락, 운수 등 12가지 서비스 분야 가운데 11개에 대하여 시장개방
    - WTO 가맹 후 곧 의무 이행에 착수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2007년 이후 2~6년의 기간으로 실시
- 6)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줄여서 MPI)의 자료임.

## 2) New Investment Law

-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 온 바, 1987년 12월에 당시 가장 개방적인 「외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을 제정하였고,<sup>7)</sup> 그 동안 同法은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또한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민사소송법,<sup>8)</sup> 민법,<sup>9)</sup> 상법,<sup>10)</sup> 파산법,<sup>11)</sup> 지적재산법,<sup>12)</sup> 전자거래법<sup>13)</sup>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여 옴
-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하여 온 「외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과 1998년 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Law on Domestic Investment Encouragement)을 통합하여(다만, 국영기업법은 그대로 유지)<sup>14)</sup>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똑 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공통투자법(Investment Law: 이하 투자법이라고 한다)을<sup>15)</sup> 2005. 11. 29.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새로운 통일기업법

7) 개혁개방 추진을 위해서, 특히 대외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외자본이 안심하고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였고, 그에 대한 첫 단추가 1987년 외국투자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외국투자법의 제정은 1980년 헌법 제21조에서 천명한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원칙 폐기를 의미하며, 1992년 개정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가 외국 개인 및 조직이 베트남 법률에 부합하는 베트남에 대한 자본 및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원천이 되었다. 법무부, 베트남 改革開放法制 概觀(2005), 353-354면.

8) No. 24/2004/QH11(2004년 6월 15일 성립).

9) No. 33/2005/QH11(2005년 6월 14일 성립).

10) No. 36/2005/QH11(2005년 6월 14일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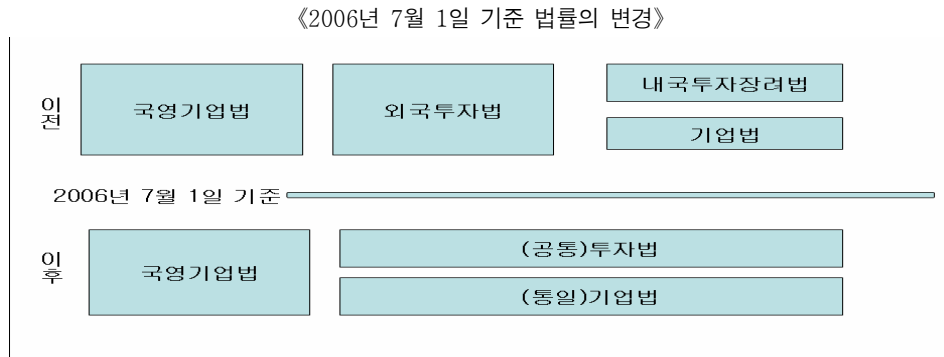
11) No. 21 / 2004 / QH11(2004년 6월 15일 성립). 이에 대하여는 이재열, 베트남 파산법에 대한 개관 : 2004년 파산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2007. 3), 117면 이하 참조.

12) No. 50/2005/QH11(2005년 11월 29일 성립).

13) No. 51/2005/QH11(2005년 11월 29일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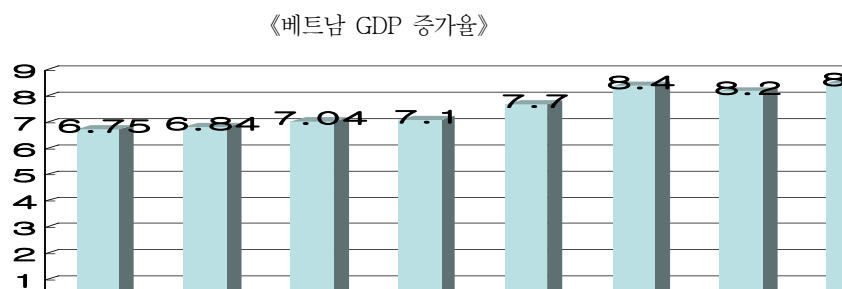
14) 한편, 베트남 대기업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2007년 국영기업의 주식회사전환에 관한 명령(No. 109/2007/ND-CP)에 따라 주식시장을 통하여 주식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환된 회사는 기업법 및 증권법에 따라 자본조달을 하고 있다. 서현제 외 2인, 베트남 기업법, 법학논문집(2008. 8), 166면. 지금까지 주식화된 국유기업의 소유 비율은 정부 46%, 고용자 30%, 외부 24%라고 한다. World Bank, Vietnam Development Report 2007.

(Enterprise Law: 이하 기업법이라고 한다)과<sup>16)</sup> 함께 통과시킴(兩法은 2006. 7. 1자로 발효)



### 3) Land for Opportunity

-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음<sup>17)</sup>



15) No. 59/2005/QH11. 새로운 투자법 제89조는 다음과 같다.

Điều 89. Hiệu lực thi hành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7 năm 2006.

Luật này thay thế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năm 1996,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năm 2000 và Luật khuyến khích đầu tư trong nước năm 1998.

16) No. 60/2005/QH11.

17) 베트남 계획투자부(MPI)는 베트남의 2008년 3분기 GDP 성장률이 6.55%이고, 9개월간 GDP 성장률은 6.52%라고 발표하였다. 생산의 감소에 따라 2008년 GDP 성장률이 목표하였던 7%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35억 달러로 투자규모로도 1위이고, 2007년 투자금액은 45억 8천만 달러로 2년 연속 베트남 투자국 가운데 1위국임

<주요국별 대 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US\$백만) 신규 투자액 기준(증액 투자 제외)<sup>18)</sup>

| 구분        | 2007. 12. 22 현재 누계 |               |              |             | 2007. 1~12.22 |              |
|-----------|--------------------|---------------|--------------|-------------|---------------|--------------|
| 국가명       | 건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비율(%)       | 건수            | 투자금액         |
| <b>한국</b> | <b>1,837</b>       | <b>13,533</b> | <b>2,738</b> | <b>20.2</b> | <b>405</b>    | <b>4,463</b> |
| 싱가포르      | 543                | 10,739        | 3,804        | 35.4        | 84            | 2,614        |
| 대만        | 1,788              | 10,528        | 3,079        | 29.2        | 211           | 1,735        |
| 일본        | 928                | 9,038         | 4,988        | 55.2        | 154           | 965          |
| 홍콩        | 452                | 5,824         | 2,161        | 37.1        | 68            | 239          |
| 미국        | 375                | 2,796         | 752          | 26.8        | 62            | 358          |

- 2008년 상반기에는 대만이 81억 7천만 달러(64건)로 외국투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억 1천만 달러(113건)의 투자를 하여 투자규모 8위로 떨어지면서, 누적 투자액 3위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sup>19)</sup>
- 베트남의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다음과 같은 2010년까지의 경제 목표를 통하여 잘 살펴볼 수 있음<sup>20)</sup>

|                                        |             |
|----------------------------------------|-------------|
| 평균 경제성장률(GDP growth rate)<br>2006-2010 | 7.5-8% p.a. |
|----------------------------------------|-------------|

18)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8), 4면.

19) 그리하여 대만과 일본은 누계기준으로도 최대 투자 1, 2위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5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유지하여온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KOTRA,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2008. 9), 16면.

20) MPI,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06-2010.

|                    |                                                                |
|--------------------|----------------------------------------------------------------|
| 1인당 GDP per capita | US \$ 1,050-1,100                                              |
| 경제구조               | 농림수산업, GDP의 15-16%<br>공업·건설업, GDP의 43-44%<br>서비스업, GDP의 40-41% |

○ 참고로, 베트남의 기본정보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 기본정보>

|                             |                                                                |
|-----------------------------|----------------------------------------------------------------|
| 독립연월일                       |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 독립선언<br>1976년 7월 2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성립         |
| 현행 헌법                       | 1980년 제정(1992년, 2001년 개정)                                      |
| 수도                          | Ha Noi                                                         |
| 중앙정부직할시                     | Ha Noi, Ho Chi Mihn, Da Nang, Hai Phong, Can Tho               |
| 정치체제                        | 사회주의공화제                                                        |
| 국회(Quoc Hoi) <sup>21)</sup> | 일원제, 493의석                                                     |
| 국가 주석(대통령: Chu Tich Nuoc)   | 현재 국가 주석은 Nguyen Minh Triet<br>임기는 2011년까지, 국회에 의해 국회의원 가운데 선출 |
| 수상                          | 임기는 2011년까지                                                    |
| 정당                          | 베트남 공산당 <sup>22)</sup>                                         |
| 가입 국제기구                     | 국제연합, IMF, 세계은행, ASEAN, APEC, WTO                              |
| 교육                          | 의무교육 5년(취학률 94.5%), 중학교 4년(취학률 75.8%)                          |

21) 홈페이지는 <http://www.na.gov.vn>임.

# <베트남 현황>

**Location:** Southeastern Asia, bordering the Gulf of Thailand, Gulf of Tonkin, and South China Sea, alongside China, Laos, and Cambodia.

**Area:** total: 329,560 sq km (slightly larger than New Mexico), land: 325,360 sq km, water: 4,200 sq km.

**Climate:** tropical in south; monsoonal in north with hot, rainy season (mid-May to mid-September) and warm, dry season (mid-October to mid-March).

**Population:** 85,262,356 (July 2007 est.) (57% of the population is below the age of 30).

**Labor Force:** 45.73 million (2007 est.).

**Principal Exports:** crude oil, textiles & garments, footwear, fishery products, electronic products & components.

**Main Imports:** machinery equipment & parts, refined petroleum, steel, textile industry materials, cloth.



## 2. 연구의 필요성

- 베트남은 새로운 투자법 및 기업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외국계기업과 내국기업이 구별되어 각각 외국투자법, 국내투자장려법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합시켜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똑같이 새로운 투자법을 적용하고 있음(다만, 국영기업법은 그대로 유지)
- 종전 외국투자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외국계기업도 새로운 투자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투자등록을 신청하여 새로운 투자증명서 교환발급절차를 행함)
- 그럼에도 2006년 시행의 새로운 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국내에서의 본격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sup>23)</sup>
- 베트남은 우리나라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로, 베트남에의 투자진출을 위하여 베트남의 새로운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고,<sup>24)</sup> 해당 기업에게 적절한 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sup>25)</sup>
-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 베트남의 외국의 투자에 따른 司法的 시스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및

---

23) 새로운 투자법 이전의 종전 베트남 투자법제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박원석,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13권, 2002

◇ 권재열, 베트남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적 환경, 비교사법 제3권 제1호, 1996

◇ 이재열,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 상법과 기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제5호, 2006. 3

◇ 계경문, 베트남의 법제에 관한 연구 :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4

24) 2008년 5월에 일본 다이와증권의 ‘베트남 IMF 도움요청 가능성’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베트남 위기설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2008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물가급등,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주가 폭락 등 불안한 징후를 보였으나,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대응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여 2008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OTRA,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2008. 9), 19면.

25) 예를 들어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을 거듭함에 따라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9년 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증권거래에 대한 소득세 적용을 2009년 말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정평, 베트남경제소식(081031).

금융관련 법제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의 분석과 함께 법령의 번역본과 원문을 제공하고자 함

### 3. 연구의 개요

○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연구의 배경                       |             | 연구 내용                                              |             | 연구의 결과                               |
|------------------------------|-------------|----------------------------------------------------|-------------|--------------------------------------|
|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 ⇒<br>⇒<br>⇒ | ▷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의 분석<br><br>▷ 외국인 투자에 따른 사법적 시스템의 조사 | ⇒<br>⇒<br>⇒ | ▷ 외국인 투자 및 금융 관련 법제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의 분석 |
| New Investment Law           |             |                                                    |             | ▷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 Land for Opportunity         |             |                                                    |             | 부록<br>투자법 및 관련 법령의 번역본과 원문           |

## II. 투자법령의 분석

### 1. 새로운 투자법(Investment Law)의 의의

-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행 투자법령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투자법(2005년 11월 29일자 No. 59/2005/QH11)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1) 입법 연혁

- 베트남은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1987년 12월에 당시 가장 개방적인 「외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을 제정하였음

##### 《외국투자법의 개정 경과》

1987년 12월 29일 외국투자법 공포(제6장 제42조)  
1988년 9월 30일 외국투자법 시행령 공포(제11장 제113조)  
1990년 6월 30일 외국투자법 1차 개정(제6장 제42조)  
1992년 12월 23일 외국투자법 2차 개정(제6장 제42조)  
1993년 4월 16일 외국투자법 시행령 1차 개정(제14장 제105조)  
1996년 11월 23일 외국투자법 시행령 2차 개정(제6장 제68조)  
1997년 2월 18일 외국투자법 시행령 3차 개정(제15장 제104조)  
2000년 9월 6일 외국투자법 3차 개정(제6장 제42조)  
2006년 새로운 투자법

- 이후, 1987년의 외국투자법은 1990년, 1992년의 정부조직법(Law on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1996년의 외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그리고 2000년의 외국투자법의 수정 및 수정에 관한 법률(Law on Amendments of and Additions to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93년 외국투자법시행령(Decree of the Government No. 18/CP Regulating Detailed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1998년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Decree No. 10/CP on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1999년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결정(Decision No. 53/QD-TTg on Investment Priorities), 그리고 2000년의 외국투자활동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Providing Guidelines for Foreign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과 외국투자법시행령(Government Decree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에 의해 보충됨<sup>26)</sup>

-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수정하여 온 「외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과 1998년 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Law on Domestic Investment Encouragement)을 통합하여,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똑 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투자법을 2005. 11. 29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시킴

## 2) 투자법의 구성

- 새로운 투자법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활동,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장, 투자의 장려·우대제도,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 및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

26) 박원석,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제13권, 2002), 2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총 10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음

|      |                       |
|------|-----------------------|
| 제1장  | 일반규정(총칙)              |
| 제2장  | 투자보장                  |
| 제3장  |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
| 제4장  | 투자형태                  |
| 제5장  |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
| 제6장  | 직접투자활동                |
| 제7장  |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용         |
| 제8장  | 해외투자                  |
| 제9장  | 국가의 투자관리              |
| 제10장 | 시행규정(부칙)              |

### 3) 투자법의 적용대상

- 투자법의 인적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투자법 제2조)
  - 베트남 영토에서 투자활동을 하려는 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sup>27)</sup> 및 해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 투자활동과<sup>28)</sup> 관련된 조직·개인
- 투자활동의 규율(투자법 제5조)
  - 베트남 영토 내의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음
  - 다른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에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27)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투자법 제3조 제5호).

28) 투자활동은 투자의 준비,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및 관리를 포함한 투자기간중의 투자자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투자법 제3조 제7호).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에서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관행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음
- 우선순위는 국제조약>특별법>투자법의 순서임

#### 4) 그 밖의 투자 관련 법령

○ 투자법 이외에 투자법제에 관한 주요한 법령은 투자법시행령<sup>29)</sup>

- 투자법시행령 : 2005년 투자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2006년 9월 22일자 명령(Decree No. 108/2006/ND-CP)<sup>30)</sup>
- 투자법시행령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투자법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임(그리고 투자법시행령에는 부록(appendix) I, II, III, IV가 첨부되어 있음)
- 투자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법시행령은 직접투자에만 적용되며, 직접투자 가운데서도 법인의 설립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됨
- 즉, 지분, 주식,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인 간접투자활동이나 직접투자활동의 한 형식이지만, 정부와의 계약에 근거한 직접투자활동인 BOT, BTO, BT 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됨

○ 그 밖의 투자법제에 관한 주요한 법령 등은 다음과 같음

- BOT, BTO, BT 등의 형식에 따른 투자에 관한 2007년 5월 11일자 명령(Decree No. 78/2007/ND-CP)
- 외국기업의 재등록에 관한 2006년 9월 21일자 명령(Decre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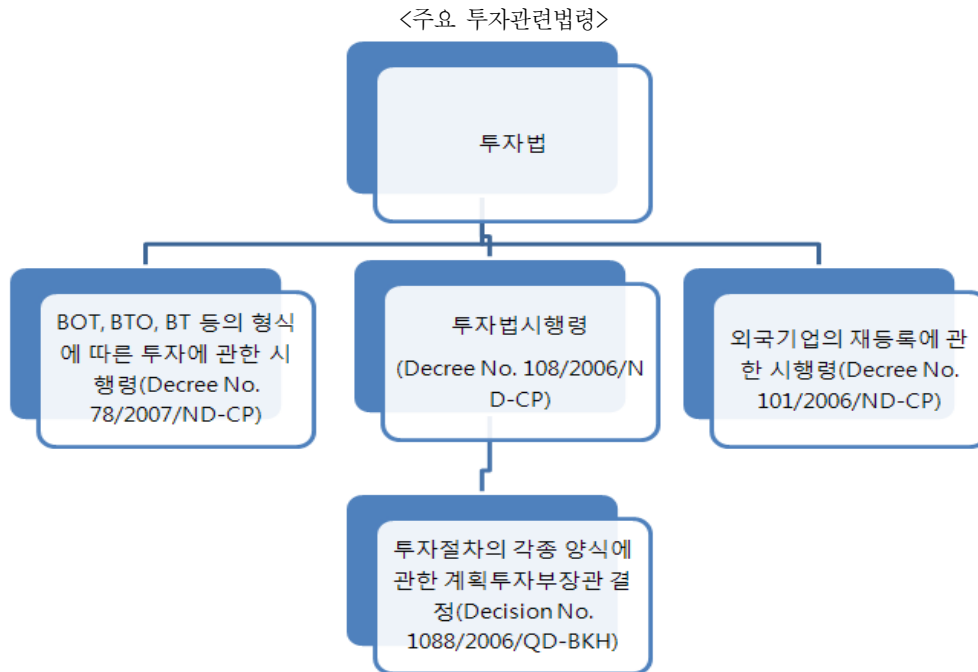
---

29) 법령의 체계는 헌법(HIẾN PHÁP=Constitution)→법률(Law)→정부시행령(Decree)→수상결정(Decision)→시행규칙(Circular) 등의 순서이다.

30) Nghị định 108/2006/NĐ-CP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2005년 투자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2006년 9월 22일자 시행령 제108호(Decree No. 108/2006/ND-CP).

101/2006/ND-CP)

- 투자절차의 각종 양식에 관한 2006년 10월 19일자 계획투자부장관 결정(Decision No. 1088/2006/QD/BKH)



## 2. 투자법의 주요 내용<sup>31)</sup>

### 1) 투자법의 특징

- WTO에의 가입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내외 격차를 시정함(즉 외국자본 · 내국자본이 동일한 환경 하에서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됨)

31) 이 부분은 주로 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economy/laws/index.js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등을 참조한 내용임.

- 투자의 자율성의 향상(예를 들어 합작투자의 경우 현지 자본출자비율 30% 이상 철폐)
-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외자계기업의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이 최소한 총 투자자본금(invested capital)의 30%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정자본금의 축소도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지만, 새로운 투자법에는 외자계기업의 순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외자계기업의 법정자본금 축소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음<sup>32)</sup>
- 새로운 투자법은 처음으로 베트남 기업의 해외투자(offshore investment)에<sup>33)</sup> 대해서도 규정함(제8장)

《새로운 투자법과 종전 외국투자법의 비교》

| 구 분  |      | 새로운 투자법                                                                                                              | 종전 투자법                                               |
|------|------|----------------------------------------------------------------------------------------------------------------------|------------------------------------------------------|
| 투자유형 | 직접투자 | - 종전의 투자법에서 명시하였던 투자형태에 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지분(shares)의 매입 또는 자본의 출자, 기업의 합병·매수를 위한 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직접투자 등 다양하게 명시 | - 100% 외자, 합작투자, BCC, BOT, BTO, BT 정도에 불과            |
|      | 간접투자 | - 지분, 주식, 채권 등의 매입과 같은 간접투자를 허용                                                                                      | - 간접투자의 개념이 없었음                                      |
| 투자절차 | 투자규제 | - 원칙 자유<br>- 현지 자본출자비율 30% 이상 철폐<br>- 법정자본금 30% 이상 철폐                                                                | - 합작투자의 경우 현지 자본이 30% 이상<br>- 총 투자금액 내 법정자본금이 30% 이상 |
|      | 투자분야 | - 금지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 자유<br>- 다만, 조건부 투자 분야                                                                               | - 조건부 투자                                             |

32) 종전 외국투자법하에서는 자본금 규정이 투자자본금, 법정자본금, 대출자본금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자본금으로 복잡하게 분류되었다. 새로운 투자법 및 기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 회사의 자본금은 실제 회사의 설립 당시 또는 직후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에 충분할 정도의 자본금을 뜻하는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과 추후 회사가 확장됨에 따라 증자하는 경우에 정관상 증자를 예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투자자본금”(Investment Capital) 등 두 가지에 대하여만 고려하면 된다. 즉, 현물 및 현금 투자를 막론하고 초기에 투자하는 자본금은 모두 정관자본금으로 편입되게 되고, 베트남 내 회사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제도는 법정자본금이 적용되는 특별한 사업분야(금융업, 부동산경영업 등)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KOTRA, 베트남 투자 A to Z(2008), 21면.

33) 해외투자는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자금과 그 밖의 자산을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투자법 제3조 제14호).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라 하는데, 국내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overseas investment)와 대비된다.

|        |        |                                                                                                                |                                                            |
|--------|--------|----------------------------------------------------------------------------------------------------------------|------------------------------------------------------------|
|        | 투자등록   |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에 투자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라이센스 획득                                            | -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명령(Decree)으로 규정하였으며 등록소요기간은 30일임    |
|        | 투자심사   |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대상분야의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내에 투자승인획득 가능                      | -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명령(Decree)으로 규정하였으며 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임 |
| 투자인센티브 | 세금우대조항 | - 우대세율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음                                                                                            | - 법인세 우대세율을 (28%, 20%, 15%, 10%)로 구체적으로 구분                 |
|        | 소득세 면제 | - 자본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완료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명시<br>- 투자장려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 -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 없었음                           |
|        | 수입관세면제 | -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자재, 차량 등 교통 장비 등 수입관세 면제                                                                    | -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                                        |
|        | 토지사용기간 | -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 - 토지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
|        | 토지사용료  | - 투자장려분야 투자시 토지무상사용, 토지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투자형태보다는 투자분야 중시 의미)                                                    | - BOT, BTO, BO 형태의 투자나, 낙후지역 투자시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   |
| 비자발급   |        | - 복수비자<br>- 기간 5년                                                                                              | - 종전 외국투자법에 규정 없었음<br>- 통상 1년 비자 취득 가능하였음                  |

## 2) 투자의 종류 및 형식

### □ 베트남에의 투자진출

- 투자는 투자자가 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투입하여 투자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투자법 제3

조 제1호 : 이하 조문만 표시))

- 외국투자자는 사업협력계약(BCC)의 체결, 합작기업의 설립, 100%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등에 의하여 베트남에 직접투자가 가능함(제21조 참조)
- 한편, 외국투자자는 주식의 매입 등과 같은 간접투자의 형태로도 투자를 할 수 있음(제26조 참조)
- 또한 외국계기업으로서는 지점이나 주재원사무소 설립증명을 받아 지점·주재원사무소를 통하여 베트남 시장의 진출 활로를 찾을 수 있음(외자계기업의 주재원사무소와 지점에 관한 개정 상법의 새로운 시행령(Decree No. 72/2006/ND-CP)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목에서 후술)

## □ 직접투자

- 직접투자란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투입하고 투자활동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형식을 말하는데(제3조 제2호), 직접투자형식은 다음과 같음(제21조)
  - 국내 혹은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출자로 경제조직의 설립<sup>34)</sup>
  - 국내 및 외국투자자 사이의 합작으로 경제조직의 설립<sup>35)</sup>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의한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매입 또는 자본출자를 통해 투자활동관리에 참여

34) 단독투자는 외국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100%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기업의 소유, 경영 모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업의 다수는 이러한 형태이다.

35) 합작투자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을 설립하는 것이다. 벽산건설은 붕파우 카이맵 복합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VTS(Vung Tau Shipyard)와 2008년 9월 23일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추정 사업비 4,500억 원으로 그 동안 VKGT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여 오던 이 프로젝트는 이번 협정에 따라 벽산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진행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이후 사업 타당성 분석을 마무리 하고 조인트벤처회사(JVC)를 설립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정평, 베트남경제소식(081012).

- 기업의 합병 및 매수(M&A)를 위한 투자
- 그 밖의 각종 형태의 직접투자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은 투자자가 어느 정도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나,<sup>36)</sup>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종전 외국투자법에는 투자형태에 대하여 단독투자, 합작투자, BCC(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up>37)</sup> BOT(건설-운영-양도: Build-Operate-Transfer), BTO(건설-양도-운영: Build-Transfer-Operate), BT(건설-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종전 외국투자법보다 다양한 투자형태가 규정된바, 직접투자형태로 그 밖에도 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지분(shares)의 매입 또는 자본의 출자, 기업의 합병·매수(M&A)를 위한 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직접투자 등<sup>38)</sup>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음
- 위 투자형식에서 경제조직을 설립하는 투자란 다음 내용을 의미함(제22조)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기업(기업법을 보면,<sup>39)</sup>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개인기업, 기업집단의 경영형태가 가능-투자법과 함께 성립한 기업법에 의해 이제 외자계기업은 주식회사의 설립도 가능)
  - 신용금융기관, 보험사, 투자신탁기금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그 밖의 금융기관

36) 직접투자란 외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데 있어 그 목적이 투자 사업에 대한 경영지배나 경영참여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경영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이익배당이나 이자소득 등 자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간접투자라고 한다.

37)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 사이에 비즈니스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다.

38) 이는 진입장벽을 회피하기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39) 기업법의 적용대상은 기업(Doanh nghiệp)인데, 기업이란 상호, 자산, 일정한 사무소를 가지고 법률에 규정된 상행위를 하기 위해 사업등록을 한 경제조직을 말한다(기업법 제4조 제1호).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그 밖의 각종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시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각종 경제조직
  - 그 밖에 국내투자자는 합작법(동업조합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합작사, 합작사 연합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가내경영기업의 설립에 투자할 수 있음(제22조 제2항)
- 위 투자형식에서 계약에 따른 투자는 BCC, BOT, BTO, BT 형식에 의한 투자를 의미함(제23조)

<계약투자형식의 예>

|     |                                                                                                                                                                             |
|-----|-----------------------------------------------------------------------------------------------------------------------------------------------------------------------------|
| BCC | 베트남기업과 외국기업이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형태로 법인격은 없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개발 등 분야에 많이 나타난다.                                                                                           |
| BOT | 권한을 가지는 정부기관과 투자자가 일정한 기간 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 투자자는 베트남에 해당 인프라시설을 무상으로 이전한다. <sup>40)</sup>                                                      |
| BTO |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과 투자자가 일정한 기간 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건설공사가 완료한 뒤에는 투자자는 베트남에 해당 인프라시설을 이전하고, 한편 투자한 자본의 회수 및 합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그 인프라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권리를 받는다.      |
| BT  |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과 투자자가 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건설공사가 완성한 뒤에는 투자자가 베트남에 해당 인프라시설을 이전하고 한편 투자한 자본의 회수 및 합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그 밖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한다. <sup>41)</sup> |

40)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베트남 교통부(MoT)와 MoU를 체결하고 Dau Giay-Lien Khuong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BOT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총 길이 200km이고 총비용 \$1 bil.의 이번 프로젝트는 Asian Development Bank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법무법인 정평, 베트남경제소식(081024).

41) GS건설은 2008년 6월 9일 호찌민시 내부간선도로 기공식을 가졌다.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간선도로는 떤서너트공항에서 수언히엠포차로에 이르는 총길이 13,653km의 6~12차선 도로. 특히 이번 사업은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BT(Build-Transfer) 방식으로, GS건설은 간선도로를 공사해 주는 대신 102만㎡의 부지를 받아 6000가구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등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게 된다.

- 위 투자형식에서 경영개발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제24조)
  - 경영규모의 확대, 생산 및 경영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 기술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의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 위 투자형식에서 자본출자, 지분매입 및 합병·매수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제25조)<sup>42)</sup>
  -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지점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그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음
  -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자본출자나 지분매입이 가능한 비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자본출자, 지분매입이 가능한 비율은 정부가 정하도록 함
  - 기업·지점의 합병·매수 조건은 투자법, 경쟁에 관한 법,<sup>43)</sup> 그 밖의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름

<베트남 기업 중 인지도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sup>44)</sup>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인수·합병 할 경우, 투자승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업 인수·합병 신청서에 외국투자자의 성명, 주소 및 대리인, 인수·합병 대상 기업명, 주소, 정관자본금, 영업분야, 인수·합병 내용에 관한 정보, 제안서, 기업 매각에 대한 사원총회, 기업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서, 피인수 회사의 정관, 변경사항이 있을 시 인수·합병 승인 이후 기업의 정관 등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흡수합병시 합병된 회사가 관련 시장의 30~50%를 점유하게 되면, 회사의 법적 대표는 합병을 진행하기 전에 경쟁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합병 후 회사가 관련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이 금지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9/200806090147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9/2008060901478.html).

42) 투자자는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위해 다른 기업에 출자, 주식매입 또는 기업인수 및 합병할 권리가 있다. 또한 출자, 주식매입, 기업인수 및 합병함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투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43) 베트남 경쟁법(No. 27/2004/QH11)은 2004년 12월 3일 성립하였다.

44) KOTRA 베트남 투자자문/상담 사례집(2009. 1), 42-43면.

## □ 간접투자

- 기존 외국투자법에는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등 간접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제26조)
- 간접투자란 투자자가 투자활동운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 또는 증권투자기금 및 그 밖의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투자형식을 말하는데(제3조 제3호), 간접투자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제26조 제1항)
  -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한 투자
  - 증권투자기금을 통한 매입
  - 그 밖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 등록, 평가(심사) 등 투자절차 및 투자프로젝트의 전개(진행)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제6장의 제목이 직접투자활동(HOẠT ĐỘNG ĐẦU TƯ TRỰC TIẾP)으로 되어 있으며, 간접투자활동에 관한 사항은 증권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제26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29일에 증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7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음<sup>45)</sup>

## 3) 투자정책(제4조)

-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업종, 분야에 투자 가능
- 내외국 투자자 구분 없이 평등한 법적 대우를 보장
-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소득 및 그 밖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 투자활동을 인정하여야 함

---

45) No. 70/2006/QH11. 증권법(Securities Law)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 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투자관련 국제조약을 이행하여야 함
- 국가는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우대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4) 투자보장

##### □ 자본 및 재산의 보장(제6조)

- 투자자의 투자자본 및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고, 행정조치에 의해 몰수되지 않음
- 국익 목적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징발, 수용할 때에 시장가격으로 보상·배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 외국투자자에게는 보상·배상금을 국제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하고, 이를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함
- 강제적 징발 및 수용의 절차와 조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지적 재산권의 보호(제7조)

- 국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베트남에서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함<sup>46)</sup>

46) 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부는 지적재산법과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있어서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로 자본을 출자하는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이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자본출자에 이용된 기술의 가치 혹은 기술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술이전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선진기술, 원천기술, 신제품 생산, 제품의 생산성, 경쟁력, 품질의 향상, 원료, 연료, 에너지,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한 베트남 이전을 권장한다. 정부는 기술혁신 및 기술관리의 향상에 관련된 투자를 장려한다.
3. 사회경제의 개발 목표에 의거하여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하이테크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

- 지적 재산권은 지역적인 것으로, 통상적으로 취득된 본국 또는 지역에서만 보호되므로 우리 국내에서 향수되는 보호의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베트남에서 향수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지적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총 222조의 지적 재산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sup>47)</sup> 지적 재산법에 기해 특허, 상표, 공업디자인, 원산지명칭,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품종권이 보호되고 있음

<존속기간>

| 특허    | 발명: 20년간<br>실용신안: 10년간 |
|-------|------------------------|
| 상표    | 10년간                   |
| 공업디자인 | 5년간                    |
| 원산지명칭 | 무기한                    |
| 저작권   | 인격권: 무기한<br>재산권: 50년간  |
| 식물품종권 | 20-25년간                |

- 지적 재산권 보유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적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공공양속에 어긋나는 것, 국방·치안을 해치는 것은 지적 재산으로 보호하지 않음
- 지적 재산을 가진 주체(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는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조직 및 개인에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공개적으로 정정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관리기관에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4. 기술이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절차는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47) No. 50/2005/QH11.

위하여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지적 재산법 제198조).

- 또한 기술이전법<sup>48)</sup> 2006년 11월 29일 성립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기술, 노하우, 기술시장, 기술이전, 기술이전업무,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의 촉진이 포함됨
- 기술이전계약의 내용, 신청서류 및 기술이전계약의 인증과 등록의 행정관리 등에 대하여는 2005년 2월 2일자 Decree No 11/2005/ND-CP 및 과학기술부의 2005년 12월 30일자 Circular No 30/2005/TT-BKHCH가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이전계약은 과학기술환경부 및 과학기술환경국이 관할하고, 계약의 검사, 사정, 승인을 행함
-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의해 생긴 이전하는 측의 수익은 세금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때문에 각종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 □ 시장개방 및 무역 관련 투자(제8조)

- 약속한 일정에 따라 투자시장을 개방
- 무역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의 실시가 강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상품 생산시에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 개발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가치의 달성

---

48) No. 80/2006/QH11.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무
- 특정한 장소에 본사를 설치할 의무

## □ 자본 및 재산의 국외 이전(제9조)

- 투자자가 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에 적법하게 국외 반출  
이 가능한 항목
  -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보수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그 이자
  - 투자자본 및 투자청산 후의 각종 자금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금전 그 밖의 각종 재산
- 베트남에서 투자프로젝트를 행한 외국인은 자기의 합법적 소득을  
자국에 송금할 수 있음
- 위 금전의 송금은 환전 가능한 통화로 투자자가 택한 상업은행의  
외환환율에 따라 이루어짐
- 투자활동에 관련된 금전을 외국에 송금하는 절차는 외환관리법에  
따름

## □ 동일한 수수료 적용(제10조)

-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행할 때에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요금, 수수료에 대해서(예: 전기요금 등) 베트남인  
과 동일한 요금 적용

## □ 법률·정책변경에 따른 투자보장(제11조)

- 기존 적용의 법률·정책보다 유리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

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정책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새로운 권리와 우대를 향유함

- 새로운 법률·정책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투자증명서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계속 보장 받거나 또는 다음 조치를 통하여 해결됨
  -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계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사업활동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에 보상 검토
-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상 이행약속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에 대하여 정부는 구체적 보장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 분쟁해결(제12조)

- 베트남 내 투자활동 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sup>49)</sup>
- 만약 분쟁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외국투자자이거나 모두가 외국투자자일 경우에 다음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함(사법제도에 대하여는 후술함)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기관<sup>50)</sup>
  - 외국중재기관
  - 국제중재기관
  - 각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기관

49) 법원제도에 대한 근거법률로, 2002년 인민법원조직법이 있다(No. 33-2002-QH10),

50) 베트남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베트남국제중재센터(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Vietnam)와 사설 중재원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133명의 중재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로드맵(2007), 166면.

- 결국, 외국투자자 또는 외자계기업이 관련된 분쟁은 베트남 법원, 베트남 중재기관 이외에 외국 또는 국제중재기관을 통하여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다만, 베트남 국가기관과 외국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베트남 중재기관이나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함(제12조 제4항)
- 참고로 보면, 국제무역이나 외국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분쟁은 자주 국제중재로 해결되는데,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집행이 문제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런던과 같은 베트남 국외에서 중재가 이루어짐

## 5)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 □ 투자 자원에 대한 접근 · 사용권(제14조)

- 각종 금융, 기금에 대한 평등한 접근 · 사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자원을 사용함
-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를 보장함
- 노동인력의 고용, 경영상 필요한 외국인 관리자 및 기술자를 고용할 권리를 보장함(다만,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이 우선)

### □ 투자활동에 관한 수출입, 광고 및 마케팅 권리(제15조)

- 투자활동과 관련된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제품의 임가공 및 재가공 권한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임

## □ 외환매입, 투자자본 및 투자프로젝트 양도·조정권(제16조, 제17조)

- 외환매입, 투자자본 및 투자프로젝트 양도와 조정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며,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시 베트남 세법에서 정한 소득세 납부

## □ 토지사용권, 토지와 관련된 재산의 담보설정(제18조)

-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사용권과 토지와 관련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차입 가능함
- 참고로 보면, 헌법상 베트남 내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사적 소유가 허락되지 않지만,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토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법, 민법 등 하위 법규범을 통하여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의 매매, 저당권, 상속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사실상 일정 범위 안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 투자자의 의무(제20조)

- 투자자는 투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의 책임을 부담함
  - 투자등록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실시
  - 재정의무의 충실한 실현
  - 회계, 감사 및 통계에 대한 법률의 규정 준수<sup>51)</sup>
  - 보험, 노동에 관한 법률의 의무 이행,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보장

51) 투자자는 2003년 6월 17일 회계법, 2004년 5월 31일 상업활동에 대한 회계법의 일부조항의 시행 가이드라인(No. 129/2004/ND-CP), 2006년 3월 20일 기업회계제도의 공포에 관한 재무부 결의(No. 15/2006/QĐ-BTC)에 기하여 ① 자산, ② 채무, 자기자본, ③ 판매액 등, ④ 이익, 손실, ⑤ 세금 등, ⑥ 그 밖의 자산 등의 기업정보를 적은 연차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에 관한 명령으로는 2004년 3월 30일의 No. 105/2004/ND-CP가 있다.

- 노동자의 정치, 사회단체 설립 및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조성 노력
- 환경보호법(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규정의 준수<sup>52)</sup>
- 그 밖의 법률 규정의 준수

<노동조합 설립><sup>53)</sup>

베트남 노동법에 의거 기업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기업 내에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는 노동조합이 가능한 한 신속히 설립되도록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투자기업의 노조설립율이 35%, 베트남 국내 민간기업의 노조설립율이 15% 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노동조합도 기업경영에 우호적이라고 한다. 우리와는 달리 베트남에는 대결적 노사문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도 아직 형성되기 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관리자가 노동조합장을 맡고 있어 사업주에게 우호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노동조합은 국가통치조직의 일부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노동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노총에 해당하는 전국 조직이지만, 헌법적 조직이며 국회에 법안 제출권이 있고, 의장은 당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은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를 알 수 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요구가 한 순간에 폭발해서 파업으로 이어지기 전에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의 집약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6)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제5장)

- 투자법 및 그 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에서 투자특별 우대분야, 투자우대분야,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가 제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투자는 자유임

52) 2005년에 11월에 환경보호법(No. 52/2005/QH11)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53) KOTRA, 베트남 투자 A to Z(2008. 7), 124면.

## (1) 투자분야, 지역

### □ 투자우대분야(제27조)

- 투자법 제27조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장려분야를 열거하고 있음
  -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제품의 생산,<sup>54)</sup>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기계제조 분야
  - 농림수산물의 양식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자의 개발, 새로운 수종 및 가축 종자의 개발 분야
  -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의 응용, 환경생태의 보호, 첨단기술의 개발연구 분야
  -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노동집약사업 분야
  - 산업기반시설, 중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분야
  -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문화사업 분야
  - 전통업종의 개발 분야
  - 그 밖의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 참고로 보면, BOT, BTO, BT의 형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는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특별우대투자분야에 포함되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2007년 5월 11일자 명령(Decree No. 78/2007/ND-CP)에서 실시분야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이 규정됨
- 투자우대분야의 상세한 것은 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특별우대투자분야(전부 26개 항목)와 일반우대투자분야(전부 53개 항목)로 나뉨

---

54) 과학기술부 2006년 12월 18일자 Decision No.27/2007/QD-BKHCHN에서 하이테크제품의 생산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I. 신소재, 신에너지, 첨단기술제품, BT제품, IT제품의 생산 및 기계 제조(Sản xuất vật liệu mới, năng lượng mới; sản xuất sản phẩm công nghệ cao, công nghệ sinh học, công nghệ thông tin; cơ khí chế tạo)

|                                                                                                            |
|------------------------------------------------------------------------------------------------------------|
| 1.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 2.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
| 4.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 5.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 6.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 7. 반도체, 첨단기술사용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 8.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

II.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Nuôi trồng, chế biến nông, lâm, thủy sản; làm muối; sản xuất giống nhân tạo, giống cây trồng và giống vật nuôi mới)

|                                      |
|--------------------------------------|
| 9. 식수 및 조림                           |
| 10.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
| 11. 원양 어업                            |
| 12.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
| 13.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

III.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55) 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록 I. A(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8), 7면 참조.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Sử dụng công nghệ cao, kỹ thuật hiện đại; bảo vệ môi trường sinh thái; nghiên cứu, phát triển và ươm tạo công nghệ cao)

|                                                       |
|-------------------------------------------------------|
| 14.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
| 15.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
| 16.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
| 17.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

#### IV.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Sử dụng nhiều lao động)

18. 지속적으로 5.000 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 V.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dự án quan trọng)

19.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 VI.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Phát triển sự nghiệp giáo dục, đào tạo, y tế, thể dục và thể thao)

|                                                                                         |
|-----------------------------------------------------------------------------------------|
| 20.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
| 21.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
| 22.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
| 23.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

#### VII.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Những lĩnh vực sản xuất và dịch vụ khác)

|                                                                                            |
|--------------------------------------------------------------------------------------------|
| 24.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
| 25. 해난 구호 서비스                                                                              |
| 26.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투자 |

<일반우대투자 분야( 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ư)><sup>56)</sup>

|                                                                                                                                                                                       |
|---------------------------------------------------------------------------------------------------------------------------------------------------------------------------------------|
| I.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Sản xuất vật liệu mới, năng lượng mới; sản xuất sản phẩm công nghệ cao, công nghệ sinh học, công nghệ thông tin; cơ khí chế tạo) |
| 1.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
| 2. 비철 금속, 제강                                                                                                                                                                          |
| 3.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
|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
| 5. 의료 설비 생산,약품 보관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
| 6.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
| 7.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
| 8. 코크스, 활성탄 생산                                                                                                                                                                        |
| 9.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
| 10.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
| 11.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                                                                                                                                        |

56) 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록 I. B(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8), 7면 참조.

|                                                                                                                                                                            |
|----------------------------------------------------------------------------------------------------------------------------------------------------------------------------|
| 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                                                                                                                       |
| 12.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
| 13. 전자 제품의 생산                                                                                                                                                              |
| 14.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
| 15.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
| 16.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
| 17.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
| 18. 농업, 임업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溉) 장비의 생산                                                                                                                    |
| 19.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
| II.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Nuôi trồng, chế biến nông, lâm, thủy sản; làm muối; sản xuất giống nhân tạo, giống cây trồng và giống vật nuôi mới) |
| 20. 약용 식물의 재배                                                                                                                                                              |
| 21.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
| 22.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류의 생산                                                                                                                                          |
| 23.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
| 24. 공업용 및 임업용 식목재배 기술 제공; 수산양식, 식목 및 가축의 보존에 관한 기술 제공                                                                                                                      |
| 25. 묘목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
| III.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Sử dụng công nghệ cao, kỹ thuật hiện đại; bảo vệ môi                                                                 |

trường sinh thái; nghiên cứu, phát triển và uơng tạo công nghệ cao)

26.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27.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28.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 IV.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Sử dụng nhiều lao động)

29.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 V.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kết cấu hạ tầng)

30.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31.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32.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33.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34.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시설 건설

#### VI.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Phát triển sự nghiệp giáo dục, đào tạo, y tế, thể dục, thể thao và văn hóa dân tộc)

35.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36.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37.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38.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39. 국립공원, 생태 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 VII. 전통 분야 발전(Phát triển ngành nghề truyền thống)

40.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 VIII. 그 밖의 생산 및 서비스 분야(Những lĩnh vực sản xuất và dịch vụ khác)

41.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42.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궤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43.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44.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45. 어린이용 완구 생산

46.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47.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48.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49. 기초 화약품, 정제 화약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50.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51.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52.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53.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 또한 2007년 4월에 2020년을 전망한 2007-2010년의 투자장려분야와 첨단분야(spearhead industry) 리스트 및 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정책을 규정한 首相결정(Decision No. 55/2007/QĐ-TTg)이 공포되었는데, 그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음(우선적 토지할당, 예산지원 등의 혜택을 줌)
  - 장려업종 : 섬유 · 봉제, 피혁 · 플라스틱, 농림수산가공 · 철강, 화학품
  - 첨단업종 : 기계공학, 전자 · 통신 · 정보기술, 신기술 관련 제품

## □ 투자우대지역(제28조)

- 투자가 우대되는 지역은, ① 경제,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또는 특별히 낙후된 지역과 ②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2가지 분류가 있음
- 경제,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또는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부록 II에 省마다 구체적 지명이 실려 있음

<투자우대지역><sup>57)</sup>

| 차<br>례 | 성(省)     | 경제 - 사회적 여건이<br>특별히 낙후된 지역 | 경제 - 사회적 여건이<br>낙후된 지역 |
|--------|----------|----------------------------|------------------------|
| 1      | Bac Kan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2      | Cao Bang | 성내 전체 현 및 군                |                        |
| 3      | Ha Giang | 성내 전체 현 및 군                |                        |
| 4      | Lai Chau | 성내 전체 현 및 군                |                        |

57) 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록 II(Phụ lục II) DANH MỤC ĐỊA BÀN ƯU ĐÃI ĐẦU T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8), 11면 참조.

|    |             |                                                                                                   |                                                                               |
|----|-------------|---------------------------------------------------------------------------------------------------|-------------------------------------------------------------------------------|
| 5  | Son La      | 성내 전체 현 및 군                                                                                       |                                                                               |
| 6  | Dien Bien   | 성내 전체 현과 Dien Bien 시                                                                              |                                                                               |
| 7  | Lao Cai     | 성내 전체 현                                                                                           | Lao Cai 시                                                                     |
| 8  | Tuyen Quang | Na Hang, Chiem Hoa 현                                                                              | 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
| 9  | Bac Giang   | Son Dong 현                                                                                        |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
| 10 | Hoa Binh    | Da Bac, Mai Chau 현                                                                                |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
| 11 | Lang Son    |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현                           |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
| 12 | Phu Tho     | Thanh Son, Yen Lap 현                                                                              |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
| 13 | Thai Nguyen | Vo Nhai, Dinh Hoa 현                                                                               |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
| 14 | Yen Bai     |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
| 15 | Quang Ninh  | Ba Che, Binh Lieu, Co To 현과 현 부속 도서들                                                              | Van Don 현                                                                     |
| 16 | Hai Phong   | Bach Long Vy, Cat Hai 현                                                                           |                                                                               |
| 17 | Ha Nam      |                                                                                                   | Ly Nhan, Thanh Liem 현                                                         |
| 18 | Nam Dinh    |                                                                                                   |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
| 19 | Thai Binh   |                                                                                                   | Thai Thuy, Tien Hai 현                                                         |
| 20 | Ninh Binh   |                                                                                                   |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
| 21 | Thanh Hoa   |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 Thach Thanh, Nong Cong 현                                                      |
| 22 | Nghe An     |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

|    |                |                                                                                                                           |                                                                          |
|----|----------------|---------------------------------------------------------------------------------------------------------------------------|--------------------------------------------------------------------------|
|    |                |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                                                                          |
| 23 | Ha Tinh        |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
| 24 | Quang Binh     |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25 | Quang Tri      | Huong Hoa, Dac Krong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26 | Thua Thien Hue | A Luoi, Nam Dong 현                                                                                                        | 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
| 27 | Da Nang        | Hoang Sa 현                                                                                                                |                                                                          |
| 28 | Quang Nam      |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 Dai Loc, Duy Xuyen 현                                                     |
| 29 | Quang Ngai     |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 Nghia Hanh, Son Tinh 현                                                   |
| 30 | Binh Dinh      |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 Hoai An, Phu My 현                                                        |
| 31 | Phu Yen        |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 Song Cau, Tuy Hoa, Tuy An 현                                              |
| 32 | Khanh Hoa      |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
| 33 | Ninh Thuan     | 성(省)내 전체 현                                                                                                                |                                                                          |
| 34 | Binh Thuan     | Phu Quy 현                                                                                                                 |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
| 35 | Dac Lak        | 성(省)내 전체 현                                                                                                                |                                                                          |
| 36 | Gia Lai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7 | Kon Tum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8 | Dak Nong       | 성(省)내 전체 현                                                                                                                |                                                                          |
| 39 | Lam Dong       | 성(省)내 전체 현                                                                                                                | Bao Loc 군(郡)                                                             |
| 40 | Ba             | Con Dao 현                                                                                                                 | Tan Thanh 현                                                              |

|    |                |                                                      |                                                                |
|----|----------------|------------------------------------------------------|----------------------------------------------------------------|
|    | ia-Vung<br>Tau |                                                      |                                                                |
| 41 | Tay<br>Ninh    | Tan Bien, Tan Chau, Chau Thanh,<br>Ben Cau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2 | Binh<br>Phuoc  | Loc Ninh, Bu Dang, Bu Dop 현                          |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br>현                           |
| 43 | Long An        |                                                      | Duc Hue, Moc Hoa, Tan Thanh,<br>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
| 44 | Tien<br>Giang  | Tan Phuoc 현                                          |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
| 45 | Ben Tre        |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6 | Tra Vinh       | Chau Thanh, Tra Cu 현                                 |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
| 47 | Dong<br>Thap   | Hong Ngu, Tan Hong, Tam Nong,<br>Thap Muoi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8 | Vinh<br>Long   |                                                      | Tra On 현                                                       |
| 49 | Soc<br>Trang   | 성(省)내 전체 현                                           | Soc Trang 군(郡)                                                 |
| 50 | Hau<br>Giang   | 성(省)내 전체 현                                           | Vi Thanh 군(郡)                                                  |
| 51 | An<br>Giang    | An Phu, Tri Ton, Thoai Son, Tan<br>Chau, Tinh Bien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52 | Bac<br>Lieu    | 성(省)내 전체 현                                           | Thi xa Bac Lieu                                                |
| 53 | Ca Mau         | 성(省)내 전체 현                                           | Ca Mau 시                                                       |
| 54 | Kien<br>Giang  | 성(省)내 전체 현 및 부속 도서                                   |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
| 55 | 기타<br>지역       | 첨단기술단지, 수상의 설립 결정에 따라<br>우대 혜택을 받는 경제 지구             | 수상 결정으로 조성된<br>공업단지(IZ,EPZ)                                    |

○ 투자우대지역으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는 다음과 같음

- 공업단지는 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공업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정된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임(제3조 제20호)

- 수출가공단지는 수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행하는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임(제3조 제21호)
  - 첨단기술단지는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 첨단기술 기업양성, 첨단기술 인력교육, 첨단기술 제품생산 및 경영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을 말함(제3조 제22호)
  - 경제특구는 투자자의 투자 및 경영에 특별히 유리한 여건이 주어진 독립된 경제 공간으로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을 말함(제3조 제23호)
-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행하는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투자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제32조 제1항), 이에 대하여는 후술함

<일반용지, 공업단지 중 공장설립은 어디가 유리한가><sup>58)</sup>

임대료가 약간 비싸더라도 외국기업은 산업단지(공업단지)를 선호한다. 일반용지는 토지사용료 및 보상비가 저렴하나, 전력,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직접 책임져야 하고, 인허가 등의 서류도 DPI(해당 성의 투자계획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는 공단을 조성한 주체가 어느 정도 전력, 용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토지임차료가 비싸고 BOM(공단관리위원회)에서 법인허가 및 모든 사항을 허가 및 관리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한 주체가 항상 모든 사항을 협조한다. 일반용지에서는 토지사용료, 보상비와 철거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며, 비교적 낮은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나, 각종허가 및 인프라 건설 등에 추가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산업단지(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전기, 수도, 공장관리, 인프라 등에 어느 정도 보장성은 있으나, 토지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공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지을 경우에 법인세 우대세율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8) KOTRA 베트남 투자자문/상담 사례집(2009. 1), 9-11면.

<공업단지 리스트>



特別市(中央直轄市) 5곳

1. [Ha Noi](#)
2. [Ho Chi Minh City](#)
3. [Hai Phong](#)
4. [Da Nang](#)
5. [Can Tho](#)

(地方)省 59곳

- | (北部)                           | (中部)                          | (南部)                         |
|--------------------------------|-------------------------------|------------------------------|
| 6. <a href="#">Ha Giang</a>    |                               |                              |
| 7. <a href="#">Tuyen Quang</a> |                               |                              |
| 8. <a href="#">Cao Bang</a>    |                               |                              |
| 9. <a href="#">Lang Son</a>    |                               |                              |
| 10. <a href="#">Lai Chau</a>   |                               |                              |
| 11. <a href="#">Dien Bien</a>  | 30. <a href="#">Thanh Hoa</a> | 50. <a href="#">Tay Ninh</a> |

|                                 |                                    |                                |
|---------------------------------|------------------------------------|--------------------------------|
| 12. <a href="#">Yen Bai</a>     | 31. <a href="#">Nghe An</a>        | 51. <a href="#">Dong Na</a>    |
| 13. <a href="#">Lao Cai</a>     | 32. <a href="#">Ha Tinh</a>        | 52. <a href="#">Long An</a>    |
| 14. <a href="#">Bac Kan</a>     | 33. <a href="#">Quang Binh</a>     | 53. <a href="#">Dong Thap</a>  |
| 15. <a href="#">Thai Nguyen</a> | 34. <a href="#">Quang Tri</a>      | 54. <a href="#">An Giang</a>   |
| 16. <a href="#">Son La</a>      | 35. <a href="#">Thua Thien Hue</a> | 55. <a href="#">Tien Giang</a> |
| 17. <a href="#">Phu Tho</a>     | 36. <a href="#">Quang Nam</a>      | 56. <a href="#">Ben Tre</a>    |
| 18. <a href="#">Vinh Phuc</a>   | 37. <a href="#">Quang Ngai</a>     | 57. <a href="#">Hau Giang</a>  |
| 19. <a href="#">Bac Giang</a>   | 38. <a href="#">Binh Dinh</a>      | 58. <a href="#">Soc Trang</a>  |
| 20. <a href="#">Bac Ninh</a>    | 39. <a href="#">Phu Yen</a>        | 59. <a href="#">Vinh Long</a>  |
| 21. <a href="#">Quang Ninh</a>  | 40. <a href="#">Khanh Hoa</a>      | 60. <a href="#">Tra Vinh</a>   |
| 22. <a href="#">Ha Tay</a>      | 41. <a href="#">Gia Lai</a>        | 61. <a href="#">Kien Giang</a> |
| 23. <a href="#">Hoa Binh</a>    | 42. <a href="#">Kon Tum</a>        | 62. <a href="#">Bac Lieu</a>   |
| 24. <a href="#">Hai Duong</a>   | 43. <a href="#">Dak Lak</a>        | 63. Ca Mau                     |
| 25. <a href="#">Hung Yen</a>    | 44. <a href="#">Dak Nong</a>       | 64. Ba Ria Vung Tau            |
| 26. <a href="#">Thai Binh</a>   |                                    |                                |
| 27. <a href="#">Ha Nam</a>      |                                    |                                |
| 28. <a href="#">Nam Dinh</a>    |                                    |                                |
| 29. <a href="#">Ninh Binh</a>   |                                    |                                |

## □ 조건부 투자 분야(제29조)

- 조건부(conditional) 투자분야는 대상이 되는 산업마다 법률이 규정하는 구체적 조건(예를 들어 법정자본금이라든지 의무사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을 충족하여야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함(제3조 제15호)
- 즉,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투자허가서가 발급됨
- 내국·외국투자 관계없이 조건부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음(제29조 제1항)
  - 국방, 국가의 안보, 사회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중의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오락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사업 분야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훈련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그 밖의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에서 고려할 점><sup>59)</sup>

- 무역수입업은 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판매망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의 유통법인을 지정/등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 유통업은 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정에 의하여, 2007년까지는 외국인 지분 한도 49%, 2008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 지분 한도는 폐지되나, 베트남인과의 합작법인설립이 의무사항이다.
- 부동산업의 경우는 부동산영업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자본금 규정이 존재한다.
- 조건부 투자분야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유통업의 경우와 같이 WTO Schedule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특별법 또는 시행령으로 그 규정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오히려 개방 Schedule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합작비율이 강제되는 등 과거보다 베트남 진출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야도 있다.
- 조건부 투자분야는 100%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투자액,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허가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사무실, 아파트 등 건설업의 경우는 베트남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유리><sup>60)</sup>

건설업(정확히 말하면 투자법상 부동산경영업)은 조건부 투자분야 프로젝트에 속한다. 즉, 투자가 가능하지만, 여러 조건이 많이 붙어있는 프로젝트이므로 베트남 당국과 관계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경영업의 특성상 당연히 토지사용권과 토지의 사용 용도가 사업허가를 취득함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관계, 토지작업, 용도변경작업 등 각종 관민 업무를 담당하여 줄 베트남회사와 합작을 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59)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2007), 94-95면.

60) KOTRA, 베트남 투자 A to Z(2008. 7), 63면.

- 위에서 규정된 분야 이외에, 외국투자자에 대하여는 WTO, AFTA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약속한 실시 예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도 조건부 투자분야에 포함됨(제29조 제2항, 다만, 외국투자자가 이미 투자승인을 얻어 활동 중인 분야가 국제조약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조건부 투자분야 대상으로 적용 안 됨)
- 외자계기업이 조건부 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증명서를 취득하려면 관할 관청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외자계기업의 조건부 투자 분야는 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에 있어서 다음과 같음

〈외자계기업의 조건부 투자 분야〉<sup>61)</sup>

|                                                   |
|---------------------------------------------------|
| 1. 라디오, TV 방송                                     |
| 2.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
| 3.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
| 4.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
| 5.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
| 6.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
|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
| 8. 어로 활동                                          |
| 9. 담배 제조                                          |
| 10. 부동산경영업                                        |
| 11.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
| 12. 교육, 훈련 분야                                     |
| 13. 병원 및 진료 시설                                    |
| 14.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외국에 대하여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그 밖의 분야 |

- 외자계기업이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후에 투자한 분야가 조건부 투자분야의 목록에 새로

61) 투자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부록 III(Phụ lục III) DANH MỤC LĨNH VỰC ĐẦU TƯ CÓ ĐIỀU KIỆN ÁP DỤNG CHO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8), 13면 참조.

이 추가된 경우에 투자자는 계속하여 그 분야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음(제29조 제3항)

- 베트남 측 국내투자자가 51%이상의 정관자본(chartered capital)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투자조건을 적용받음(제29조 제4항)
- 각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요구에 근거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국제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조항과 부합되도록, 베트남 정부는 향후 외국투자자의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조직의 설립, 투자형식 및 일부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련된 각 조건을 공포하여야 함(제29조 제5항)<sup>62)</sup>

## □ 투자금지분야(제30조)

- 투자법 제30조에 다음과 같이 투자금지분야가 열거되어 있음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프로젝트 : 예를 들면 (투자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부록 IV 참조),
  -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프로젝트 : 예를 들면,
  -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

62) 베트남은 WTO가입 이후, WTO 및 AFTA 국제규약 준수를 위해서 유통분야 외국기업 진출 자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베트남 유통시장이 2009년 1월부터 외국기업에게 전면 개방된다. 시장 선점을 위해 외국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며, 우리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 인간 복제 실험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예를 들면,
  - 표 1(국제협정)에 명기된 화학물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투자금지분야><sup>63)</sup>

|                                                                                                                                            |
|--------------------------------------------------------------------------------------------------------------------------------------------|
| I.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프로젝트(Các dự án gây phương hại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và lợi ích công cộng)                            |
| 1.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br>2.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br>3.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 II.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Các dự án gây phương hại đến di tích lịch sử, văn hóa, đạo đức, thuần phong mỹ tục Việt Nam)        |
| 4.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

63) 투자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부록 IV(Phụ lục IV) DANH MỤC LĨNH VỰC CẤM ĐẦU T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8), 12면 참조.

|                                                                                                                                                                                                                                                                                              |
|----------------------------------------------------------------------------------------------------------------------------------------------------------------------------------------------------------------------------------------------------------------------------------------------|
| <p>5.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p> <p>6.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p> <p>7.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p> <p>8. 인간 복제 실험</p>                                                                                                                                  |
| <p>III.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Các dự án gây tổn hại đến sức khỏe nhân dân, làm hủy hoại tài nguyên, phá hủy môi trường)</p>                                                                                                                                                   |
| <p>9.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p> <p>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p> <p>11.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p>                                                                                                                                 |
| <p>IV. 외국으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 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 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Các dự án xử lý phế thải độc hại đưa từ bên ngoài vào Việt Nam; sản xuất các loại hóa chất độc hại hoặc sử dụng tác nhân độc hại bị cấm theo quy định của các điều ước quốc tế)</p> |
| <p>12.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p>                                                                                                                                                                                                            |
| <p>V.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각종 투자 프로젝트(Các dự án đầu tư khác thuộc diện cấm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p>                                                                                                                                                                             |

## (2) 투자우대 및 지원

- 투자우대분야 ·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행하는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음(제32조 제1항)<sup>64)</sup>

64) BOT, BTO, BT의 형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는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특별우대투자분야에 포함되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2007년 5월 11일자 명령(Decree No. 78/2007/ND-CP)에서 실시분야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이 규정되고 있다.

- 위 투자우대는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규모 확장, 경영 및 생산능력의 향상, 기술혁신, 품질향상 및 환경오염개선 프로젝트에도 적용됨(동조 제2항)
- 투자법 제33조부터 제37조에 걸쳐 세금, 회계, 토지사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투자증명서에 투자우대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제38조)<sup>65)</sup>

## □ 세금우대(제33조)

- 기존 외국투자법에서는 법 자체에서 우대세율을 명시하였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그 대신에 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제1항), 투자우대분야·지역 투자자는 우대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감면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름
- 예를 들어 법인세의 우대조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참조), 이에 관하여는 2007년 2월 14일에 새로운 시행령(Decree No. 24/2007/ND-CP)이 공포되었고,<sup>66)</sup>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의 투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그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10%, 15%, 20%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우대세율이 적용되었음
- 나아가, 기존 법인소득세율은 28%이었는데(2004년 1월부터), 이를 3% 인하하여, 25%로 하는 2008년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인세법(No. 14/2008/QH12)이 통과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새로운 우대세율이 적용되게 됨
  - 예를 들어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

65) 종전의 외국인투자법 등에 의해 이전부터 투자우대를 받고 있는 투자자는 투자우대확인서 혹은 이미 발급된 투자허가서에 의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우대를 받는다(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66) 이 Decree는 그 때까지 적용되었던 2003년의 Decree No. 164/2003/ND-CP 및 2004년의 Decree No. 152/2004/ND-CP를 대체하는 것이다.

고도기술산업단지에 설립된 법인, 기술집약적 산업,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15년간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함(제13조 제1항)

- 경제사회적 조건이 낙후된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10년간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함(동조 제3항)
- 위 우대세율의 적용은 매출이 발생한 해부터 기산함(동조 제6항)

<법인세법 주요 변경 내용>

|           | 현행            | 개정                                                                                                                         | 참고                                |
|-----------|---------------|----------------------------------------------------------------------------------------------------------------------------|-----------------------------------|
| 표준세율      | 28%           | 25%                                                                                                                        | 3% 인하                             |
| 우대세율      | 10%, 15%, 20% | 10%, 20%                                                                                                                   | 15% 우대세율 폐지                       |
| 면제 및 감면기간 | 2년부터 9년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우대세율의 경우 4년 면제, 9년 50% 감면</li> <li>- 20% 우대세율의 경우 2년 면제, 4년 50% 감면</li> </ul> | 대폭적으로 축소·폐지                       |
| 시점        | 최초 과세소득 발생시   | 최초 매출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4년도부터 면제 및 감면 강제 적용                                                                       | 3년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제 및 감면기간을 유지하지 않음 |

- 베트남에서의 투자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수단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됨(제33조 제3항, 아울러 Decree No.149/2005/ND-CP 참조)

- 투자우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술이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음(동조 제 4항)

<인센티브 실효조치><sup>67)</sup>

베트남 정부는 WTO 양허안에서 수출성과에 연동되는 섬유업체에 부여하던 투자인센티브를 WTO 가입과 동시에 없애기로 약속하였고, 위 WTO 양허안 내용과 부합하게 법인세법 시행령(2007. 2.)과 시행규칙(2007. 11.)을 제정하여 수출성과에 연동되는 투자인센티브를 실효시켜 버렸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기존 투자증명서에 표시된 법인세율 10%가 실효되었고, 법인세 감면제도 역시 없어졌으므로 甲은 2007년도 회계연도부터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평 이흥배 변호사(개인적 의견)는 甲은 여전히 법인세 10%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甲이 당시 법인세 10%를 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가 생산품을 수출 100%한다는 것이었지만, 다른 조건들에 의하여도 법인세 10%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당시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법인세 10%를 인센티브를 받았던 회사로서 WTO 가입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즉 세제혜택의 실효조치가 “적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甲의 피해는 명백하며, 베트남은 법인세 혜택의 조건 하에 외국투자자 甲을 유치할 수 있었고, 甲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당시 베트남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투자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는 특별한 신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이나 현행 투자법도 모두 투자증명서에 명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장되며, 그러한 보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4가지 조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손실의 이월(제34조)

- 투자자는 세무서와 세금을 결산한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67) 짜오 베트남 칼럼에서 검색함  
([http://www.chaovietnam.co.kr/board\\_view\\_info.php?idx=1535&s\\_where=&s\\_word=&page\\_num=2&seq=128](http://www.chaovietnam.co.kr/board_view_info.php?idx=1535&s_where=&s_word=&page_num=2&seq=128)).

이를 공제할 수 있음(다만,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제35조)

-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대형 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 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토지사용에 관한 우대(제36조)

- 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인프라 건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자본의 회수가 늦게 나타나는 투자프로젝트, 낙후지역에의 투자프로젝트 등은 70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
-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투자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는 국가기관은 토지사용개발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수 있음
- 투자우대분야, 지역에 투자시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음

####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등 투자자에 대한 우대(제37조)

- 상기 분야 투자시 우대 혜택을 규정함

#### □ 출입국 복수 비자 발급(제44조)

- 베트남에서 상시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투자자

및 그 가족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비자 최장유효 기간은 5년임

## 7) 직접투자활동(제6장)

### (1) 투자증명서 취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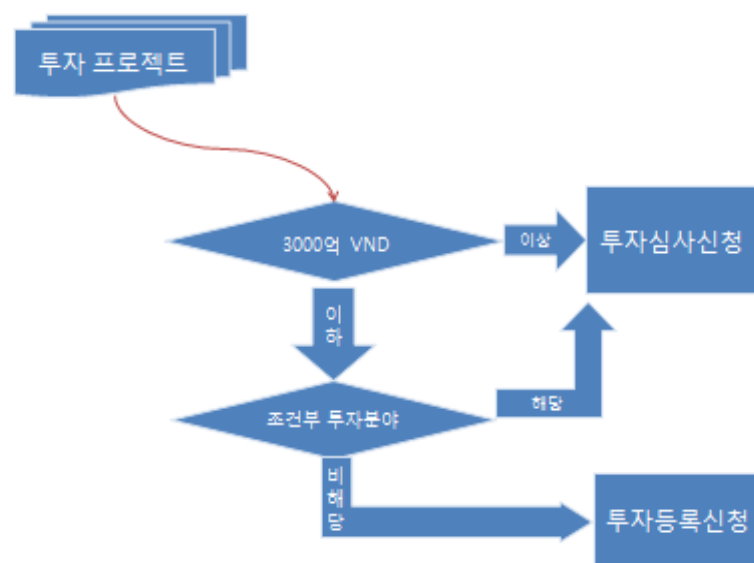
- 새로운 투자법에 따른 투자절차는 종전 투자법과 비교하면 간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종전 외국투자법에서의 투자허가제도가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투자투자등록·심사제도로 바뀜
  - 투자금액과 분야에 따라 각각의 투자절차가 다름
-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등록을 위한 서류도 갖추어 투자관리기관에 등록 또는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제50조 제1항 전문), 발급받은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는 동시에 사업등록증명서(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가 됨(동조 동항 후문)<sup>68)</sup>
- 내국인 투자에 있어서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소규모 국내투자(150억 VND 미만)의 경우에 (투자) 등록절차를 면제하지만(제45조 제1항),<sup>69)</sup> 반면 모든 외국인 투자는 등록 또는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투자자와 내국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규정과(제4조 제2항 참조), 기존의 외국투자법과 내국투자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음

68) 사업등록의 상세한 내용은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69) 내국인 투자에 있어서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소규모 국내투자(150억 VND 미만)의 경우에 (투자등록이 아닌) 기업법에 따라 사업등록(Business Registration)을 하면 된다. 사업등록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수상령(Decree No. 88/2006/ND-CP)을 참조하라.

- 2006년의 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에서 투자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투자등록과 투자심사에 대한 기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카테고리 A, B라는 투자프로젝트의 관할 구분을 하였으나, 이제는 ① 수상승인프로젝트, ② 성급 인민위원회 프로젝트, ③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프로젝트의 3가지로 나누고 있음
- 투자금액과 분야에 따라 투자증명서 취득 절차는 다음 2가지로 나뉜다
  - 등록만으로 투자증명서의 취득이 가능(3,000억 VND 미만으로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 심사를 받은 뒤에 투자증명서를 취득(위 경우 이외, 수상승인프로젝트)

<투자등록 또는 심사 절차>



## □ 등록(제45조-제46조)

- 3,000억 VND 미만 사업으로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는 투자 등록만으로 투자증명서를 취득하며(아래 그림 A 형태 상단), 투자 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를<sup>70)</sup> 발급토록 규정함(제45조, 제46조)
- 내국인 투자에 있어서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소규모 국내투자 (150억 VND 미만)의 경우에는 투자등록절차를 면제함(제45조 제1항)

〈투자업종별, 규모별 투자등록절차 및 신청서류><sup>71)</sup>

| 투자분야                          | 투자규모<br>(단위: VND) | 필요한<br>절차 | 투자절차 및 신청서류                                                                                                                                                         | 소요기간   |
|-------------------------------|-------------------|-----------|---------------------------------------------------------------------------------------------------------------------------------------------------------------------|--------|
|                               | 150억 미만           | 없음        |                                                                                                                                                                     |        |
| 투자우대분야<br>및 일반분야<br>국내 투자프로젝트 | 150억-3천억          | 투자등록      | < 투자등록 제출서류 ><br>-투자자의 법적 자격<br>-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br>-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 시행일정<br>-토지사용면적 및 환경보호 협약서<br>-투자인센티브 요청서(있을 경우)                                                | 15일 이내 |
| 투자우대분야<br>및 일반분야<br>외국 투자프로젝트 | 3천억 미만            | 투자등록      | <투자등록 제출서류><br>-투자자의 법적 자격<br>-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br>-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 시행일정<br>-토지사용면적 및 환경보호 협약서<br>-투자인센티브 요청서(있을 경우)<br>-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br>-합작계약서 또는 BCC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 | 15일 이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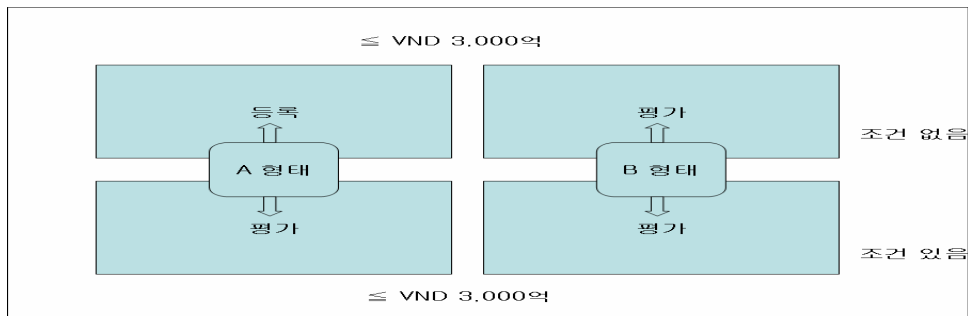
70) 종전에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licence)라고 하였다.

71)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방에서 검색함.

## □ 심사(평가)(제47조-제49조)

- 투자자본규모가 3,000억 VND 이상인 국내투자프로젝트 또는 외국 투자프로젝트와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투자심사(평가)절차를 행하여야 함(제47조 제1항)
- 투자액(3,000억 VND 기준) 및 투자분야(조건부 여부)에 의해 심사(평가)절차는 3가지 경우로 나뉜

<등록 및 평가(심사)>



-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니더라도 3,000억 VND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위 그림 B 형태 상단) 평가(심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투자업종별, 규모별 투자심사절차 및 신청서류><sup>72)</sup>

| 투자분야                               | 투자규모<br>(단위: VND) | 필요한<br>절차 | 투자절차 및 신청서류                                                                                                                   | 소요기간                                  |
|------------------------------------|-------------------|-----------|-------------------------------------------------------------------------------------------------------------------------------|---------------------------------------|
| 투자우대분야<br>및 일반분야<br>국내외 투자<br>프로젝트 | 3천억 이상            | 투자심사      | <투자심사 제출서류><br>-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br>-투자자 법적 자격 확인서<br>-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br>-투자 경제·기술설명서<br>* 투자프로젝트 목적<br>*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br>이행 | 투자심사기<br>간(30일 미<br>만, 필요시<br>최대 45일) |

72)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방에서 검색함.

|  |  |  |                                                                                                                                                                                         |  |
|--|--|--|-----------------------------------------------------------------------------------------------------------------------------------------------------------------------------------------|--|
|  |  |  | 계획<br>* 기술수단<br>* 환경대응책<br>-외국투자자는 합작계약서 또는 BCC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br><br><투자심사 내용><br>-기술기반시설개발계획<br>-토지사용개발계획<br>-건설개발계획, 광산 및 기타 자원이용개발계획과의 적합성<br>-토지사용면적<br>-프로젝트이용계획<br>-환경문제 관련 해결책 |  |
|--|--|--|-----------------------------------------------------------------------------------------------------------------------------------------------------------------------------------------|--|

-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조건부 투자분야는(위 그림 A 및 B 형태 하단) 평가(심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아가 조건부 투자분야는 다시 3,000억 VND 기준으로 평가(심사)절차에 있어서 제출서류가 나뉨(제49조)

<투자업종별, 규모별 투자심사절차 및 신청서류>73)

| 투자분야                                        | 투자규모<br>(단위:<br>VND) | 필요한<br>절차 | 투자절차 및 신청서류                                                                                                                                                            | 소요기간                                        |
|---------------------------------------------|----------------------|-----------|------------------------------------------------------------------------------------------------------------------------------------------------------------------------|---------------------------------------------|
| 조건부<br>투자분야<br>(내외국 투자<br>프로젝트 여부와<br>관계없이) | 3천억<br>미만            | 투자심사      | <투자심사내용><br>-투자승인 전제조건 충족방안 시행계획서<br>심사<br>-투자 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할 전제 조건<br>항목별 심사<br>-투자자 제출 등록서류 심사<br><br><투자심사 제출서류><br><br>○ 국내투자프로젝트의 경우<br>-투자승인 전제 조건 충족 방안 시행계획<br>서 | 투 자 심 사<br>기간(30일<br>미만, 필<br>요시 최<br>대45일) |

73)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방에서 검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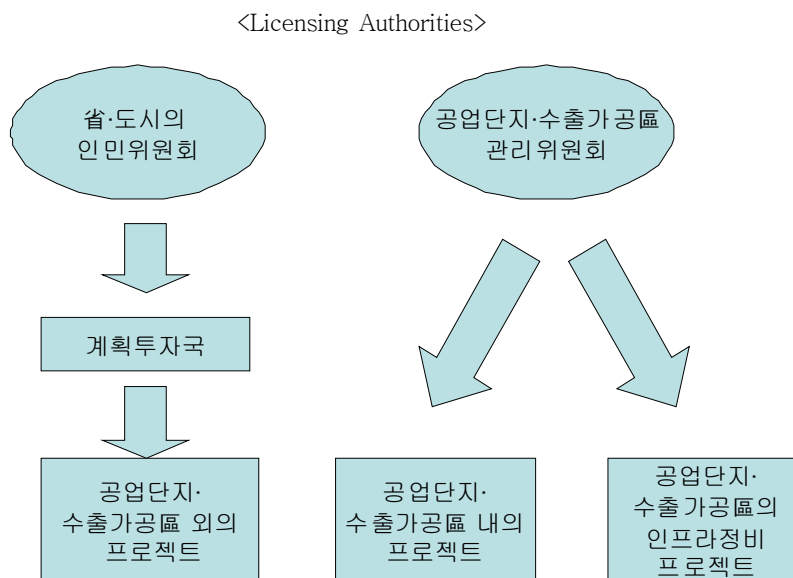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자 법적자격</li> <li>-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li> <li>-투자 자본, 투자 프로젝트 시행 일정</li> <li>-토지사용면적 및 환경보호 협약서</li> <li>-투자 인센티브 요청서(있을 경우)</li> </ul> <p>○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승인 전제 조건 충족 방안 시행계획서</li> <li>-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li> <li>-합작계약서 혹은 BCC 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li> <li>-투자자 법적자격</li> <li>-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li> <li>-투자 자본, 투자 프로젝트 시행 일정</li> <li>-토지사용면적 및 환경보호 협약서</li> <li>-투자 인센티브 요청서(있을 경우)</li> </ul>                                                                                      |                                          |
|  | 3천억 이상 | 투자심사 | <p>&lt;투자심사 제출서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승인 전제 조건 충족 방안 시행계획서</li> <li>-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li> <li>-투자자 법적자격 확인서</li> <li>-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li> <li>-경제·기술 설명서</li> <li>* 투자프로젝트 목적,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 이행계획</li> <li>* 기술수단</li> <li>* 환경대응책</li> <li>-외국투자자는 합작계약서 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li> </ul> <p>&lt;투자심사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 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할 전제 조건 항목별 심사</li> <li>-기술기반시설 개발계획</li> <li>-토지사용, 개발계획</li> <li>-건설개발계획, 광물 및 기타 자원 이용개발 계획</li> <li>-토지 면적</li> <li>-프로젝트 이행 일정</li> <li>-환경문제 관련 해결책</li> </ul> | 투자심사<br>기간(30일<br>미만, 필<br>요시 최<br>대45일) |

## □ 수상의 승인

- 2006년의 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에서 투자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투자등록과 투자심사에 대한 기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투자프로젝트의 관할에 있어서 카테고리 A, B라는 구분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즉,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그 내용에 따라 ① 수상, ② 성급 인민위원회의 계획투자국, ③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관리위원회의 승인 프로젝트로 나뉨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젝트는 수상이 승인기관임(투자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공항 건설 및 경영, 항공 운송 운영
  - 국립 항만 건설 및 경영
  - 석유 및 희소자원의 탐사, 개발, 제조, 광물 탐사 및 개발
  - TV, 라디오 방송
  - 카지노 운영 투자
  - 담배 생산
  - 대학 교육과정 시설 설립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설립
- 위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분야에 속한 자본규모 1조 5000억 VND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도 국내·외 프로젝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의 승인 프로젝트임(투자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 전력 사업, 광물 채련, 금속 채련
  - 철도, 도로, 수로 기반시설 건설
  - 주류, 맥주 생산 및 경영

- 다음 분야의 외국투자 프로젝트도 수상의 승인이 필요함(투자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 해양운송 사업
  - 우편, 통신, 인터넷망 구축 및 서비스 공급, 전파 전송망 구축
  - 신문잡지의 인쇄, 발행, 출판업
  - 독립된 과학연구시설의 설립
- 은행·보험·회계와 같은 특수영역은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수상 승인 프로젝트이었지만) 수상승인에서 제외됨(이러한 분야는 WTO 가입에 수반하여 시장개방이 약속됨)

## □ 투자증명서 발행 관할 기관



- 계획투자부(MPI)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의 많은 부분을 성급 인민위원회 및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여기서는 이를 공업단지 등이라고 함)의 관리위원회에 이관하였는데, 예를 들어 3,000억 VND 미만으로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 투자프로젝트의 신청서류의 수리, 투자증명서의 발급은 수상승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공업단지 등의 관리위원회가 행함(투자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 다만, 금융·보험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관련된 기관이 여전히 승인과 허가기관임
- 성급 인민위원회의 관할(시행령 제38조)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투자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인프라정비프로젝트 가운데 아직 당해 지역에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원회의 관할임(시행령 제39조)
- 중앙정부의 의견을 물어야 하거나 시행 규정이 완전하지 않은 투자 형식인 경우에는 투자증명서의 발급이 장기간 지체되기도 함

APPENDIX I-1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for cases not associated with establishment of enterprise or branch)*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01] To:

[02] Name of investor:

Hereby registers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with the following contents:

[11] 1.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

[12] 2. Lo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roposed area of land to be used:

[13] 3. Objectives and scale of the project:

[14] 4. Proposed investment capital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5] Of which: Capital contribu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6] 5. Duration of operation:

[17] 6.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8] 7. Recommendations [of the investor]<sup>1</sup> on entitlement to investment incentives:

8. The investor undertakes :

(a)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investment application file; and

(b) To comply strict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and of the Investment Certificate.

Dated:.....

[19]

INVESTOR

[20] Documents attached:

74) APPENDIX I-1 of Decision No. 1088/2006/QĐ-BKH.

APPENDIX I-3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for cases associated with establishment of enterpris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To: [01]

[02] Name of investor:

Hereby registers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organization in order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with the following contents:

I. Contents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 [03] 1. Name of the enterprise:
- [04] 2. Address of the head office:
- [05] Branch/Representative Office (if any):
- [06] 3. Type of enterprise being registered for establishment:
- [07] 4. Legal representative of the enterprise:
- [08] 5. Business lines:
- [09] 6. Capital of the enterprise:
- [10] 7. Legal capital:

II. Contents of the investment project:

- [11] 1.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
- [12] 2. Lo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roposed area of land to be used:
- [13] 3. Objectives and scale of the project:
- [14] 4. Proposed investment capital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 [15] Of which: Capital contribu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 [16] 5. Duration of operation:
- [17] 6.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 [18] 7. Recommendations [of the investor] on entitlement to investment incentives:

III. The investor undertakes:

- 1.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investment application file; and

75) APPENDIX I-3 of Decision No. 1088/2006/QĐ-BKH.

2. To comply strict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and of the Investment Certificate.

Dated:.....

[19]

INVESTOR

[20] Documents attached:

## (2) 투자프로젝트 진행(전개)

### □ 투자프로젝트 조정(제51조)

- 투자등록 프로젝트는, 투자 프로젝트 변경사항(목적, 규모, 장소, 법적 형태, 자본, 기한 등) 발생시 수정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성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함
- 투자심사 대상 프로젝트는 해당 성 투자관리기관에 투자 프로젝트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함
- 해당 성은 수정 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수정 결과(투자증명서 수정)를 투자자에게 통보함

### □ 외국투자프로젝트 기간(제52조)

- 내국투자 프로젝트에는 활동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투자 프로젝트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는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프로젝트의 기간은 투자증명서에 기재됨

## □ 다수 경쟁 프로젝트의 투자자 선정(제54조)

- 개발시행계획이 확정된 중요 프로젝트에 복수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경우에 입찰법 규정에 의해 입찰을 실시,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를 결정함

## □ 토지 임대, 교부(제55조)

-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 토지관리기관과 접촉하여 토지임대·교부절차를 행하여야 하며, 토지의 임대·교부 순서와 절차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름
- 투자자가 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며, 투자증명서도 회수함
- 개정된 토지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토지법은 총 7장에 146조로 구성되어 있음(자세히는 후술)

## □ 건설용지의 준비(제56조, 제58조)

- 사안별 건설용지의 준비는 다음과 같음

〈사안별 건설용지의 준비〉

| 구 분                                               | 내 용                                               |
|---------------------------------------------------|---------------------------------------------------|
|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 수용, 보상 및 철거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 투자자에게 임대 가능   |
|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하여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전차하는 경우 | 투자자가 자력으로 토지 보상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함                     |
| 투자자가 토지사용자와 보상, 철거에 합의하였으나, 토지사용자가 미이행시           | 투자프로젝트 실시 지역 소재 관할 인민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철거를 행할 책임이 있음 |

|                                                 |                                                      |
|-------------------------------------------------|------------------------------------------------------|
|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 | 투자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임대 가능 |
|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기술설계, 견적, 예산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건설법에 따라 시행                                           |

## □ 천연자원 등의 개발·사용(제57조)

- 천연자원, 광산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는 천연자원, 광산법의 규정을 따름
- 참고로 보면, 1996년 3월에 제정된 광물법이 2005년 6월에 개정되었고,<sup>76)</sup> 천연자원환경부는 2006년 1월에 광업권신청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sup>77)</sup>

〈베트남 정부의 자원 개발에 대한 기본 입장><sup>78)</sup>

|                                         |
|-----------------------------------------|
| ○ 석탄 원유와 같은 주요 광물은 정부 주도로 개발            |
| ○ 기타 다른 광업 부분은 비정부기관 및 개인에 의한 개발        |
| ○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말미암아 광업 부분 전반에 대한 정부 투자 제한 |

76) No. 46/2005/QH11.

77) No. 1/2006/TT-BTNMT.

78) 베트남에 대한 우리 투자 프로젝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KOTRA, 베트남자원개발진출가이드(2008), 40-41면.

| 년도        | 활동                                                      | 관련 기관    |
|-----------|---------------------------------------------------------|----------|
| 1992-현재   | 석유가스탐사 및 생산                                             | KNOC, SK |
| 1999-2001 | Phuoc Thanh Phuoc Son 지역의 지질 및 광물조사에 관한 프로젝트(Quang Nam) | KORES    |
| 2008. 3.  | 석회석 생산프로젝트가 승인                                          | Omya     |

## □ 투자자의 유통업 활동(제60조)

-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상품판매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 투자자는 생산,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 권한을 스스로 가지며,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 판매가격은 국가기관이 공표하는 가격 체계에 따름

## □ 외화계좌, 베트남동화(VND)계좌의 개설(제61조)

- 투자자는 베트남에서의 사업활동이 허가된 은행에서 외화계좌 및 베트남동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베트남국가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투자자는 외국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국내 및 외국은행에서의 계좌 개설, 사용 및 폐지는 베트남국가은행의 규정에 따름

## □ 투자프로젝트의 일시정지, 투자증명서의 회수(제64조)

-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일시정중지할 때에 투자관리국가기관에 통보하여 정지기간 동안 토지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고 12개월 경과 후 투자프로젝트가 실시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진행계획에 따른 실시능력이 없을 경우에 투자증명서는 회수됨

## □ 투자프로젝트의 종료(제65조)

-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사유와 관련, 법률위반(in case of violation of law)을 이유로 투자관리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하고 있는데(제65조 제4항), 이는 종전 외국투자법에서 "심각한"(serious) 법률위반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하여 요건이 강화된 것이며, 외국투자자에게 사소한 법률위반으로도 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음
- 또한 투자관리기관이나 법원 이외에 중재기관의 결정으로 투자프로젝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임

## □ 국가의 보증(제66조)

- 정부는 중요한 투자사업(important investment projects)에 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 공급, 제품의 판매, 지급보증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규정함(제66조)
- 다만, 여기서 중요한 투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음

### III. 외국인투자 관련 그 밖의 중요 법령의 분석

#### 1. 새로운 기업법(Enterprise Law)

##### 1) 기업법의 의의

- 베트남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법 이외에 나아가 분석이 필요한 법률은 (통일)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Enterprise Law)으로,<sup>79)</sup> 기업법은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 규율임
- 종전의 기업법은 베트남의 내국기업을 위한 규정이었고, 한편 종전에 외국계기업의 조직 및 경영기구 등은 외국투자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였으나,<sup>80)</sup> 200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도 동일하게 새로운 기업법을 적용받게 됨
- 종전의 외국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계기업도, 종전 투자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법 제170조에 의해 재등록을 할 것인지 여부의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재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신청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임(Decree No. 101/2006/ND-CP 참조)<sup>81)</sup>

79) No. 60/2005/QH11.

80) 일반적 회사에 대하여는 1990년의 「회사법」→1994년의 개정→1999년의 「기업법」이 규율하였고, 국유기업에 대하여는 1995년의 「국유기업법」→2003년의 개정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업법 제171조 참조. Điều 171. Hiệu lực thi hành

1.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7 năm 2006.

2. Luật này thay thế Luật doanh nghiệp năm 1999; Luật doanh nghiệp nhà nước năm 2003,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66 của Luật này; các quy định về tổ chức quản lý và hoạt động của doanh nghiệp tại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năm 1996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năm 2000.

81) 2006년 7월 1일 이전 외국투자법 혹은 특별 법령으로 설립되었던 베트남 내 외자계기업의 법

- 계획투자부의 외국투자국에 의하면, 재등록을 행한 기업은 약 대상 기업의 6.6%, 460社로 대단히 적은 숫자임
-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외자계기업의 투자승인서 재등록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임

<변경·전환의 선택><sup>82)</sup>

재등록 시행령(Decree No. 101/2006/ND-CP 참조)에 의하면 대상 기업은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굳이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러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점은 없다 할지라도 현재 개정되는 모든 법령이 새로운 기업법을 기준으로 개정되고 있고 종전 법에 따른 기업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기업법이나 새로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위 시행령상의 절차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외자계기업의 재등록 신청서><sup>83)</sup>

**APPENDIX I-13**

**Re-Registration of Enterprise and Investment Project**

*(for cases of re-registration of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ed capital issued with investment license prior to 1 July 2006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RE-REGISTRATION OF ENTERPRISE AND INVESTMENT PROJECT**

To: [01]

[02] Name of investor:

The investor is currently implementing the investment project pursuant to

인형태를 새로운 기업법에 맞도록 수정하기를 권유하는 임시조치로 2006년 9월 21일 외자계기업의 재등록에 관한 명령(Decree No. 101/2006/ND-CP)이 발효되었다.

82)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2007), 131면.

83) APPENDIX I-13 of Decision No. 1088/2006/QĐ-BKH.

investment license ...(specify number of the license, and date and place of issuance)... .

Hereby re-registers the enterprise and investment project with the following contents:

(Write the relevant items stipulated in the investment license and any amended licenses which have been issued and specify out any proposal for amendments or addition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adings:)

I. Contents of re-registration of the enterprise:

[03] 1. Name of the enterprise:

[04] 2. Address of the head office:

[05] Branch/Representative Office (if any):

[06] 3. Type of enterprise:

[07] 4. Legal representative of the enterprise:

[08] 5. Business lines:

[09] 6. Capital of the enterprise:

[10] 7. Legal capital:

II. Contents of the investment project:

[11] 1.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

[12] 2. Lo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rea of land used:

[13] 3. Objectives and scale of the project:

[14] 4. Investment capital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5] Of which: Capital contribu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6] 5. Duration of operation of the project:

[17] 6.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8] 7. Recommendations [of the investor] on entitlement to investment incentives:

III. The investor undertakes:

1.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file for re-registration of the enterprise and the investment project; and

2. To comply strict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and of the Investment Certificate.

Dated:.....

[19] INVESTOR

[20] Documents attached:

## 2) 기업법의 특징

- 새로운 기업법은 사회주의 하에서 시장경제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로 개혁노선을 이끌기 위해 외국기업, 내국기업, 국영기업, 개인 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
- 새로운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설립과 운영, 설립허가서의 작성, 주주, 이사회, 경영자, 감독위원회의 권리와 책임, 나아가 연차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편성방법,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종전의 기업법에서는 국영기업의 독점 등으로 사업분야가 일부 분야에서 제한되었으나, 새로운 기업법에서는 사업분야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짐
- 새로운 기업법에서는 정부기관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던 자본의 증액·양도, 나아가 금지되어 있던 자본의 감액이 정부기관에의 보고의무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등 비교적 유연한 기업운영을 인정하고 있음

《새로운 기업법과 종전 기업법의 비교》

|          | 새로운 기업법                        | 종전 기업법                          |
|----------|--------------------------------|---------------------------------|
| 적용대상     | 외국기업을 포함 기업특성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 | 국내기업만 기업법을 적용                   |
| 결의방법     | 정관에 기한 결의                      | 만장일치                            |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의 변경 가능                    | 사업내용의 변경은 승인사항                  |
| 종업원 채용   | 독자적 채용 가능                      | 공적인재파견기관을 통하고, 불가능한 경우 독자 채용 가능 |
| 수입계획의 등록 | 수입계획의 등록 불필요                   | 수입계획(건설자재·원재료가 대상)을 등록          |
| 회사명칭     | 회사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규정 명시        | 종전 법에는 회사명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었음       |

### 3) 기업법의 주요 내용

- 새로운 기업법은 총 10장 172개조로 모든 기업형태에 적용되는 통일법인데, 기업의 설립으로부터 청산까지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분                  |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 적용범위-제12조 기업의 문서보관제도                         | 기업법의 적용범위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개인기업 및 기업집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기업법의 주요 용어설명 및 기업의 권리 및 의무, 금지행위 등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제2장 기업의 설립과 사업등록    | 제13조 기업설립, 출자, 주식매입, 관리권-제37조 기업의 대표사무소, 지사, 사업장 | 기업의 설립, 타 법인출자, 사업등록 절차 및 사업등록증명서 내용, 회사정관의 내용, 출자시 자산소유권의 이전, 출자자산의 평가, 기업 상호, 본사, 기업의 직인, 대표사무소, 지사, 사업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제3장 유한회사(제38조~제76조) | 제1절 2인 이상 사원유한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회사의 조직구성 및 사원총회, 증자·감자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이윤배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제2절 1인 유한회사                                      | 1인 유한회사의 소유주의 권리 및 의무, 관리조직의 구성, 대표이사,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제4장 주식회사            | 제77조 주식회사-제129조 주식회사의 정보공개                       | 주식회사의 정의,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 및 의무, 주식 및 채권에 관한 사항, 배당 및 주식환매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관리구조(주주총회, 이사회, 사장 또는 회장, 감사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                                                                                                                                                                             |
|-----------------------|------------------------------------|-----------------------------------------------------------------------------------------------------------------------------------------------------------------------------|
| 제5장 합명회사              | 제130조 합명회사-제140조 출자사원의 권리와 의무      | 합명회사는 최소 2인의 사원(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공동 소유한 형태이다. 기업법에서는 출자확인서에 관한 규정, 무한책임사원의 권리 및 의무, 유한책임사원의 권리 및 의무, 사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합명회사의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제6장 개인기업              | 제141조 개인기업-제145조 개인기업 매각           | 개인기업이란 개인 1인이 기업주이며 동시에 기업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타법인 형태와 다르다. 또한 개인은 한 개의 개인기업만을 설립할 수 있다. 법에서 기업의 투자자본, 관리 및 운영, 매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제7장 기업집단              | 제146조 기업집단-제149조 경제집단              |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모회사의 의무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제8장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 제150조 기업분할-제160조 기업파산              | 기업분할, 분리, 신설합병, 흡수합병 및 회사형태의 다른 형태로의 전환, 기업의 매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제9장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 제161조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업무의 내용-제165조 위반처분 | 국가의 기업에 대한 관리책임 및 내용, 사업등록기관의 조직구조 및 임무, 기업의 의무위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제10장 부칙               | 제166조-제172조                        | 국영기업의 전환, 신기업법 발효 이전 설립된 기업의 재등록의무, 시행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1) 기업법의 적용대상

○ 기업법의 적용대상은 기업(Doanh nghiệp)인데, 기업이란 상호, 자

산, 일정한 사무소를 가지고 법률에 규정된 상행위를 하기 위해 사업등록을 한 경제조직을 말함(기업법 제4조 제1호 : 이하 조문만 표시)

## (2) 외자계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의무

- 기업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기업(외자계 기업 포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등록증명서에 기재한 분야 및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행하여야 하고, 조건부 분야에 관한 사업을 행할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조건을 담보할 의무
  - 회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록을 작성하고, 정확한 재무제표를 회계기간에 맞추어 제출할 의무
  -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
  -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 기해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그 밖의 보험제도를 시행할 의무
  -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시된 표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의무
  - 통계법의 규정을 준수한 통계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정보와 기업의 재정현황을 규정 양식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성실히 보고할 의무, 보고서 또는 신고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적시에 수정·보완할 의무
  -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자원 및 환경 보호, 역사·문화 유적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의무

### (3) 회사의 종류

- 투자자는 기업법에 따른 기업의 종류를 선택한 뒤, 앞에서 설명한 투자법에 따라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 투자증명서가 바로 동시에 기업의 사업등록증명서(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역할을 함
- 기업법은 개인기업(doanh nghiệp tư nhân),<sup>84)</sup> 합명회사(công ty hợp danh), 유한회사(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의 4종류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있음
- 개인기업은 개인 1인이 기업주이며 동시에 기업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증권을 발행하지 않음(제141조)
- 기업법에서는 유한회사를 사원(출자자)이 1인으로 이루어지는 1인 유한회사와 사원이 2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1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한회사의 설립도 가능함
- 1인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운영방식이 간단하고, 내부 의사결정 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마음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으며,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증자는 할 수 있으나 감자는 금지됨
-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설립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으나, 지분의 양도가 사원의 서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을 통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서에 따른 운영상의 규제가 있을 수 있음

---

84) 우리 상법은 개인기업을 회사편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베트남 기업법은 개인기업을 다른 회사와 함께 규율하고 있다.

-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자계기업은 유한회사의 형태의 회사설립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외자계기업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할 수 있게 됨

<1인 유한회사 설립시 유의할 점><sup>85)</sup>

1인 유한회사는 감자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감자는 설립 후 3년이 지나야 하고, 그것도 회사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여 자본금을 감자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절차로서 설립 당시부터 감자를 고려한 회사 종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처음에 1인 유한회사를 택한 뒤, 3년 정도 후에 2인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2인 유한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인 유한회사가 정관자본금을 완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지분을 양도하여 2인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에 지분 양도인은 양도지분 차액에 대하여 28%의 지분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제2, 제3의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 (4) 회사의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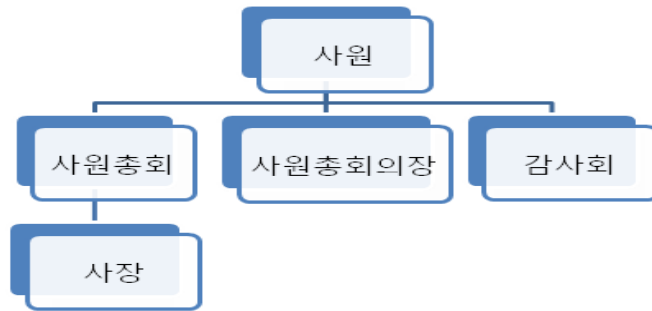
##### □ 유한회사

- 기업법에서는 유한회사를 사원(출자자)이 1인으로 이루어지는 1인 유한회사와 사원이 2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로 구분하고, 회사의 기관에 대하여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1인 유한회사의 기관의 설치방법은, ① 출자자가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 ② 출자자가 수권대표자를 여러 명 선임하여 사원

85) KOTRA, 베트남 투자 A to Z(2008. 7), 27-2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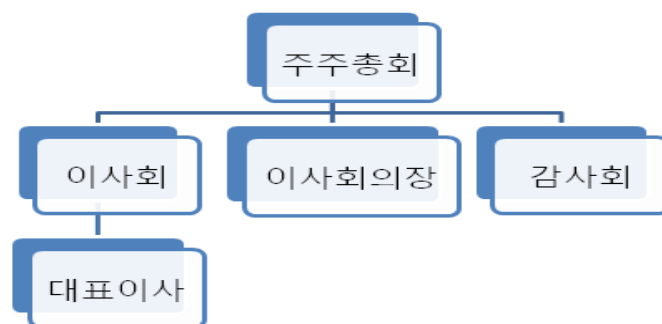
총회를 구성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음

-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의 기관은 출자자에 의해 구성되는 사원총회, 사원총회의 의장, 대표이사로 구성되고, 11인 이상의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나아가 감사회도 조직되어야 함(베트남 기업법 제30조)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출자자)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및 감사회(법인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필수기관, 개인주주만의 주식회사에서는 11명 이상의 경우에 필수기관)로 이루어짐



## (5) 의사결정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의사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                | 유한회사    |                    | 주식회사                     |
|----------------|---------|--------------------|--------------------------|
|                | 1인의 구성원 | 2인 이상의 구성원         |                          |
| 구성원과 주주에 관한 규정 | 1인      | 2인 이상<br>50인 초과 불가 | 최소 3인의 주주<br>최대 인원 제한 없음 |
| 주식발행           | 불가      |                    | 가능                       |
| 증권시장상장         | 불가      |                    | 상장조건 충족시<br>가능           |

|                                 | 1인 유한회사     |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       | 주식회사                   |
|---------------------------------|-------------|----------------------|------------------------|
| 최고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 사원총회                 | 주주총회                   |
| 중요한 결의<br>(정관의 변경,<br>회사의 해산 등) | 출석자의 75% 이상 | 출석자의<br>출자총액의 75% 이상 | 출석자의 의결권<br>총수의 75% 이상 |
| 기타<br>(결산의 승인 등)                | 출석자의 50% 이상 | 출석자의<br>출자총액의 65% 이상 | 출석자의 의결권<br>총수의 65% 이상 |

- 외국투자자의 경영권 확보와 관련하여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정족수가

65% 이상인데(정관의 변경 이외의 사항; 제52조, 제102조), 과반수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sup>86)</sup>

- 베트남이 서비스업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 업종별로 합작기업의 49% 지분 취득 허용 업종, 51% 지분 취득 허용 업종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베트남 기업법이 적어도 65%의 찬성표가 있어야 총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한 것 때문에 51%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안건 통과에 필요한 65%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쟁점이 됨
- 그리하여 베트남 국회 결의(Resolution No. 71/2006)에 의해 5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기업법의 규정과 위 국회의 결의의 내용적 충돌에 대하여, WTO 양허안 서비스업 개방 일정에 포함된 업종은 정관에서 51% 이상의 범위에서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함

## 2. 금융 관련 법제

### 1) 금융감독기관

- 베트남의 금융업계는 크게 3개의 감독당국(즉, 중앙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및 재무부)으로 나뉘었음(각각 관할하는 법규가 다름)
  -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줄여서 SBV)이<sup>87)</sup> 금융기관법(Law on Credit Institutions)에 기한 은행을 감독함
  - 증권법(Securities Law)에 기한 증권회사 및 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줄여서 MOF) 소속의 국가증권위원회

86) 서헌제 외 2인, 베트남 기업법, 법학논문집(2008. 8), 181면.

87) <http://www.sbv.gov.vn/vn/home/index.jsp>가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State Securities Commission: 줄여서 SSC)가 감독하고 있으며,<sup>88)</sup> 비공모로 발행된 企業債에 대하여는 재무부(MOF) 금융기관국이 관할하고 있음

- 보험업법(Law on Insurance Business)에 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재무부(MOF)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감독하고 있음(보험법 제121조)<sup>89)</sup>

- 2008년 3월 3일 국가금융감독위원회(The National Finance Supervisory Council: 줄여서 NFSC)의 설치에 관한 首相決定(Decision 34-2008-QD-TTg)이 성립하였는데,<sup>90)</sup> 국가금융감독위원회(NFSC)는 은행, 증권 및 금융 분야에 있어서 총리를 보조하여, 금융정책의 제안, 통화계획에 대한 컨설팅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권고 및 정보제공의 기능도 수행하지만, 베트남국가은행(SBV), 재무부(MOF) 및 국가증권위원회(SSC)가 가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과 조치권 등이 주어지지 아니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이외의 실질적인 감독권한은 없는 상태임<sup>91)</sup>

## 2) 금융기관 법제

### (1) 의의

- 베트남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의 규제에 관한 법으로, 1997년

---

88) 국가증권위원회의 감독대상에는 공개회사(상장회사를 포함) 및 그 발행하는 증권거래, 증권회사, 운용회사, 증권거래센터, 증권거래소, 증권예약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가증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0일에 제정된 首相決定이 있다.  
<http://www.mof.gov.vn/Modules/DeedDownloadE.aspx?DeedID=93613> 참조.

89) 지방인민위원회에게도 감독책임이 있다(보험업법 제121조).

90) 전 베트남 중앙은행(SBV) 총재이었던 Le Duc Thuy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91) 짜오베트남 법률칼럼에서 검색함.

에 제정된 베트남 중앙은행법인 ‘베트남국가은행법’(Law on the State Bank of Vietnam)과<sup>92)</sup> 금융기관에 관한 법인 ‘베트남금융기관법’(Vietnam Law on Credit Institutions)을<sup>93)</sup> 들 수 있음<sup>94)</sup>

- 이후 다음과 같이 개정됨
  - 베트남국가은행법 : Law on the State Bank of Vietnam 01/1997/QH10 dated 12 December 1997 as amended on 17 June 2003
  - 베트남금융기관법: Vietnam Law on Credit Institutions 02/1997/QH10 dated 12 December 1997 as amended on 15 June 2004
- 베트남국가은행법은 베트남의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SBV)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국가은행의 역할, 직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2008년 8월 26일 명령(No. 96/2008/ND-CP)이 있음

## (2) 금융기관

- 베트남국가은행(SBV)은 중앙은행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책임이 있음
- 베트남국가은행(SBV)은 1988년에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베트남국가은행(SBV)으로부터 분리된 4개의 국영상업은행(State owned commercial bank; SOCB)이 설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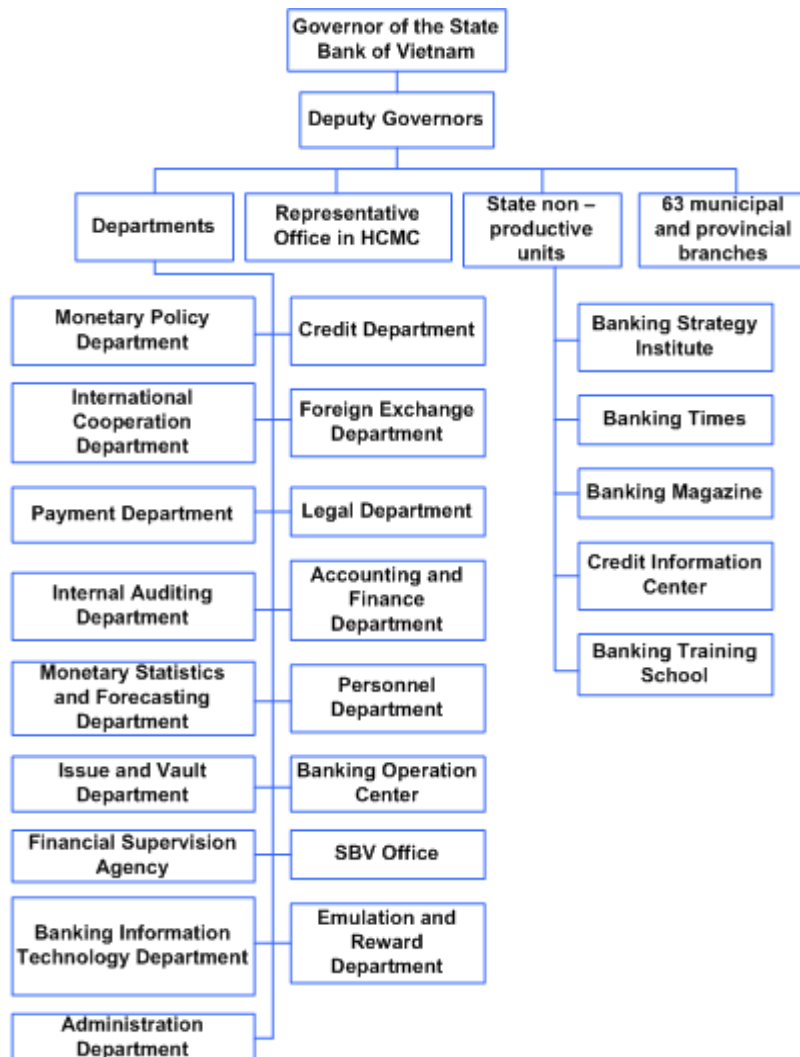
---

92) 1997년 5월 19일 법률(No. 01/1997/QH10).

93) 1997년 12월 12일 법률(No. 07/1997/QH10).

94) 고동원, 베트남 금융관계법의 최근 제·개정 동향과 시사점, 저스티스(2005. 8), 196면.

<베트남국가은행 조직도>



- 국가가 100% 출자하여 1988년에 설립된 4개의 국영상업은행은 대외무역은행(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sup>95)</sup> 투자개발은행(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95) 1963년에 국영상업은행으로 설립되었고, 1988년 개혁 이전에는 베트남국가은행(SBV)의 감독 하의 유일한 해외거래은행이었다.

BIDV),<sup>96)</sup> 농업지방개발은행(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VBARD)<sup>97)</sup> 및 상공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 Incombank)임<sup>98)</sup>

- 1997년에 베트남 남부를 거점으로 하는 Mekong Delta Housing Development Bank가 설립됨(Decision No 769/TTg dated 18/9/1997)
- 현재 다음과 같은 6개의 국영금융기관이 있음(5개의 상업은행과 1개의 정책은행<sup>99)</sup>)

<국영금융기관>

| 명칭                                                | 허가 번호 및 일자                          | 자본금<br>(10억VND) | 본점               | 지점 및<br>영업센터<br>의 수 |
|---------------------------------------------------|-------------------------------------|-----------------|------------------|---------------------|
| Vietnam Bank for Social Policies                  | 230/QĐ-NH5<br>Sep 1, 1995           | 5.988           | Hanoi            | 65                  |
| Vietnam Bank for Industry and Trade               | 285/QĐ-NH5<br>Sep 21, 1996          | 7.554           | Hanoi            | 138                 |
| Vietnam Bank for Agricultural & Rural Development | 280/QĐ-NH5<br>Oct 15, 1996          | 10.400          | Hanoi            | 115                 |
| Mekong Delta Housing Development Bank             | 769/TTg<br>Sep 18, 1997             | 744             | Ho Chi Minh City | 32                  |
| Vietnam Development Bank                          | 108/2006/QĐ-<br>TTg<br>May 15, 2006 | 5.000           | Hanoi            | 62                  |

96) 1957년에 설립되어 Vietcombank와 마찬가지로 1988년에 정책은행에서 국영상업은행으로 바뀌었고, 특색은 전통적으로 중장기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97) 1988년에 설립되었고, 은행의 명칭처럼 농촌이나 지방에 중점적인 점포배치를 하여, 최대 지점망을 가지고 있다.

98) 1988년에 설립되었고, 민간부문용자에 힘을 쏟고 있다.

99) <http://www.sbv.gov.vn/vn/home/index.jsp> 참조.

|                                              |                            |       |       |     |
|----------------------------------------------|----------------------------|-------|-------|-----|
|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 | 287/QĐ-NH5<br>Sep 21, 1996 | 7.490 | Hanoi | 103 |
|----------------------------------------------|----------------------------|-------|-------|-----|

- 국영상업은행에 이외에 주식회사 조직인 합작은행(joint stock bank: 줄여서 JSB)이 있는데, 현재 37개가 있음<sup>100)</sup>
- 2007년에 들어서 국영상업은행을 포함한 대형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주식화 과정의 절정기에 돌입하였는데, 베트남 정부의 주식화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까지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주식화가 완료될 것이므로 이제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게 됨

### (3) 외국계 은행

- 외국계 은행의 지점이 있는데, 40여개의 외국계 은행의 지점은 베트남 전체 대출의 15% 미만을 담당하고 있음

<외국계은행>

| No | 은행명                                                     | 허가일자 번호 및 일자            | 자본금<br>(100만 USD) |
|----|---------------------------------------------------------|-------------------------|-------------------|
| 1  | NATIXIS (France)                                        | 06/NH-GP June 12, 1992  | 15                |
| 2  | ANZ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 (Australia) | 07/NH-GP June 15, 1992  | 20                |
| 3  | ANZ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 (Australia) | 08/NH-GPCN Jan 19, 1996 |                   |
| 4  | CALYON (France)                                         | 02/NH-GP Apr 01, 1992   | 20                |
| 5  | CALYON (France)                                         | 04/NH-GP May 27, 1992   |                   |
| 6  | STANDARD CHARTERED BANK (England)                       | 12/NH-GP June 01, 1994  | 15                |
| 7  | Standard Chartered Bank (England)-HCMC branch           | 12/GP-NHNN Dec 28, 2005 | 15                |

100) 베트남중앙은행은 2007년 6월 상업주식은행의 설립·운영허가에 관한 규칙 Decision 24/2007/QĐ-NHNN을 발포하였다.

|    |                                                      |                           |     |
|----|------------------------------------------------------|---------------------------|-----|
| 8  | CITY BANK (America)                                  | 13/NH-GP Dec 19, 1994     | 20  |
| 9  | CITY BANK (America)                                  | 35/NH-GPCN Dec 22, 1997   |     |
| 10 | CHINFON COM. BANK (Taiwan)                           | 11/NH-GP Apr 09, 1993     | 30  |
| 11 | MAY BANK (Malaysia)                                  | 22/NH-GP Aug 15, 1995     | 15  |
| 12 | MAY BANK (Malaysia)                                  | 05/GP-NHNN March 29, 2005 | 15  |
| 13 | ABN Amro Bank(Netherland)                            | 23/NHGP Sep 14, 1995      | 15  |
| 14 | BANKOK BANK(Thailand)                                | 03/NH-GP Apr 15, 1992     | 15  |
| 15 | Mizuho Corporate BANK(Japan)                         | 26/NH-GP July 03, 1996    | 15  |
| 16 | Mizuho Corporate BANK(Japan)                         | 02/GP-NHNN March 30, 2006 | 15  |
| 17 | BNP (Banque Nationale de Paris)<br>(France)          | 05/NH-GP June 05, 1992    | 15  |
| 18 | SHINHAN BANK (Korea)                                 | 17/NH-GP March 25, 1995   | 15  |
| 19 | HONGKONG SHANGHAI BANKING<br>CORPERATION (England)   | 15/NH-GP March 22, 1995   | 15  |
| 20 | HONGKONG SHANGHAI BANKING<br>CORPERATION (England)   | 01/NHNN-GP<br>Jan 04,2005 | 15  |
| 21 | UNITED OVERSEAS BANK<br>(UOB)(Singapore)             | 18/NH-GP March 27, 1995   | 15  |
| 22 | DEUSTCHE BANK (German)                               | 20/NH-GP June 28, 1995    | 15  |
| 23 | BANK OF CHINA (China)                                | 21/NH-GP July 24, 1995    | 15  |
| 24 | BANK OF TOKYO MISUBISHI UFJ<br>(Japan)               | 24/NH-GP Feb 17, 1996     | 45  |
| 25 |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Co.,<br>(Taiwan)       | 25/NH-GP May 03, 1996     | 15  |
| 26 | OCBC (Singapore)(Keppel)                             | 27/NH-GP Oct 31, 1996     | 15  |
| 27 | WOORI BANK(Korea) (Old name:<br>Hanvit )             | 16/NH-GP July 10, 1997    | 15  |
| 28 | WOORI BANK (Korea)- HCMC branch                      | 1854/GP-NHNN Dec 20, 2005 | 15  |
| 29 | JP Morgan CHASE bank (America)                       | 09/NH-GP July 27, 1999    | 15  |
| 30 | KOREA EXCHANGE BANK (KEB) Korea)                     | 298/NH-GP Aug 29, 1998    | 15  |
| 31 | LAO-VIET BANK (Laos)                                 | 05/NH-GP March 23, 2000   | 2,5 |
| 32 | LAO-VIET BANK (Laos)                                 | 08/NHGP Apr 14, 2003      | 2,5 |
| 33 | Chinatrust Com. Bank (Taiwan)                        | 04/NH-GP Feb 06, 2002     | 15  |
| 34 | First Commercial Bank (Taiwan)                       | 09/NHNN-GP Dec 09, 2002   | 15  |
| 35 | Far East National Bank (America)                     | 03/NHNN-GP May 20, 2004   | 15  |
| 36 | Cathay United Bank (Taiwan)                          | 08/GP-NHNN June 29, 2005  | 15  |
| 37 | Sumitomo-Mitsui Banking Corporation<br>(Japan)(SMBC) | 1855/GP-NHNN Dec 20, 2005 | 15  |

○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짐

- WTO 가입을 기다리는 동안, 100%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을 설립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는 2006년 首相令 제22호(Decree No. 22/2006/ND-CP)가 성립함

- 이제 100% 외자계은행(100% FIBs) 등의 설립이 가능한데, 100% 외자계은행도 현지 민영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함
- 100% 외자계은행, 외국합작은행(JVBs)의 면허기간은 99년간임(위 Decree No. 22/2006/ND-CP 제11조 제2항, 연장도 가능)
- 베트남국가은행(SBV)은 2007년 6월에 위 Decree No. 22의 시행을 위한 100% 외자계은행, 외국은행 지점 및 합작은행과 사무소 설립 및 운영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함
- 베트남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은행은 베트남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음
- 최근 순수 외국계은행인 HSBC와 스탠더드차터드(Standard Chartered)은행(SCB)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100% 지분을 보유한 은행을 설립함에 있어서 베트남국가은행이 이를 승인하였고(두 은행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정식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음),<sup>101)</sup> 이어서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에 대하여 외국자본 100%의 은행설립이 허가됨
- 베트남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데다, 전체 인구 8700만 명 가운데 단지 10%만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에서 볼 때는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임

#### (4) 은행카드

- 2007년 베트남국가은행(SBV)의 결정(Decision No. 20/2007/QD-NHNN)은 새롭게 prepaid 카드를 포함하여 Debit card, Credit card의 3가지 형태의 카드를 규율하게 됨

---

101) 지금까지 베트남은 ‘외국은행지점’과 ‘현지은행과의 합작투자은행’의 설립은 허용하였으나, 외국은행이 100% 전액 투자한 은행설립은 인정하지 않았다.

- 종전에는 기관에게만 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이제는 개인에게도 카드가 발급됨
- Credit 카드의 3년 사용기간의 제한을 없앴

### 3) 증권법(Securities Law)

#### (1) 증권제도

- 1996년 11월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가 설립되고(1997년 4월부터 공식적 운영 시작),<sup>102)</sup> 이어서 1998년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명령(Decree on Securities and Securities Market)이 제정된 이후(2003년 11월 개정되었고, 후에 증권법으로 대체됨),<sup>103)</sup> 비로소 2000년 7월에야 호치민증권거래센터(Ho Chi Minh City Securities Trading Center : 줄여서 HSTC)가 출범하였고(2007년 8월에 호치민증권거래소(Ho Chi Minh Stock Exchange ; 줄여서 HOSE))로 이름이 바뀜),<sup>104)</sup> 또한 2005년 3월에는 하노이증권거래센터(Hanoi Securities Trading Center : 줄여서 HASTC)가 개설됨<sup>105)</sup>

---

102) <http://www.ssc.gov.vn>가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 November 28, 1996-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8, 1996 under Decree No. 75/CP by the Government. As a governmental body, its functioning is to organize and monitor securities exchanges and securities related issues. ▷ July 11, 1998-The Government issued Decree No. 127/1998/QĐ-TTg establishing two securities exchange centers under the SSC: Ho Chi Minh City Securities Trading Center (HSTC) và Hanoi Securities Trading Center (HASTC). In which, HASTC was oriented to become an OTC market. ▷ July 28, 2000-HSTC officially went into operation. The first trading session put an important mark in the country's socio-economic life.

103) Decree No. 144/2003/NĐ-CP

104) HSTC가 Decision No.599/QĐ-TTg of the government에 의해 공식적으로 Ho Chi Minh Stock Exchange(HOSE)로 변경되었다.

105) <http://www.hastc.org.vn>가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 March 08, 2005-HASTC officially went into operation marking a new step forward of the market. ▷ July 14, 2005-HASTC launched the secondary exchange, which operated from 9h to 11h on



<상장회사수의 추이> 단위: 社, 10억 동(VND), %

|                 |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2007<br>(추계) |     |
|-----------------|-----|------|----|------|----|------|----|------|-----|--------------|-----|
| 상 장<br>회 사<br>수 | 호치민 | 22   | 22 | 26   | 26 | 41   | 32 | 193  | 106 | 250          | 138 |
|                 | 하노이 |      | -  |      | -  |      | 9  |      | 87  |              | 112 |

- 2006년 6월 29일에 증권공모 · 상장 · 거래 · 매매 · 투자 및 증권시장에서의 업무 등 증권거래에 관한 포괄적 규율을 망라한 법률인 증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7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음<sup>106)</sup>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under Decision No. 244/2004/QĐ-BTC by Ministry of Finance, in step-by-step actualization of HASTC operation model. ▷ September 29, 2005-Decision No 238/2005/QĐ-TTg was issued in replace of Decision No. 146/2003/TTg to raise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room from 30% to 49% in an aim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investors into the Vietnamese market. ▷ June 31, 2006-HASTC increased the number of trading days from 3 to 5 days a week, in order to increase the market liquidity.

- 106) No. 70/2006/QH11. ▷ January 01, 2007-The Securities Law No. 70/2006/QH11 issued on 12/07/2006 became effective in replace of Decree No. 144/2003/NĐ-CP, making a stable legal environment and developing the market rapidly and sustainably. ▷ April 20, 2007-The Government issued Decree No. 69/2007/NĐ-CP which stipulates that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room is not allowed to exceed 30% of chartered capital of a local bank. ▷ July 01, 2007-Instruction No. 03/2007/CT-NHNN issued on May 28, 2007 became effective, in which a credit institution's total loan amount for securities investment based on stock collateral is forced under 3% of its total loan amount (deadline for completing this percentage is on December 31, 2007), in an order

- 증권법은 증권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될 것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11장 136조로 구성됨

<증권법의 구성>

|      |                                                                                                   |
|------|---------------------------------------------------------------------------------------------------|
| 제1장  | 일반규정(NHỮNG QUY ĐỊNH CHUNG)                                                                        |
| 제2장  | 증권의 공모(CHÀO BÁN CHỨNG KHOÁN RA CÔNG CHÚNG)                                                        |
| 제3장  | 공개회사(CÔNG TY ĐẠI CHÚNG)                                                                           |
| 제4장  | 증권거래시장(THỊ TRƯỜNG GIAO DỊCH CHỨNG KHOÁN)                                                          |
| 제5장  | 증권의 등록, 예탁, 청산 및 상환(ĐĂNG KÝ, LƯU KÝ, BÙ TRỪ VÀ THANH TOÁN CHỨNG KHOÁN)                            |
| 제6장  |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펀드운용회사(CÔNG TY CHỨNG KHOÁN, CÔNG TY QUẢN LÝ QUỸ ĐẦU TƯ CHỨNG KHOÁN)                    |
| 제7장  | 증권투자펀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관리기관(QUỸ ĐẦU TƯ CHỨNG KHOÁN, CÔNG TY ĐẦU TƯ CHỨNG KHOÁN VÀ NGÂN HÀNG GIÁM SÁT) |
| 제8장  | 정보공시                                                                                              |
| 제9장  | 위반행위의 감독과 처리                                                                                      |
| 제10장 | 분쟁해결, 고소 및 고발, 손해배상                                                                               |
| 제11장 | 시행규정(ĐIỀU KHOẢN THI HÀNH)                                                                         |

- 증권법은 베트남에서의 증권투자활동이나 증권시장 · 증권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민 · 외국인 · 내외법인 · 조직을 적용 대상으로 함
- 국가증권위원회(SSC)는 독립기관이 아닌, 재무부 소속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제8조 제1항 : 이하 증권법 조문임)

---

to restrict a hot growth and prevent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from risk. ▷ November 20, 2007-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which stipulates that the income from capital transfer will be imposed 20% of its value, or 0.1% of the total value of a successful selling order. The law would become effective on January 01, 2009. ▷ February 01, 2008-The Governor of the State Bank replaced Instruction No. 03/2007/CT-NHNN with Decision No. 03/2008/QĐ-NHNN, in which a credit institution's total loan amount for securities investment based on stock collateral is not allowed to exceed 20% of its chartered capital.

- 증권 및 증권시장의 활동과 관련된 허가서, 인증서의 발급, 연장, 회수, 증권 및 증권시장의 변경에 관한 승인
  -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센터, 증권예탁센터 및 각 보조기관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징후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센터, 증권예탁센터의 거래, 예탁 활동을 일시 정지
  - 증권 및 증권시장 활동에 대한 감사 및 감독, 행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청원, 고소를 해결
  - 증권 및 증권시장 활동에 대한 통계, 예보를 이행하고, 증권 및 증권시장 분야의 정보기술을 현대화
  - 관련 기관, 조직과 협의하여 증권분야 공무원, 간부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일반 대중에게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지식을 보급
  -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 규정 및 관련 양식을 안내
  - 증권 및 증권시장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이행함
- 2007년 1월 19일에 증권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14/2007/ND-CP)이 제정되었는데,<sup>107)</sup> 이 시행령에 의하면, 예를 들어 증권회사의 설립자본금이 증권중개를 위한 경우에는 250억 VND로(종전에는 20억 VND), 증권자기매매를 위한 경우에는 1000억 VND로(종전에는 120억 VND), 증권인수(underwriting)를 위한 경우에는 1650억 VND로(종전에는 220억 VND) 인상됨

〈시행령의 구성〉

|     |                                            |
|-----|--------------------------------------------|
| 제1장 | 일반규정(NHỮNG QUY ĐỊNH CHUNG)                 |
| 제2장 | 증권의 공모(CHÀO BÁN CHỨNG KHOÁN RA CÔNG CHÚNG) |
| 제3장 | 증권의 상장(NIỆM YẾT CHỨNG KHOÁN)               |

107) Nghị định 14/2007/NĐ-CP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     |                                                         |
|-----|---------------------------------------------------------|
| 제4장 | 증권회사 및 펀드운용회사(CÔNG TY CHỨNG KHOÁN, CÔNG TY QUẢN LÝ QUỸ) |
| 제5장 | 증권투자회사(CÔNG TY ĐẦU TƯ CHỨNG KHOÁN)                      |
| 제6장 | 시행규정(ĐIỀU KHOẢN THI HÀNH)                               |

- 종전에는 증권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는데, 2008년 4월의 증권서비스사업의 관리에 관한 정부 명령(Decree No. 52/2008/ND-CP)에 의해 외국인도 증권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sup>108)</sup>

## (2) 증권법의 내용

- 베트남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선함을 명시, 즉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본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됨(제3조 제2항)
- 증권활동과 증권시장의 원칙으로 다음과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제4조)
  - 조직 · 개인의 증권의 매매, 경영, 증권서비스의 자유로운 권리를 존중
  - 공평 · 공개 · 투명
  -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 · 이익을 보호
  - 손실에 대한 자기 책임
  - 법률의 규정을 준수
- 증권시장육성정책에 있어서, 국가는 증권시장이 공평 · 공개 · 투명 ·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증할 관리 · 감독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제5조 제2항)
- 대주주는 5% 이상의 주식 소유자를 의미함(제6조 제9항)
- 증권투자펀드란 증권이나 부동산을 포함하는 그 밖의 자산에 투자

<sup>108)</sup> Công Báo nos 249-250 (02-5-2008).

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출자분으로부터 설립된 펀드로서 투자자는 그 펀드의 투자결정에 대하여 일일이 관여할 권리를 갖지 못함(제6조 제27항)

- 대중펀드(공모투신)란 펀드증서를 공모하는 증권투자펀드를 말하고, 회원펀드(사모투신)란 30명을 넘지 않는 자본출자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증권투자펀드를 말함(제6조 제28항, 제29항)
- 금지되는 행위(제9조)
  - 증권의 공모, 상장, 매매, 경영, 증권투자, 증권서비스 및 증권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필요한 정보를 숨겨 오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것
  - 타인의 증권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시장의 증권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정에 대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공표하지 않는 것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증권매매를 하는 것, 내부정보를 누설, 제공하거나 내부정보에 기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증권 매매 컨설팅을 하는 것
  -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증권매매를 공모하는 것; 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이 그러하도록 설득하는 것; 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수단을 결합하거나 다른 매매수단을 이용하는 것
- 내부정보란 공개회사나 대중펀드에 관련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만약 공개되면 그 회사 또는 펀드의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제6조 제32항).
- 내부자란 다음과 같음(제6조 제33항)
  - 공개회사의 이사회, 감사회의 구성원, 사장 또는 총재, 부사장 또는 부총재; 대중펀드의 대표자위원회의 구성원
  - 공개회사나 대중펀드의 대주주

- 공개회사나 대중펀드의 재무제표 회계 감사인
  - 공개회사나 대중펀드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밖의 개인
  -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및 그 회사의 증권업무종사자
  - 공개회사나 대중펀드와 경영협력관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개인 및 그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자
  - 위에서 규정된 대상자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내부정보를 얻는 조직, 개인
- 공개회사는, 주식회사로 주식공모를 통하여 주식을 판매하여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고, 100명 이상의 투자자 및 100억 VND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을 말하며, 증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3) 증권의 공모

- 증권의 공모(CHÀO BÁN CHỨNG KHOÁN RA CÔNG CHÚNG)  
란 다음 사항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제6조 제12항)
- 인터넷을 포함한 대중정보매체
  -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10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판매를 위한 발행
  - 불특정한 일정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를 위한 발행
- 주식의 액면가격은 10,000동(VND) 임(제10조 제1항)
- 증권을 신규공개(IPO)하는 기업은 공모시 조달자금이 장부가 기준으로 100억 VND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등록연도의 전년도에 사업활동이 흑자이어야 하고, 모집등록 연도의 누적 손해를 해소할 것, 발행방법과 조달자금의 용도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고(제12조 제1항), 공모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국가증권위원회(SSC)에 등록하여야 함(제13조 제1항)

#### (4) 증권 상장

- 위 증권법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의 상장 요건으로,<sup>109)</sup>
  - 증권상장 신청시 자본금이 최소한 800억 VND이며(종전에는 100억 VND),<sup>110)</sup> 재무부가 증시상황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상장신청 직전 연속 2년간 순이익을 실현하여야 하고,
  - 상환기간이 경과한 부채가 없어야 하고,
  - 회사의 이사진, 경영진 등의 모든 부채를 공개하여야 하며,
  - 최소한 100명 이상의 투자주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최소한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 이사진, 경영진 등 주요 회사 구성원이 보유주식을 상장 후 계속하여 6개월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후 6개월간은 5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5) 증권거래시장

- 증권거래소(Sở giao dịch chứng khoán=stock exchange)와 증권거래센터(Trung tâm giao dịch chứng khoán=securities trading center)로 구분하여 규정함(제33조)
- 2000년 7월에 출범한 호치민증권거래센터(Ho Chi Minh City Securities Trading Center : 줄여서 HSTC)가 2007년 8월에 호치민 증권거래소(Ho Chi Minh Stock Exchange ; 줄여서 HOSE))로 변경됨

---

109) 주베트남 대사관의 자료임

110) 다만, 이는 호치민증권거래센터가 정식 거래소(stock exchange)가 될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며, 하노이와 같은 증권거래센터(securities trading center)에서의 상장요건은 자본금 100억 VND, 상장신청 직전 1년간 순이익 실현 등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6) 증권회사의 설립

- 베트남에서 증권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법에 따라 유한회사 내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가증권위원회의 설립·운영허가를 취득하여야 함(제59조 제1항)
- 취득한 허가서는 사업등록증명서로서의 효력도 가짐(동조 제2항)
- 외국자본에 의한 증권회사 및 펀드운용회사는 합작회사, 지분출자회사, 100% 외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고,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설립 및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제76조 제1항)

## (7) 베트남에 증권투자

- 베트남은 외국인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계펀드의 베트남 내에서의 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의 28%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증권투자회사는 베트남 국내의 증권투자펀드운용회사(công ty quản lý quỹ)에 위임하거나 베트남 국내에 투자자본관리를 위한 지점을 설치하여야 함(시행령 제21조 제5호)
- 투자자가 베트남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베트남 증권회사는 예를 들어, SSI증권, BSC증권, Bao Viet증권, Hai Phong증권, Sacom bank증권, HSC증권, The First증권, Kim Long증권, HoChiMinh증권, Vietcombank증권, ACB증권, Dai Viet증권 등이 있음)
- 베트남에서의 외국증권투자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증권위원회(SSC)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증권시장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외국거래계좌는 2007년보다 47% 증가하여 460,000계좌 이상이

라고 함<sup>111)</sup>

- 2007년 4월 외국투자자에 의한 베트남 상업은행의 주식구입에 관한 명령(Decree No. 69/2007/ND-CP)이 성립하였는데, 외국투자자의 총 소유주식은 상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는 없음

#### 4) 보험업법

- 2000년 12월에 보험업법(Law on Insurance Business)이 제정됨<sup>112)</sup>
- 자율규제기관으로 베트남보험협회(Vietnam Insurance Association)에 대한 규정으로는 보험업법 및 수상결정이 있음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보험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면허(licence)를 발행(보험업법 제62조 : 이하 조문만 표시)
- 베트남 보험시장은 높은 성장이 기대됨(보험시장이 2001-2007년 연평균 전년 대비 20.4% 증가·확대)
- 국영베트남 보험회사의 독점 체제이었다가, 1994년에 민간보험회사의 진입이 허용되었고, 그 후 외자계 보험회사가 점차 베트남시장에 진입하였고, 시장 자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됨(특히 생명보험)<sup>113)</sup>
- 2007년 베트남의 WTO에 가입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일정 가속화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금 증자 실시<sup>114)</sup> 및 국내 보험사와 다국적 보험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국자본의 보험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추세임
- 2008년 현재 외국자본의 시장진입시에 적격요건 이외에 외자규제는

111) <http://www.mof.gov.vn/DefaultE.aspx?tabid=354&ItemID=55796>.

112) No. 24/2000/QH10.

113) 2002년 4월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세계 손해보험사 가운데 7번째로 베트남 국영 재보험사인 Vina Re사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삼성비나보험회사(Samsung Vina Insurance Company Limited)」로 베트남보험시장에 진출하였다.

114) 최저자본금이 2007년 수상결정 46(Decree 46/2007/ND-CP) 제4조에서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기존 손해보험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명보험: 6000억VND, 손해보험: 3000억VND이다.

없는데, 주요한 시장진입조건은 다음과 같음<sup>115)</sup>

- 외국투자의 경우에 합작(Joint venture)회사 또는 100% 외국자본 회사(제105조)
- 최저자본금을 충족할 것(제63조 제1호)
- 경영자가 전문자격을 가질 것(제63조 제3호)
- 예탁금은 최저자본금의 2%
- 법 제64조에 따라 면허신청을 할 것

### 3. 그 밖의 투자관련 법령

- 베트남에서 법인(기업)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투자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시장조사(Feasibility Study), 투자형식 등 정책적 판단(직접투자과 간접투자 등),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의 선정(리조트사업과 같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투자 증명서 발급 및 법인설립신청(사업등록신청), 건축허가취득(환경영향평가, 설계심사, 소방허가 등 포함), 토지사용권의 취득(토지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의 이행사항, 건축설계(Master Plan)에 대한 허가 등의 투자절차를 거치게 되므로<sup>116)</sup> 이와 관련하여 토지법, 환경보호법, 건설법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 토지법

- 헌법상 베트남 내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사적 소유가 허락되지 않지만,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토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토지법, 민법 등

---

115) 아울러 2007년 3월 27일 Decree No. 45/2007/ND-CP를 참조.

116)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2007), 63면.

하위 법규범을 통하여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의 매매, 저당권, 상속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일정 범위 안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통상 인정되는 토지소유권이라는 개념과 달리, 토지사용권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그 법률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1) 토지법의 의의 및 구성

-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 토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였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1993년 토지법을 전면 개정함(그 후 1998년과 2001년 부분 개정)
- 토지법은 인민 전체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골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공업화, 현대화에 추진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정책 및 그 환경정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2003년 11월 16일자 전면 개정된 토지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sup>117)</sup> 그 동안 베트남 토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토지사용권의 범위와 내용의 불명확성,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절차의 미비, 분쟁해결방법의 모호함 등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짐
- 토지법은 총 7장에 146조로 구성되어 있음

### <토지법의 구성>

|     |                              |
|-----|------------------------------|
| 제1장 | 일반규정(제1조-제15조)               |
| 제2장 |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관리(제16조-제65조) |
| 제3장 | 토지종류별 사용체계(제66조-제104조)       |

117) 그 밖에 각 부동산 관련 법률로서 부동산영업법(Law on Real Estate Business), 주택법(Law on Residential Housing) 등이 있다.

|     |                            |
|-----|----------------------------|
| 제4장 |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제105조-제121조) |
| 제5장 | 토지관리 및 사용절차(제122조-제131조)   |
| 제6장 | 토지분쟁해결절차(제132조-제144조)      |
| 제7장 | 시행규정(제145조-제146조)          |

- 토지는 국가를 대표자로 하는 전체 인민의 소유임(토지법 제5조 제1항: 이하 여기서는 조문만 표시)
- 국가는 토지할당(allocation), 토지임대(lease), 현재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의 권리 인정(recognition) 등의 형태로 토지사용권 (land use rights)을 토지사용자(land users)에게 부여(grant)하고, 토지사용자의 권리(rights)와 의무(obligations)를 규정함(제5조 제4항)
- 토지사용권을 부여받는 방법으로는, 토지법 제4조가 국가의 토지할당(Land allocation by the State)과 국가의 토지임대(Land lease by State)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두고 있는데, 국가의 토지임대란 국가와 계약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 토지할당이란 국가의 행정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는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함(제10조 1항)
  - 토지사용권증서는 자원환경부가 발급하는데(동조 제2항), 모든 토지구획지마다 발급됨(동조 제3항)
  - 토지사용권을 이전할 때에는 토지사용권의 양수인은 이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권증서를 인도받아야 함(동조 제4항)
- 토지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임차한 자가 해산, 파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토지사용의 수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경우에는 토지가 회수(recovery)될 수 있는데(제38조 제2호), 이 경우에 국가는 보상(compensation) 없이 토지를 회수함(제43조 제1항)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등기부 (Register)를 언급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Red Book과 Pink Book이다. 이와 같이 색깔로써 등기부를 구분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설명을 한 곳은 찾아볼 수 없으나, 추정컨대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 문서의 색깔에 따라 편의상 위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을 뿐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법률상의 용어로 정의하면 Red Book은 토지사용권증명서 (Land Use Right Certificate)로 Pink Book은 주택소유권증명서 (House Ownership Certificate)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Pink Book은 단순히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상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당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표상하고 있는 증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Red Book을 확인하여야 하고, 나아가 건물까지 있을 경우에는 Pink Book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외국투자자의 토지사용권

- 외국투자자는 임대 형태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
- 투자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기관 또는 개인은 토지사용자임(제9조 제7항)
- 외국인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매매가 인정된 이외에 외자계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할 때에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음

118)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2007), 85면.

A는 베트남 진출기업으로 5년 전 투자허가서를 받은 제조업체인데, 최근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인근의 공단 외 지역에 동종 생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기업의 토지와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과는 달리 베트남 기업의 경우에 토지임대료를 50년 일시납부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권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 외에 토지임대료 잔여 기간 납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처음부터 가격에 포함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베트남기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없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초기부터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대규모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베트남 기업들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결국 A는 토지사용권의 양수를 포기하였다.

- 외국투자자는 토지사용권(토지사용권증명서를 받을 권리, 토지 내에서 일하고 투자한 것을 누릴 권리, 농지개간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농지개간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 토지사용권을 침해받았을 때에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토지사용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소송 또는 이의제기를 할 권리) 이외에 추가적인 권리(임차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양도, 임차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베트남에 등록된 신용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임차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으로 자본출자)를 보장받음<sup>120)</sup>
- 외자계기업도 포함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하는 모든 개인·조직에 대하여 2005년 11월 14일자 토지임대차 및 토지임대료의 징수에 관한 명령(Decree No.142/2005/ND-CP)이 적용됨
- 토지임대료는 연불 또는 일시불로 낼 수 있는데, 일시불로 임대료

119) KOTRA, 베트남 투자 A to Z(2008. 7), 61면.

120) 아세아법연구소, 베트남토지법제에 관한 연구(2007), 212면.

를 낸 경우에는 토지사용권과 그것에 맞물린 자산(공장)을 양도(assign), 임대(lease), 현물출자(contribute to do business) 할 수 있음

- 다만, 위와 같이 토지사용권을 부여받는 방법에 있어서 외국인과 베트남 내국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있어서 내·외국인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외국인의 토지사용권의 범위가 베트남 내국인에 비하여 좁음)

## 2) 환경보호법

### (1) 환경보호법의 의의

- 투자자는 환경보호법(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투자법 제20조제6호)
- 베트남 환경법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환경보호법은 1993년에 성립되어 1994년에 시행되었는데, 동법은 환경법을 포괄적으로 다룬 입법으로, 오염의 방지와 대책, 그 책임,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의 국가관리, 위반행위의 대처 등을 규정한 총 55개조로 이루어졌음
- 이후 2005년 11월에 환경보호법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sup>121)</sup>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환경법이 발효됨
- 또한 2006년 8월에 정부는 환경보호법 시행을 위한,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명령과<sup>122)</sup> 환경보호분야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명령<sup>123)</sup>을 발령함
- 새로운 환경법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환경감시에 관하여 엄

---

121) No. 52/2005/QH11.

122) No. 80/2006/ND-CP.

123) No. 81/2006/ND-CP.

격·구체화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총 136조로 조문이 증가함

<환경보호법의 구성>

|      |                                                  |
|------|--------------------------------------------------|
| 제1장  | 일반규정                                             |
| 제2장  | 환경기준                                             |
| 제3장  |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공약                         |
| 제4장  | 자연자원의 보전 및 합리적 활용                                |
| 제5장  | 생산·경영·용역활동에 있어서 환경보호                             |
| 제6장  | 도시·거주지의 환경보호                                     |
| 제7장  | 바다, 하천 및 그 밖의 수자원의 환경보호                          |
| 제8장  | 폐기물관리                                            |
| 제9장  | 환경사고의 방지 및 대책, 환경오염의 개선, 환경의 회복                  |
| 제10장 | 환경감시 및 정보                                        |
| 제11장 | 환경보호를 위한 인재·자금                                   |
| 제12장 |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
| 제13장 |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그 구성조직의 책임                      |
| 제14장 | 환경에 관한 위반행위의 검사·취급, 환경에 관한 불복신청의 해결, 고소 및 환경피해배상 |
| 제15장 | 시행규정                                             |

## (2) 환경보호법의 내용

○ 환경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적 환경평가(SEA)의 도입(환경보호법 제14조 이하 : 이하 환경보호법 조문임)<sup>124)</sup>
- 사안마다 환경영향평가(EIA)의 내용이 명확화 되었음(제18조 이하)
- 환경보호공약제도를 도입함(제24조 이하 : 환경영향평가 대상 외의 소규모기업)<sup>125)</sup>

124) 전략적 환경평가는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환경영향평가(EIA)를 정책이나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개별사업의 상위계획인 지역계획 등에 있어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략적 환경평가는 환경보호법이라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대상이 모든 전략이나 계획에 미치는 포괄적인 것 등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연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독립적 章을 둠(제4장)
- 바다, 하천, 그 밖의 수자원의 환경보호에 관한 독립된 章을 둠(제7장)
- 폐기물관리에 관한 독립된 章을 둠(제8장)
- 생산·경영·용역활동에 있어서 조직, 개인의 환경보호책임을 규정하고(제35조), 다음과 같이 산업입지·업종마다 환경보호를 규정함(제36조 이하)

〈환경보호규정〉

|                                                        |
|--------------------------------------------------------|
| 집중적 경제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단지, 공업단지, 관광구, 유원지, 오락시설(제36조) |
| 생산·경영·용역시설(제37조)                                       |
| 가내공업촌(제38조)                                            |
| 병원 그 밖의 의료시설(제39조)                                     |
| 건설활동(제40조)                                             |
| 교통운수활동(제41조)                                           |
| 수입·상품통관·폐품의 수입(제42조, 제43조)                             |
| 광산물활동(제44조)                                            |
| 관광(제45조)                                               |
| 농업(제46조)                                               |
| 수산양식(제47조)                                             |
| 매장(제48조)                                               |

- 투자자는 건설작업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투자법 제58조 제2항), 건설활동에 있어서 환경보호는 다음과 같은
- 건설계획은 환경보호에 관한 기준과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환경보호법 제40조 제1항 : 이하 환경보호법 조문임)
  - 건설공사의 시공은, ① 주택지에서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매진(煤塵), 소음, 진동, 빛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건설자재의 운반은 새거나 떨어져서 환경

125) 가내규모의 생산·경영·용역시설 등 SEA나 EIA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그 대상이다.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수단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③ 배수, 고형폐기물 그 밖의 각종 폐기물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수집, 처리하여야 함(제40조 제2항)

-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는 위반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을 지고,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환경오염, 악화 또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환경오염의 개선, 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제127조 제1항)
-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명령(Decree No. 80/2006/ND-CP)은 내국인(사업체 포함), 외국인 개인·조직 모두에게 적용되고(정령 제2조),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에 관한 공약, 제조·거래·용역제공활동에 있어서 환경보호, 유해폐기물관리, 환경정보, 데이터의 공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보고를 준비하도록 의무 지운 프로젝트의 일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예를 들어 다음 프로젝트 등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보고를 준비하여야 함(구체적 사업리스트는 No. 80/2006/ND-CP의 부록 1을 참조)
  - 전기통신시설의 건설에 관한 프로젝트(프로젝트 전부 적용)
  - 도시지역, 주택지역, 상업·경제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프로젝트 전부 적용)
  - 관광·오락지역의 건설 프로젝트(5ha 이상의 지역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에 적용)
  - 호텔 및 휴게시설 건설 프로젝트(50채 이상의 프로젝트에 적용)
  - 병원 건설 프로젝트(50베드 이상)
- 한편, 환경보호분야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명령(Decree No. 81/2006/ND-CP)에서는 제재의 형식과 제재의 정도, 제재를 실시하는 기관, 제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조직도 행정제재의 적용대상임(정령 제2조)

### 3) 건설법

- 건설활동이 포함된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술설계, 건적, 총예산의 작성, 심사 및 승인은 건설법(건축법) 규정에 따라 실시함(투자법 제58조 제1항)
- 건설 관련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건설법(Construction Law)은 2003년 11월에 공포되었는데, 총 9장 123조로 구성됨<sup>126)</sup>

〈베트남 건설법의 구성〉

|     |                   |     |                   |             |
|-----|-------------------|-----|-------------------|-------------|
| 제1장 | 총칙(일반규정)          |     |                   | 제1조-제10조    |
| 제2장 | 건설마스터플랜           | 제1절 | 일반규정              | 제11조-제14조   |
|     |                   | 제2절 | 지역건설마스터플랜         | 제15조-제18조   |
|     |                   | 제3절 | 도시건설마스터플랜         | 제19조-제27조   |
|     |                   | 제4절 | 농촌집약의 건설 관련 마스터플랜 | 제28조-제31조   |
|     |                   | 제5절 | 건설마스터플랜의 집행       | 제32조-제34조   |
| 제3장 | 건설공사를 위한 투자프로젝트   |     |                   | 제15조-제45조   |
| 제4장 | 건설조사 및 설계         | 제1절 | 건설조사              | 제46조-제51조   |
|     |                   | 제2절 | 건설공사의 설계          | 제52조-제61조   |
| 제5장 | 건설공사              | 제1절 | 건설허가              | 제62조-제68조   |
|     |                   | 제2절 | 건설공사를 위한 부지 정리    | 제69조-제71조   |
|     |                   | 제3절 | 건설공사의 시공          | 제72조-제86조   |
|     |                   | 제4절 |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 제87조-제90조   |
|     |                   | 제5절 | 특수건설공사의 실시        | 제91조-제94조   |
| 제6장 | 건설도급업자 및 건설계약의 선정 | 제1절 | 건설도급업자의 선정        | 제95조-제106조  |
|     |                   | 제2절 | 건설행위에 관한 계약       | 제107조-제110조 |
| 제7장 | 국가에 의한 건설시행       |     |                   | 제111조-제118조 |
| 제8장 | 추천, 불이행의 취급       |     |                   | 제119조-제120조 |
| 제9장 | 시행규정              |     |                   | 제121조-제123조 |

126) No. 16-2003-QH11.

- 건설법은 건설활동에 투자하여 참가하는 외국기업,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건설법 제2조), 외국건설회사의 관리는 2004년 5월의 수상결정 No. 87/2004/QD-TTg에서 정하고 있음

<우리 건설사 베트남 진출현황><sup>127)</sup>

|       |                                                 |
|-------|-------------------------------------------------|
| 포스코건설 | 북앙카이 신도시                                        |
| GS건설  | 나베신도시                                           |
| 금호건설  | 호치민 아시아나 플라자 complex                            |
| 경남건설  | 하노이 호텔 complex                                  |
| 참빛건설  | 골프장, 호텔 complex                                 |
| 대원건설  | 칸타빌 아파트                                         |
| 부영건설  | 임대아파트                                           |
| 벽산건설  | 고급아파트                                           |
| 한신공영  | 고급아파트                                           |
| 시공    | 신성건설, 삼환건설, 극동건설, 동아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

- 정부조달을 포함한 조달방법을 규정하는 법령으로서는 1999년 명령 No. 88, 2000년 명령 No. 14 및 2003년 명령 No. 66(이 세 가지 명령을 입찰규칙이라고 부른다)이 있고, 투자건설에 관한 조달규칙으로서 2004년 계획투자부령 No. 1이 있음

127) 법무법인 우현지산, 베트남부동산투자개발사례연구(2007. 6) 참조.

## IV. 외국인투자자에 따른 사법적 시스템

### 1. 분쟁해결

- 베트남 내 투자활동 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 만약 분쟁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외국투자자이거나 모두가 외국투자자일 경우에 다음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투자법 제12조 제3항 참조)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기관
  - 외국중재기관
  - 국제중재기관
  - 각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기관
- 국제무역이나 외국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분쟁, 특히 베트남기업과 외국계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인데, 이러한 분쟁의 처리절차로 국제중재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나,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집행이 문제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런던과 같은 베트남 국외에서 중재가 이루어짐
- 베트남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제도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음

### 2. 사법제도

- 베트남에서의 「司法」(tu phap) 개념은 권력분립원리 위에 형성되

어 있는 것이 아닌 점에 주의할 필요(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사법의 개념 속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법원이 행하는 심리에 참가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검사, 변호사, 감정인, 공증인 등의 사법보조기관 등도 포함됨
- 베트남의 사법부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기관 모두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기관임(헌법 제10장)
-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청은 모두 국회에서<sup>128)</sup> 그 최고책임자가 선출되고,<sup>129)</sup> 국회에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청의 각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주의의 합법성, 사회주의 체제, 인민에 의한 지배, 국가 및 공동체의 재산, 인민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존엄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헌법 제126조)

### 3. 법원제도

- 법원제도에 대한 근거법률은 2002년 인민법원조직법(Law on Organization People's Court)임<sup>130)</sup>
- 인민법원은 국회의 지도·감독 하에 있음

#### 1) 법원의 종류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둘(인민법원조직법 제2조)

---

128) 국민의회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인민대표의 최상급 단계에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129) 인민대법원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동일하다(헌법 제128조). 국회가 임기가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인민대법원장의 임기도 기본적으로 5년이라 할 수 있다.

130) No. 33-2002-QH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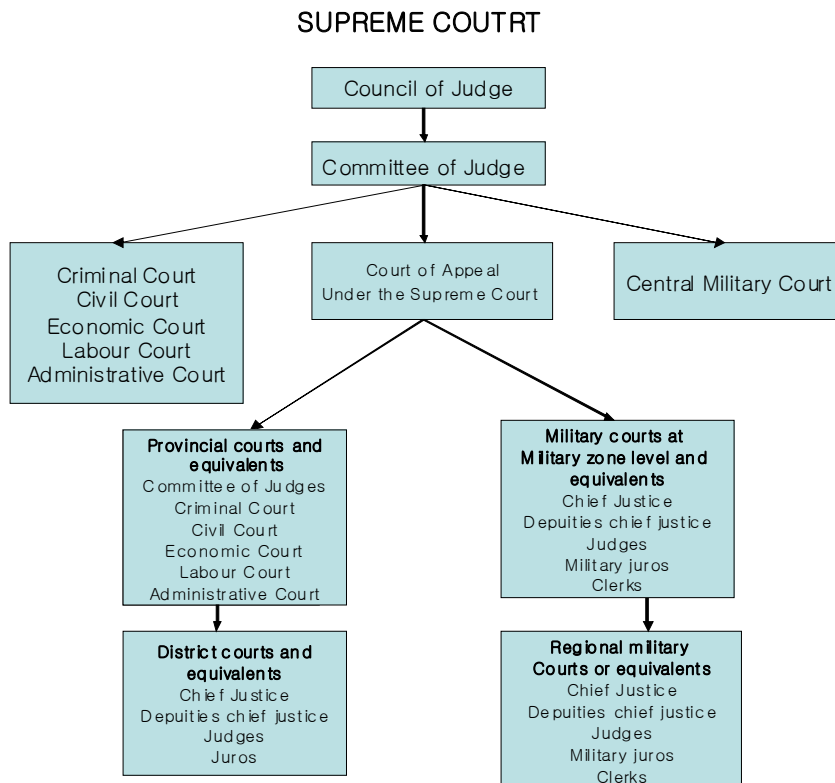
- 최고인민법원(인민대법원; Toà án nhân dân tối cao=Supreme People's Court)
- 지방인민법원 및 직할도시인민법원(Các Toà án nhân dân huyện, quận, thị xã, thành phố thuộc tỉnh)
- 농촌, 도시, 광역수도 및 광역도시인민법원(Các Toà án nhân dân huyện, quận, thị xã, thành phố thuộc tỉnh)
- 군사법원(Các Toà án quân sự) : 군사법원은 베트남 인민군에 소속되고, 대상은 군인이며 군 관련법이 적용되는 사안을 다룸(군사법원은, 중앙군사법원, 군사지역 및 상응지역 군사법원, 지방군사법원이 있음)
- 법에 따른 그 밖의 법원(Các Toà án khác do luật định)
- 특별한 상황에서 국회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결정할 수 있음(Trong tình hình đặc biệt, Quốc hội có thể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Toà án đặc biệt)
- 최고인민법원은 ①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제1심인 동시에 최종심으로서의 기능, ② 지방법원의 항소심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③ 법령적용상의 잘못을 시정하는 감독심<sup>131)</sup> 및 사실오인을 시정하는 재심의 기능을 수행함

## 2) 법원의 조직

- 최고인민법원의 조직을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최고인민법원 판사평의회(13명의 판사로 구성)를 정점으로 그 아래에 전문법원으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경제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음
- 최고인민법원 아래의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3단계의 계층적 제도가 채택됨(다만, 3급 2심제임)

---

131) 감독심은 우리에게 없는 제도로, 재판의 효력 발생 후, 그 재판에 중대한 법령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제도이다.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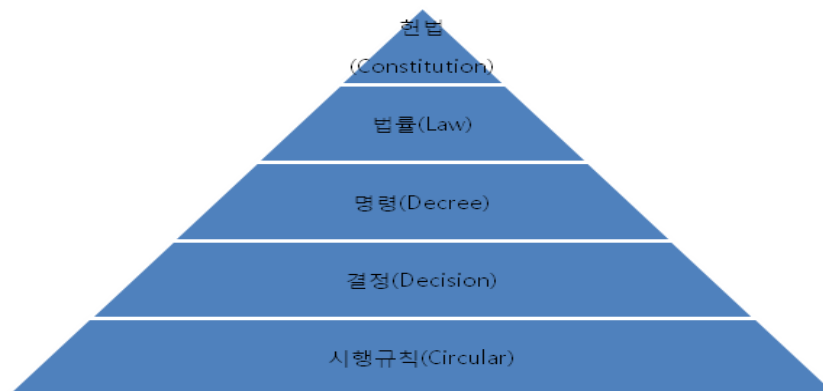


### 3) 심판

- 재판은 원칙적으로 2심제로(민사소송법 제17조 참조), 제1심 법원의 직근 상급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음
- 제1심에 있어서 법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민참심원이 인민의 대표로 재판에 참가하는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법관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의 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다수결로 합의를 이루어 판결을 내림
- 항소심, 감독심, 재심은 직업 법관만으로 구성됨

## 4. 법령의 체계

- 역대 베트남 왕조는 1075년 과거제도를 창설한 뒤, 이후로는 중국 식의 율령제도를 도입하였고, 프랑스 식민통치시대에 있어서는 식민지법으로서 프랑스법을 수용한 것은 당연하였고, 이후 남북분열 시대를 거쳐 사회주의체제 하의 소련 사회주의법의 계수가 있었음
- 1986년 제6회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이 결정된 후, 시장경제의 도입이 공인됨에 따라 법제도를 개선하여 왔음
- 법령의 체계는 헌법(HIẾN PHÁP=Constitution)→법률(Law)→국가주석(대통령)의 명령(Order)→정부의 명령(Decree)→수상결정(Decision)→시행규칙(Circular)→인민위원회결정(Decision) 등의 순서임



## 5. 변호사제도

- 변호사법은 총 9장 94조로 이루어짐<sup>132)</sup>
- 자격<sup>133)</sup>

---

132) No. 65/2006/QH11.

133) Điều 10. Tiêu chuẩn luật sư

- 조국에 충성스러운 베트남인이어야 함
- 헌법과 법을 준수하여야 함
- 법학사학위 소유자이어야 함
- 법 관련 전문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6개월)
- 변호사 관련 실습기간을 거쳐야 함(18개월)
- 변호활동을 펼칠만한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
- 법률사무소의 형태
  - 변호사 사무소: 1인의 변호사에 의해 설립된 변호사 사무소는 개인 사업의 형태로 설립·운동을 하게 됨
  - 법무법인
- 변호사법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변호사나 그 법률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외국법률사무소는 외국변호사사무소의 지점이나 100% 외자의 유한회사 또는 합작기업으로 베트남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sup>134)</sup>
- 외국인변호사는 전문자격의 신청이 의무인데, 이 자격은 법무부로 부터 부여됨

## 6.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법무부는 정부기관 가운데 하나이며, 법무부의 조직 및 업무 등과 관련된 명령을 보면(Decree No. 62/2003/ND-CP), 법무부는 입법, 법률문서 담당, 법률보급 및 법률교육, 민사재판의 집행 및 사법행정의 수행, 법적 지원, 그 밖의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업무의 수행과 같은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함<sup>135)</sup>

---

Cộng dân Việt Nam trung thành với Tổ quốc, tuân thủ Hiến pháp và pháp luật, có phẩm chất đạo đức tốt, có bằng cử nhân luật, đã được đào tạo nghề luật sư, đã qua thời gian tập sự hành nghề luật sư, có sức khỏe bảo đảm hành nghề luật sư thì có thể trở thành luật s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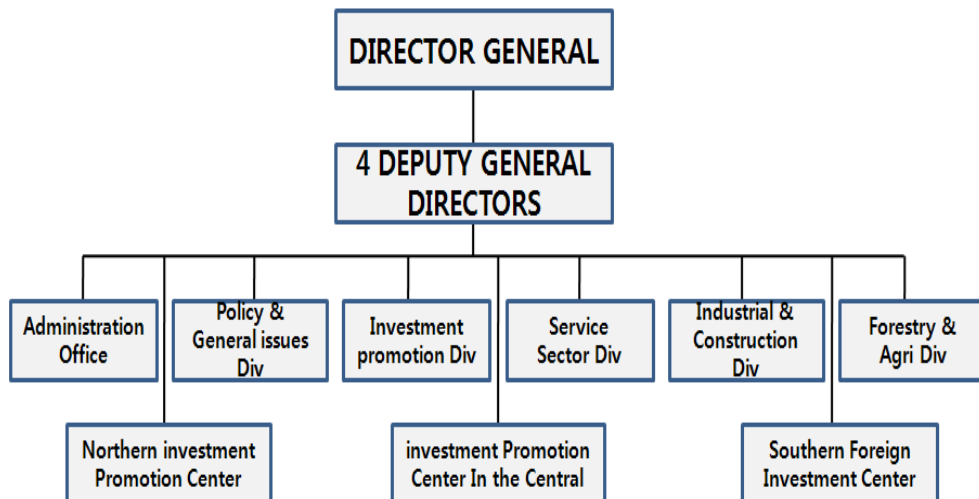
134) 우리나라의 법무법인 로고스, 정평, 율촌, 지평지성, 아주, 세화 등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135) Article 1. Position and functions

## 7. 투자관련기관

-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줄여서 MPI로 표시함)가 있음<sup>136)</sup>
- 계획투자부는 1996년 국가협력투자위원회(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와 국가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ttee)가 통합되어 창설되었는데, 외국투자에 관한 주무 행정부처임
- 계획투자부의 외국투자국(Foreign Investment Agency)의 조직은 다음과 같음<sup>137)</sup>

<외국투자국의 조직>



The Ministry of Justice is a governmental agency, which performs the function of State management over the legislative work, examination of legal documents, law dissemination and education, execution of civil judgments, judicial administration, legal support as well as other judicial work throughout the country; performs the State management over public services under the Ministry's management according to law provisions.

136)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pi.gov.vn>.

137)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fia.mpi.gov.vn/Default.aspx>.

## V. 투자 및 금융 관련 법제의 전망, 경제적 효과 및 우리의 대응방안

### 1. 투자국으로서의 매력

- 안정된 정치체제, 안전한 사회질서
- 한국과 사고방법 등 유사성이 많고, 우호적 관계임
- 풍부한 천연자원
  - 한반도의 1.5배 국토면적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
  - 세계 2위의 쌀, 커피 수출국, 석유, 석탄, 수산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
- 신흥소비시장으로서의 무한한 잠재성
  - 고도성장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
-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비교적 저렴한 임금
  - 문맹률 10% 미만의 양질 · 저임 노동력 풍부
  - 인구의 약 50%가 25세 이하인 미래 발전형 인구구조
  - 다른 동남아국가 노동자 대비, 근면성과 손재주 우수
  - 베트남은 국내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sup>138)</sup>
- 노동쟁의가 적음<sup>139)</sup>
- 대선진국 수출 및 ASEAN 생산거점지로서 유망
  - 2007년 초 WTO 공식 가입, 미국의 대 베트남 PNTR(항구적 무역

138) 2008년 1월부터 외국투자기업에 있어서 종전 최저임금을 조정한 새로운 Decree No. 168이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하노이나 호치민시 내부도시의 최저임금은 1개월에 1,000,000 VND이다. 반면 베트남 기업은 620,000 VND이다.

139)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현지 노사분규 건수가 2004년 93건에서 2006년 287건, 2007년 438건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성공적인 현지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노무관리 전략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정상관계) 지위 부여로 대선진국 수출 전진기지로 유망
- 베트남은 ASEAN 회원국으로 역내 수입관세가 최대 5%임을 감안, ASEAN 시장의 생산거점지로 유망
- 2007년 4월에 2020년을 전망한 2007-2010년의 투자장려분야와 첨단 분야(spearhead industry) 리스트 및 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정책을 규정한 首相결정(Decision No. 55/2007/QD-TTg)이 공포되었는데,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음
- 장려업종 : 섬유 · 봉제, 피혁 · 플라스틱, 농림수산가공 · 철강, 화학품
  - 첨단업종 : 기계공학, 전자 · 통신 · 정보기술, 신기술 관련 제품
- 2006년 9월에 2006년-2010년 외국투자유치 국가적 프로젝트 리스트에 관한 首相결정(Decision No. 1290/2007/QD-TTg)이 공포되었는데, 리스트는 3개 분야의 163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음(109개의 산업과 건설 분야 프로젝트, 6개의 임업과 식물재배 분야 프로젝트, 48개의 여행과 서비스 분야 프로젝트)

<베트남진출 성공사례><sup>140)</sup>

◆성공사례1.대원

현재 대원은 직물, 봉제, 건설 사업에서 활발한 활동 중  
대원 칸타빌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급아파트 브랜드  
최근 다낭지역 200ha 규모 신도시사업 추진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 모색  
최근 면방직 공장 인수를 통해 직물 부문 성장 가속화

◆성공비결:

현지인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 폭넓은 정보수집 등 현지화 성공  
베트남의 장점 충분히 활용(저렴한 임금, 직물, 봉제부문)  
현명한 시장수요 판단(고급 아파트 사업, 건설부문)  
한국에서 잘하는 기업이 베트남에서도 성공

140)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의

발표자료([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080220\\_legal%20problem%20solution\\_J&P1.pdf](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080220_legal%20problem%20solution_J&P1.pdf)).

◆ 성공사례2. 포스코 다이아몬드 플라자

포스코는 대규모 철강사업 투자뿐만 아니라 건설부문도 활발한 진출  
1995년 착공하여 2000년 완공된 호치민의 랜드마크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로 백화점, 사무실, 극장, 아파트 복합건물  
베트남 철강회사와의 합작사업

◆ 성공비결: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베트남에 드문 철골조 건물 시공으로 고급화  
현대식 사무실, 명품 백화점, 고급 아파트로 Hi-end 시장공략

◆ 성공사례3. 태광비나

운동화 제조업체인 태광실업이 1995년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  
지난해 UNDP가 선정한 베트남 200대 기업 중 18위  
지난해 약 1억 6천만불 수출

◆ 성공비결: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에 맞춰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 구축  
매달 노사협의회 개최하여 쟁점사항 미리 해결  
물가수준에 맞는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및 환경개선에 투자-노사간 신뢰구축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8년 이상 장기근속자  
유치원 건립, 전쟁유공자 주택 건립(80채), 백내장 무료시술 등 사회활동 활발

<2007년도 주요 국가별 외국투자 프로젝트 현황> 141)

|                  | Number<br>of<br>projects | Registered capital (Mill.USD) <sup>(*)</sup> |                             |                           |
|------------------|--------------------------|----------------------------------------------|-----------------------------|---------------------------|
|                  |                          | Total                                        | Of which                    |                           |
|                  |                          |                                              | Newly<br>granted<br>capital | Supplement<br>ary capital |
| <b>TOTAL</b>     | <b>1544</b>              | <b>21347.8</b>                               | <b>18718.3</b>              | <b>2629.5</b>             |
| <b>Of which:</b> |                          |                                              |                             |                           |
| Ireland          | 2                        | 3.9                                          |                             | 3.9                       |

141)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자료이다.

|                          |     |        |        |       |
|--------------------------|-----|--------|--------|-------|
| Iceland                  | 2   | 3.8    | 3.8    |       |
| India                    | 7   | 39.1   | 39.1   |       |
| Bermuda                  | 1   | 15.5   | 15.5   |       |
| Belize                   | 1   | 10.0   | 10.0   |       |
| Brunei                   | 15  | 70.9   | 61.9   | 9.0   |
| Cambodia                 | 2   | 2.0    | 2.0    |       |
| Canada                   | 6   | 146.0  | 145.0  | 1.0   |
| F.R. Germany             | 16  | 168.0  | 166.2  | 1.8   |
| China. PR                | 130 | 572.5  | 553.7  | 18.8  |
| Czech Rep. of            | 5   | 13.3   | 13.3   |       |
| Costa Rica               | 1   | 16.5   | 16.5   |       |
| Hong kong SAR<br>(China) | 73  | 607.4  | 353.5  | 253.9 |
| Macao SAR (China)        | 1   | 18.0   | 18.0   |       |
| Taiwan                   | 230 | 2489.7 | 1798.0 | 691.7 |
| Denmark                  | 11  | 7.3    | 4.3    | 3.0   |
| Netherlands              | 13  | 236.3  | 159.8  | 76.5  |
| Korea Rep. of            | 423 | 5395.4 | 4850.2 | 545.2 |
| United States            | 66  | 388.3  | 358.0  | 30.3  |
| Indonesia                | 5   | 15.3   | 15.3   |       |
| Italy                    | 4   | 49.6   | 49.6   |       |
| Israel                   | 2   | 1.1    | 1.1    |       |
| Laos                     | 1   | 25.0   | 25.0   |       |
| Fed. Russian             | 5   | 12.0   | 9.9    | 2.1   |
| Malaysia                 | 46  | 1172.6 | 1090.4 | 82.2  |
| Mauritius                | 3   | 9.9    | 6.9    | 3.0   |
| Norway                   | 1   | 3.2    | 3.2    |       |
| Japan                    | 159 | 1385.9 | 951.6  | 434.3 |
| New Zealand              | 2   | 35.3   | 35.0   | 0.3   |
| Australia                | 36  | 215.4  | 190.4  | 25.0  |
| Panama                   | 2   | 3.6    | 2.5    | 1.1   |
| Finland                  | 2   | 17.1   | 17.1   |       |
| France                   | 22  | 226.2  | 160.6  | 65.6  |
| Philippines              | 6   | 40.5   | 26.2   | 14.3  |
| Cayman Islands           | 6   | 158.2  | 155.2  | 3.0   |
| Channel Islands          | 2   | 10.5   | 0.3    | 10.2  |
| British Virgin Islands   | 60  | 4410.5 | 4343.2 | 67.3  |

|                                                                             |    |        |        |       |
|-----------------------------------------------------------------------------|----|--------|--------|-------|
| Cyprus                                                                      | 1  | 1.5    | 1.5    |       |
| Thailand                                                                    | 25 | 291.7  | 288.6  | 3.1   |
| Sweden                                                                      | 5  | 2.3    | 2.1    | 0.2   |
| Switzerland                                                                 | 4  | 5.0    | 2.2    | 2.8   |
| United Kingdom                                                              | 18 | 80.5   | 47.1   | 33.4  |
| Samoa                                                                       | 17 | 384.1  | 210.7  | 173.4 |
| Singapore                                                                   | 89 | 2572.3 | 2508.0 | 64.3  |
| Slovenia                                                                    | 2  | 4.0    | 4.0    |       |
| (*) Including supplementary capital of licensed projects in previous years. |    |        |        |       |

《2007년도 지역별 외국투자 프로젝트 현황》<sup>142)</sup>

|                        | Number of projects | Registered capital (Mill.USD) <sup>(*)</sup> |                       |                       |
|------------------------|--------------------|----------------------------------------------|-----------------------|-----------------------|
|                        |                    | Total                                        | Of which              |                       |
|                        |                    |                                              | Newly granted capital | Supplementary capital |
| <b>TOTAL</b>           | <b>1544</b>        | <b>21347.8</b>                               | <b>18718.3</b>        | <b>2629.5</b>         |
| <b>Red River Delta</b> | <b>480</b>         | <b>6485.2</b>                                | <b>5769.4</b>         | <b>715.8</b>          |
| Hà Nội                 | 234                | 2521.8                                       | 2341.7                | 180.1                 |
| Vĩnh Phúc              | 30                 | 1061.6                                       | 951.6                 | 110                   |
| Bắc Ninh               | 35                 | 489.2                                        | 449.4                 | 39.8                  |
| Hà Tây                 | 21                 | 536.7                                        | 535.5                 | 1.2                   |
| Hải Dương              | 45                 | 539.7                                        | 341.6                 | 198.1                 |
| Hải Phòng              | 55                 | 540                                          | 411.5                 | 128.5                 |
| Hưng Yên               | 35                 | 214.9                                        | 201.7                 | 13.2                  |
| Thái Bình              | 2                  | 45.9                                         | 27                    | 18.9                  |
| Hà Nam                 | 13                 | 125.5                                        | 99.5                  | 26                    |
| Nam Định               | 4                  | 5.6                                          | 5.6                   |                       |
| Ninh Bình              | 6                  | 404.3                                        | 404.3                 |                       |
| <b>North East</b>      | <b>51</b>          | <b>570.2</b>                                 | <b>508.2</b>          | <b>62</b>             |
| Hà Giang               | 4                  | 14                                           | 14                    |                       |
| Cao Bằng               | 3                  | 6.8                                          | 6.8                   |                       |

142)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자료이다.

|                            |            |               |               |               |
|----------------------------|------------|---------------|---------------|---------------|
| Tuyên Quang                | 2          | 30            | 30            |               |
| Lào Cai                    | 6          | 37.5          | 37.5          |               |
| Yên Bái                    | 2          | 2.6           | 2.6           |               |
| Thái Nguyên                | 1          | 100           | 100           |               |
| Lạng Sơn                   | 5          | 1.8           | 1.7           | 0.1           |
| Quảng Ninh                 | 12         | 200.6         | 161.7         | 38.9          |
| Bắc Giang                  | 15         | 176.4         | 153.4         | 23            |
| Phú Thọ                    | 1          | 0.5           | 0.5           |               |
| <b>North West</b>          | <b>11</b>  | <b>38.7</b>   | <b>30.7</b>   | <b>8</b>      |
| Lai Châu                   | 1          | 1             | 1             |               |
| Sơn La                     | 3          | 19.1          | 19.1          |               |
| Hòa Bình                   | 7          | 18.6          | 10.6          | 8             |
| <b>North Central Coast</b> | <b>20</b>  | <b>612.2</b>  | <b>600.2</b>  | <b>12</b>     |
| Thanh Hóa                  | 6          | 36.9          | 24.9          | 12            |
| Nghệ An                    | 2          | 5.9           | 5.9           |               |
| Quảng Trị                  | 3          | 8             | 8             |               |
| Thừa Thiên - Huế           | 9          | 561.4         | 561.4         |               |
| <b>South Central Coast</b> | <b>65</b>  | <b>3073.7</b> | <b>2940.5</b> | <b>133.2</b>  |
| Đà Nẵng                    | 22         | 940           | 928.8         | 11.2          |
| Quảng Nam                  | 16         | 288           | 209.9         | 78.1          |
| Quảng Ngãi                 | 2          | 5.8           | 5.8           |               |
| Bình Định                  | 12         | 68.2          | 67.2          | 1             |
| Phú Yên                    | 5          | 1704.3        | 1703.8        | 0.5           |
| Khánh Hòa                  | 8          | 67.4          | 25            | 42.4          |
| <b>Central Highlands</b>   | <b>15</b>  | <b>142.6</b>  | <b>136.1</b>  | <b>6.5</b>    |
| Gia Lai                    | 1          | 1.5           | 1.5           |               |
| Đắk Lắk                    | 1          | 6             | 6             |               |
| Lâm Đồng                   | 13         | 135.1         | 128.6         | 6.5           |
| <b>South East</b>          | <b>805</b> | <b>8501</b>   | <b>6844.5</b> | <b>1656.5</b> |
| Ninh Thuận                 | 5          | 120.1         | 118.6         | 1.5           |
| Bình Thuận                 | 10         | 58.4          | 51.1          | 7.3           |
| Bình Phước                 | 30         | 105.2         | 92            | 13.2          |
| Tây Ninh                   | 22         | 138.9         | 74            | 64.9          |
| Bình Dương                 | 292        | 2258          | 1815.7        | 442.3         |
| Đồng Nai                   | 116        | 2414.8        | 1464.8        | 950           |
| Bà Rịa - Vũng Tàu          | 18         | 1126.9        | 1069.4        | 57.5          |
| TP. Hồ Chí Minh            | 312        | 2278.7        | 2158.9        | 119.8         |

|                                                                                        |           |               |               |             |
|----------------------------------------------------------------------------------------|-----------|---------------|---------------|-------------|
| <b>Mekong River Delta</b>                                                              | <b>91</b> | <b>1742.9</b> | <b>1707.4</b> | <b>35.5</b> |
| Long An                                                                                | 66        | 816.5         | 810.7         | 5.8         |
| Tiền Giang                                                                             | 5         | 127.2         | 116.3         | 10.9        |
| Bến Tre                                                                                | 2         | 68.8          | 68.8          |             |
| Trà Vinh                                                                               | 1         | 5.5           | 0.5           | 5           |
| Vĩnh Long                                                                              | 1         | 16            | 6             | 10          |
| Đồng Tháp                                                                              | 4         | 25.2          | 25.2          |             |
| Cần Thơ                                                                                | 6         | 28.6          | 28.6          |             |
| Hậu Giang                                                                              | 2         | 629           | 629           |             |
| Sóc Trăng                                                                              | 2         | 19.3          | 15.5          | 3.8         |
| Bạc Liêu                                                                               | 1         | 1.8           | 1.8           |             |
| Cà Mau                                                                                 | 1         | 5             | 5             |             |
| <b>Oil and gas</b>                                                                     | <b>6</b>  | <b>181.3</b>  | <b>181.3</b>  |             |
| <sup>(*)</sup> Including supplementary capital of licensed projects in previous years. |           |               |               |             |

《부동산투자프로젝트》 143)

| 사업명           | 사업주체                                     | 내용                                                    | 사업기간(투자비)                  |
|---------------|------------------------------------------|-------------------------------------------------------|----------------------------|
| 띠이호띠이<br>신도시  | T.H.T개발(대우·코오<br>롱·경남·대원·동일하<br>이빌 컨소시엄) | 하노이시 푸리엠지구 60만평에<br>주택 5000가구, 업무·상업시설<br>등 건설        | 2006~2014년<br>(9억달러)       |
| 북양카인<br>신도시   | 북양카인JVC(포스코<br>건설·비나코넵스 50%<br>씩 출자)     | 하띠이성 북양카인 80만평에<br>주택 7600가구, 상업·업무시설<br>등 건설         | 2006~2020년<br>(2조3000억여 원) |
| 금호아시아나<br>플라자 | 금호아시아나플라자<br>사 이 공 (금 호 건 설<br>100% 출자)  | 호찌민시 레두안에 호텔(319<br>실), 아파트(252가구), 오피스<br>(21층) 등 건설 | 2006~2009년<br>(2억2300만달러)  |
| 나베신도시         | GS건설                                     | 호찌민 인근 나베현 106만평에<br>주택 1만7000가구 건설                   | 2009~2020년<br>(미정)         |
| 대원컨타빌         | 대원                                       | 다낭시에 아파트·빌라 1200가<br>구와 쇼핑센터 건설                       | 2006~2014년<br>(8000만달러)    |
| 스카이레이크<br>골프장 | DK ENC vina<br>(한국계 사모펀드)                | 하띠이성에 36홀 골프장, 리조<br>트 건설                             | 2006~2008년<br>(2500만달러)    |
| 드래곤피닉스<br>골프장 | 참빛그룹                                     | 호아빈성에 54홀 골프장 건설                                      | 2006년11월 27일<br>개장         |

143) 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

|                                                                                                     | Number of projects | Registered capital (Mill. USD) <sup>145)</sup> |                       |                       |
|-----------------------------------------------------------------------------------------------------|--------------------|------------------------------------------------|-----------------------|-----------------------|
|                                                                                                     |                    | Total                                          | Newly granted capital | Supplementary capital |
| <b>Total</b>                                                                                        | <b>1544</b>        | <b>21347.8</b>                                 | <b>18718.3</b>        | <b>2629.5</b>         |
| Agriculture and forestry                                                                            | 14                 | 48.3                                           | 22.7                  | 25.6                  |
| Fishery                                                                                             | 2                  | 10.3                                           | 6.7                   | 3.6                   |
| Mining and quarrying                                                                                | 16                 | 262.3                                          | 252.1                 | 10.2                  |
| Manufacturing                                                                                       | 985                | 10882.5                                        | 8771.3                | 2111.2                |
|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 7                  | 9.6                                            | 9.6                   |                       |
| Construction                                                                                        | 73                 | 993.3                                          | 910.8                 | 82.5                  |
|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motor cycles and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 11                 | 129.9                                          | 78.0                  | 51.9                  |
| Hotels and restaurants                                                                              | 38                 | 1968.1                                         | 1883.6                | 84.5                  |
|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 30                 | 356.5                                          | 271.9                 | 84.6                  |
| Financial intermediation                                                                            | 4                  | 32.3                                           | 32.3                  |                       |
| Real estate, renting business activities                                                            | 327                | 6114.8                                         | 5949.8                | 165.0                 |
| Education and training                                                                              | 13                 | 11.6                                           | 9.5                   | 2.1                   |
| Health and social work                                                                              | 12                 | 112.5                                          | 112.5                 |                       |
|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 9                  | 410.3                                          | 402.3                 | 8.0                   |
|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 3                  | 5.5                                            | 5.2                   | 0.3                   |

<sup>145)</sup> Including supplementary capital of licensed projects in previous years.

## 2. 투자법제의 평가<sup>145)</sup>

- 자유주의·자본주의와 상이한 정치 및 법제도 아래에서 외국투자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외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옴(예를 들어 노동법 및 세법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 인센티브제도

144)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자료이다.

145)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economy/laws/index.jsp>(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를 시행하고 있음)

- 새로운 투자법은 기존 외국투자법에 비해 보완된 측면이 많이 있으나, 아직도 내국투자자와 차별이 있으며, 불분명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외국투자자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을 통해 보완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 새로운 기업법은 베트남 내국기업에 대하여는 다소 규제가 강화된 반면, 외국계기업에는 종래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여튼 위와 같은 법제의 변화가 곧바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구현이나 법률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공산당의 정치적 결정이 법률보다 우위에 서있던 사회주의 국가의 법관습으로 부터는 적지 않게 탈피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음

<투자관련 법적 규율><sup>146)</sup>

|                     | <i>Investment</i> | <i>Land</i> | <i>Construction</i> | <i>Real estate</i> | <i>Environment</i> | <i>Housing</i> | <i>Business</i> |
|---------------------|-------------------|-------------|---------------------|--------------------|--------------------|----------------|-----------------|
| Law                 | 1                 | 1           | 1                   | 1                  | 1                  | 1              | 1               |
| Ordinance           | 0                 | 0           | 0                   | 0                  | 0                  | 0              | 0               |
| Decree              | 4                 | 11          | 13                  | 1                  | 7                  | 1              | 2               |
| Circular            | 1                 | 14          | 17                  | 0                  | 8                  | 5              | 1               |
| PM's decision       | 1                 | 2           | 7                   | 0                  | 2                  | 2              | 0               |
| Minister's decision | 4                 | 11          | 6                   | 1                  | 4                  | 2              | 0               |
| 합계                  | 11                | 39          | 44                  | 3                  | 22                 | 11             | 4               |

146) Nguyen Dinh Cu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VIETNAM'S ENTERPRISE LAW AND INVESTMENT LAW FROM PERSPECTIVE OF REGULATORY REFORM, 2008 International Forum on Economic Transition, p. 3.

### 3. 증권법의 평가

- 새로운 증권법은 기존의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명령(Decree on Securities and Securities Market)의 바탕 위에서 증권시장에 관한 제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증권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 사이, 그리고 국내증권회사와 외국증권회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허가서 발급 등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 등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음<sup>147)</sup>

### 4. 기업형태의 전환 · 재등록

- 외국계 투자기업은 2년 내(2008년 6월 30일까지)에 새로운 기업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기업형태로 전환 · 재등록하거나, 아니면 재등록하지 않고 기존의 투자허가서에<sup>148)</sup> 명시된 대로 정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히 신규투자의 필요가 없는 100%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법에 따른 복잡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새로운 투자법과 새로운 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과 종전의 외국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음
- 계획투자부의 외국투자국에 의하면, 재등록을 행한 기업은 약 대상 기업의 6.6%, 460社로 대단히 적은 숫자임

147) 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

148) 투자증명서를 종전에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licence)라고 하였다.

-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계획투자부는 외자계기업의 투자승인서 재등록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됨

<기존 기업의 재등록 후의 기업형태의 예>

| 기존 기업형태               | 재등록 후의 기업형태    |
|-----------------------|----------------|
| 단독출자 100% 외국투자기업      | 1인 유한회사        |
| 2명 이상의 출자 100% 외국투자기업 | 사원 2인 이상의 유한회사 |
| 합작회사                  | 주식회사           |
| 외국투자주식회사              |                |

## 5. 국영기업의 민영화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1년 총리 직속으로 ‘국영기업개혁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 측에 따르면 2001-2005년간 총 5,655개의 국영기업 가운데 3,349개의 기업이 구조조정 되었고, 나아가 그 가운데 2,188개의 기업이 민영화(주식화)되었으며, 252개의 기업이 청산되었고, 416개의 기업이 합병되었다고 함
-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된 목적은, 우선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제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지출의 감소이고, 다음으로 대외적으로는 정부 부문의 영향력 축소를 통한 WTO, 세계은행 규정의 준수 효과, 개혁개방정책의 전시 효과 등임
- 베트남 대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2007년 국영기업의 주식회사전환에 관한 명령(No. 109/2007/ND-CP)에 따라 주식시장을 통하여 주식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음
-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대부분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방식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증권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sup>149)</sup>

- 베트남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증권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투자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의 주식화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까지 4대 국영은행을 포함한 국영기업에 대한 주식화가 완료될 것임

## 6. 금융정책의 전개

- 시장경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정책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이행함
- 환율의 안정이 최우선이므로 금융정책에는 여러 제한이 많음
-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반관반민 형태의 상업은행이 다수 설립되었지만, 적지 않은 은행이 자기 자본비율이 12%에 불과하고, 여신심사기능의 미비, 비합리적인 용자 관행, 과당경쟁 등으로 부실여신이 증가되어 오다가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실채권 문제가 표면화됨<sup>150)</sup>
- 앞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불가결하고 또한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149) 법무법인 정평 임재철 변호사의 발표자료.  
[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080220\\_legal%20problem%20solution\\_J&P1.pdf](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080220_legal%20problem%20solution_J&P1.pdf).

150)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관자본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9개 은행이 있는데 (Firs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CB), Gia Dinh Bank, Pacific, My Xuyen Bank, PG Bank, Kien Long, Vietnam Thuong Tin Bank, Dai Tin, Dai A),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다른 은행에 인수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7. 환율제도

- 베트남에서의 외환거래는 전부 베트남국가은행(SVB)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 1999년 2월부터 베트남국가은행(SBV)은 환율의 결정을 보다 시장경제에 근접하기 위하여 전 영업일의 시장평균시세의 공표를 개시함
- 베트남은 제한된 관리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시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의 외환시장 관리가 매우 폐쇄적인 상황이며, 지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연평균 1.8%의 평가절차 추세를 이어감
- 기업 등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에 대한 중앙은행에 대한 매각의무는 2003년 4월부터 폐지됨

《연도별 환율변화 추이》(VND/US\$)<sup>151)</sup>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5,646 | 15,777 | 15,916 | 16,054 | 16,030 |

## 8. 기업회계 관련 규정의 정비

- 베트남은 1990년 이후 경제개방과 더불어 회계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최근 많은 회계 관련 규정들이 발표됨
- 현재 베트남 회계기준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2003년의 회계법(Accounting Law), 베트남회계시스템(Vietnam Accounting System), 회계기준서(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 및 다양한 예규(Official Letter)로 구성되어 있음
- 베트남의 회계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임

---

151) 베트남 통계청 자료임.

## 9. 법인세의 인하 스케줄

- 조세체계에 있어서,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특별소비세(SCT), 천연자원세, 관세, 자본양도세 등은 전부 국세로 지방세가 아님
-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계기업은 베트남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세법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데, 정책적 배려에서 외자계기업에게는 법인세 등의 각종 세금감면조치가 마련되어 있음(법인세의 경우 Decree No. 24/2007/ND-CP 참조)
- 기준 법인소득세율은 28%이었는데(2004년 1월부터), 이를 3% 인하하여, 25%로 하는 2008년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인세법(No. 14/2008/QH12)이 통과하였는바,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국가의 수입은 상당히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생산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인세법 주요 변경 내용>

|           | 현행            | 개정                                                                                                                         | 참고                                |
|-----------|---------------|----------------------------------------------------------------------------------------------------------------------------|-----------------------------------|
| 기준세율      | 28%           | 25%                                                                                                                        | 3% 인하                             |
|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 포함      | 개인사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로 과세                  |
| 우대세율      | 10%, 15%, 20% | 10%, 20%                                                                                                                   | 15% 우대세율 폐지                       |
| 면제 및 감면기간 | 2년부터 9년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우대세율의 경우 4년 면제, 9년 50% 감면</li> <li>- 20% 우대세율의 경우 2년 면제, 4년 50% 감면</li> </ul> | 대폭적으로 축소·폐지                       |
| 시점        | 최초 과세소득 발생시   | 최초 매출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4년도부터 면제 및 감면 강제 적용                                                                       | 3년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제 및 감면기간을 유지하지 않음 |

## 10. 관세의 인하 스케줄

- 2001년 7월 12일자 수출입관세법을 기본으로 하여, 2005년 6월 14일자 개정 수출입관세법(No. 45/2005/QH11)이 시행되고 있음
- 수출입관세법은 베트남에 수출입 또는 통과되는 상품의 관세와 수출방법에 대한 국가관리 및 세관업무와 그 업무를 행하는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계기업은 외국으로부터 설비나 부품·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관세법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됨
- 투자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수단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됨(투자법 제 33조 및 정부의 수출입관세법 시행령 Decree No.149/2005/ND-CP 참조)
- 재무부는 2007년 6월 14일에 수출입관세의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Circular No. 59/2007/TT-BTC)을 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투자우대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은 수입관세를 면제함
- 2007년 이후 5년부터 7년 사이에 평균 관세율을 17.4%에서 13.4%로 인하할 예정

《관세율 인하의 예》

| 품목                  | 현재   | 2012년 | 2014년 |
|---------------------|------|-------|-------|
| TV                  | 30%  |       | 0%    |
| 오토바이<br>(125-150cc) | 95%  | 75%   |       |
| 승용차                 | 100% | 75%   |       |

- 특히 섬유·방직, 의료기기, 항공기, 화학제품, 건설기재 등에 관하여 WTO 가맹국으로 완전 내지는 일부의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2007년 이후 3년부터 5년간 사이에 관세율 인하를 실시

- 이로 인하여 베트남에의 수출 기회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

## 11. 외국인 주택소유제도

- 베트남 국회는 2008년 6월 3일 외국인주택소유법(Resolution No. 19/2008/NQ-QH12 : Pilot Scheme Permitting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Purchase and Own Residential houses in Vietnam)을 통과시킴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험적으로 5년간 시행함(다만, 효력이 종료한 뒤에도 외국인은 주택소유증명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주택을 사용할 수 있음)

<주요 내용><sup>152)</sup>

| 외국인(법인)의 범위                                                 | 조건                                                  | 소유기간 등                                                                                                                                                                                                           |
|-------------------------------------------------------------|-----------------------------------------------------|------------------------------------------------------------------------------------------------------------------------------------------------------------------------------------------------------------------|
| 개인 투자자(직접투자자 포함)<br>또는 외국법인의 대표                             | 1년 이상 거주허가를 받아 베트남에 살고 있으면서, 외교적인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1채만 소유 가능</li> <li>- 주택소유권증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50년</li> <li>- 소유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분(매각, 기부 등)해야 함</li> <li>* 동기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주택소유권증서가 회수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li> </ul> |
| 베트남에 공헌한 자로서 국가주석으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총리에 의해 결정된 자                  |                                                     |                                                                                                                                                                                                                  |
| 석사 이상 학위자로서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 경제 분야에서 근무 중인 자 |                                                     |                                                                                                                                                                                                                  |
| 베트남인과 결혼한 자                                                 |                                                     |                                                                                                                                                                                                                  |
| 부동산사업 법인을 제외한 외국계 법인으로서 임직원용을 위한 주택이 필요한 법인                 | 투자허가서를 가지고 있을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허가서 기간 동안 복수의 아파트 소유 가능</li> <li>- 투자허가서상 기간종료, 법인청산 등의 경우 투자법, 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이 처리됨</li> </ul>                                                                    |

152) 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주택소유기간은 주택소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최장 50년간 임
-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소유할 수 있는 것은 투자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투자활동을 하는 자,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자, 수상의 결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특별한 공헌을 인정받은 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사회·경제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외자계 기업(부동산사업을 제외)이 사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됨
- 또한, 외국인이 아파트 구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 허용은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조건이 까다로우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베트남 투자시 비용측면에서 베트남이 모든 부분에서 저렴하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하며, 현 시세에 맞는 세밀한 비용계산이 필요함<sup>153)</sup>

## 12. 외국기업의 지점 · 주재원사무소 설립

- 외국 기업으로서는 지점이나 주재원사무소 설립증명을 받아 지점 · 주재원사무소를 통하여 베트남 시장의 진출 활로를 찾을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06년 7월 25일 물품매매 또는 물품매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외자계기업의 주재원사무소와 지점에 관한 개정 상법의 새로운 시행령(Decree No.

---

153) 베트남 뉴스, CBRE Vietnam, 코리아비즈니스센터  
([http://www.kotra.or.kr/wps/portal/tradesite?site\\_cd=01005&site\\_gubun\\_cd=1039122](http://www.kotra.or.kr/wps/portal/tradesite?site_cd=01005&site_gubun_cd=1039122)).

72/2006/ND-CP)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종전 2000년 규율(Decree No. 45/2000/ND-CP)보다 엄격해짐

- 우선, 주재원사무소에 관하여는(제4조),
  - 5년의 활동기간제한이 부활되었고(종래 규정이 없었음),
  - 설립신청절차도 복잡해짐
  - 주재원사무소 설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그 시점에서 본국에서 최저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필요함
- 지점(branch)에 관하여도,
  - 5년의 활동기한제한이 규정된 것 이외에
  - 본국에서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추가됨
- 다만, 은행, 용자, 법률서비스,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의 사업을 행하는 외국기업은 위 시행령의 적용대상 밖이고, 그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함(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 13. 파산제도

- 1993년에 기업파산법(Law on Business Bankruptcy)이 성립함
-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파산신청은 152건이고, 그 가운데 46개 기업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음
- 종전 파산법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로부터 국제관행에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었음
- 2004년 6월 15일에 성립된 새로운 파산법(Bankruptcy Law)도<sup>154)</sup> 적정, 명확성이 결여되어 종전의 기업파산법과 비교하여 그다지 개선된 것은 아님
- 외자계기업의 관할 파산법원은 베트남에 있어서 본 영업소를 가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급 인민법원임(파산법 제7조 제3항)

---

154) No. 21/2004/QH11.

## 14. 우리의 대응

### 1) 투자에 있어서 과제

- 법체계가 완전히 완비되지 않음
- 여전히 투명성과 보편성이 낮고, 복잡한 절차(건축허가, 환경평가 등)<sup>155)</sup>
-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음
- 업종별(Business Line)로 각각 투자제한이 상이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
- 제조업은 비교적 투자가 수월하고 서비스업은 투자에 있어서 법률적 제한이 보다 많음
- 최근 환경문제가 부각됨(2005년 11월에 환경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sup>156)</sup>
- 업종 가운데 합작회사의 설립이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음

### 2) 투자형태 및 회사형태의 선택

#### (1) 투자형태

- 투자형태의 장단점에 따른 적절한 형태 선택 필요
- 합작형식은 토지와 관련된 투자(오피스 빌딩 건설 등)를 할 때에 베트남 측이 토지를 출자하여 합작하는 경우 및 100% 내수판매 대상 투자를 할 때에 베트남 시장에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의 합작

---

155) 다음과 같은 9가지 “zeros”를 예로 들 수 있다. Insufficiency, unclarity, inspecificity, inconsistency, intransparency and unpredictability, unreasonability, inefficiency and unenforce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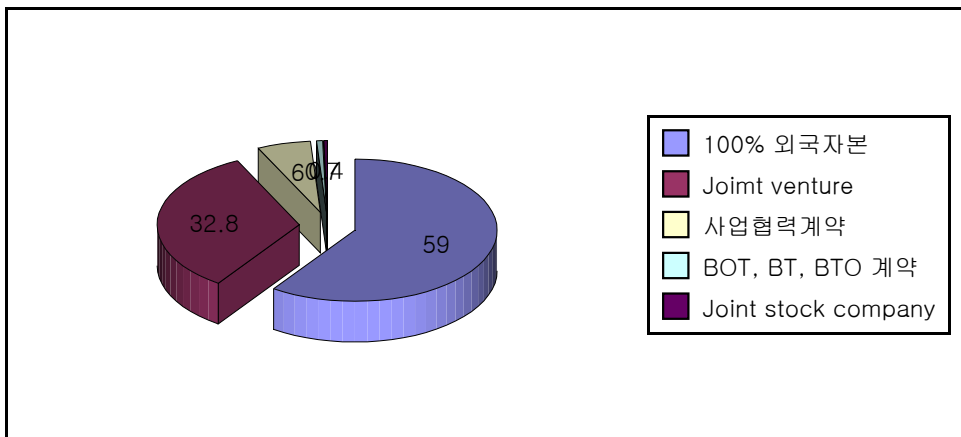
156) No. 52/2005/QH11.

등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sup>157)</sup>

《투자형태의 장단점》<sup>158)</sup>

| 구분     | 장점                                                                                                                                                   | 단점                                                                                                                                   |
|--------|------------------------------------------------------------------------------------------------------------------------------------------------------|--------------------------------------------------------------------------------------------------------------------------------------|
| 합작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인력, 생산라인, 판매구조 등 이용으로 초기투자부담 경감</li> <li>▶ 현지 파트너의 조력으로 내수시장 진입용이</li> <li>▶ 사업인허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와 의견 조정 필요</li> <li>▶ 경영상 비효율 발생 우려</li> <li>▶ 투자이익 독점 불가</li> <li>▶ 기술유출의 우려</li> </ul> |
| 단독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의 경영능력 발휘</li> <li>▶ 투자이익 독점화 가능</li> <li>▶ 기술, 정보유출 방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제한 분야 내수시장 제약</li> <li>▶ 초기 투자비용 부담</li> <li>▶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장시간 소요</li> </ul>              |
| 사업협력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초기투자 불필요</li> <li>▶ 사업기간의 설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 법인격이 없어 분쟁 가능</li> <li>▶ 독자적으로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li> </ul>                            |

《100% 외국자본 투자형태의 증가》



157) 종전의 외국투자법에서는 합작투자형식의 경우는 주요한 의사결정(예를 들어 정관 개정이나 대표이사 선임 등)이 만장일치제라는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베트남 측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영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158) 자세히는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로드맵(2007), 273면 참조.

대한전선은 베트남의 높은 잠재력을 인지하고 2002년부터 투자진출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마땅한 현지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베트남 최대 통신케이블 업체인 SACOM사와 2005년 11월 29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대한전선이 베트남에 진출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목적이다. 전선사업은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고도 성장기에 진입한 베트남에서 매우 유망한 산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수출기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이다. 전선이 대량으로 필요한 중동, 아프리카로의 수출에 베트남이 한국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인적자원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우수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한전선은 이러한 투자동기를 가지고 2002년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지 파트너 물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5년 SACOM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 성공한다. 2800만 달러의 자본금을 투입하여 설립된 TSC(Taihan Sacom Cable Company Ltd., 대한전선의 현지법인명)는 대한전선과 SACOM이 각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 통탄 산업단지 45,000평 부지에 공장을 설립한 후 2006년 11월부터 통신케이블 판매를 시작해 그 해 바로 순이익을 냈으며, 2007년 7월부터는 전력케이블 생산을 시작했다.

#### □ 성공요인

##### 적격 합작파트너 발굴과 상호 신뢰관계 구축

베트남에서 합작투자란 가능하면 기피하려고 하는 투자형태이다. 이는 파트너사의 재정능력 부족, 기업 경영방식 상이, 느린 의사결정 등에서 비롯되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신뢰관계 부족에 기인한다.

대한전선과 SACOM은 서로 현금투자(대한전선 1960만 달러, SACOM 840만 달러)를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작형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상 한국측은 현금, 베트남 측은 토지를 현물 출자해 실질적으로 베트남 측은 토지만을 제공하고 경영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SACOM은 현금투자를 함으로써 자금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합작에 대한 진지성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대한전선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SACOM은 호치민주식시장 1호 상장기업으로 베트남 정부지분이 35%인 국영기업이다. SACOM의 내수시장 주 고객이 정부인만큼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대한전선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TSC는 가장 이상적인 합작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사장은 대한전선, 부사장은 SACOM, 회계책임자는 SACOM, 부회계책임자는 대한전선이 맡음으로써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협력 구조를 구축했으며, 합작계약서에 근거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간에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다.

159) <http://www.ois.go.kr/portal>에서 인용함.

### 사전준비는 철저히, 경영은 투명하게

대한전선은 2002년 초부터 베트남의 발전상을 토대로 진출을 검토했고, 내수와 수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합작사 설립으로 방향을 잡았다. 타당성조사 및 적격 파트너 선정을 위해 4년이란 기간에 거쳐 철저히 준비한 결과, 합작파트너가 정해지자마자 빠른 속도로 베트남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TSC는 공장 건설 시 공사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진행했고, 베트남에서 관행적으로 오고 가는 뇌물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줬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투명경영, 정도경영은 합작파트너 간 신뢰를 구축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베트남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술한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는 견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 시사점

대한전선은 처음부터 베트남 투자에 높은 관심이 있었으나, 결코 서둘러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원했던 적격 파트너를 찾은 후에도 파트너에 끌려가지 않았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시작된 관계는 베트남 업체와의 합작 시 보기 힘든 공동 현물출자를 이끌어 내는 등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6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나, TSC의 하성임 법인장은 비록 대한전선이 대주주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합작투자의 경우 파트너 간 신뢰가 깨지면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베트남 최대 국영케이블 회사인 SACOM사와의 합작투자에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합작투자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바로 파트너 간의 신뢰임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진출 일본기업의 투자형태》

|         | 합작사업 · 내수형                                   | 100% 독자출자 수출가공형                         |
|---------|----------------------------------------------|-----------------------------------------|
| 조립산업    | 자동차(토요다 등)<br>오토바이(혼다 등)<br>가전제품(소니, 파나소닉 등) | 전자기기(후지쯔 등)<br>사무기기(캐논 등)               |
| 부품산업    | 타이어(요코하마고무 등)<br>배터리(GS)                     | 자동차용 부품(Yazaki)<br>전자기기(HOYA 등)         |
| 그 밖의 경우 | 시멘트 · 유리<br>위생도기(TOTO 등)                     | 의료기기(TRRUMO 등)<br>식품(Ajinimoto, Yakult) |

## (2) 회사형태

- 현행 베트남 기업법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외국투자자가 이용하고 있고 또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종류는 크게 1인 유한회사, 2인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의 3가지 종류가 될 것임<sup>160)</sup>
- 1인 유한회사(Sol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음
- 2인 이상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with more than one member) :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에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知人들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로,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음(다만, 최고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

160)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7), 16면.

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는 총 사원지분의 65%를 기준으로 함)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 :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이 필요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 없음
  -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가 자유로움
  -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관련된(특히 재무) 사안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많음
  - 일반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의 65%를 기준으로 함<sup>161)</sup>

### 3) 전망

<베트남 투자유의사항 10계명><sup>162)</sup>

|    |                        |
|----|------------------------|
| 1  | 투자지역 선택에 신중하라          |
| 2  |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를 사전 확인하라   |
| 3  | 사회주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데 유의하라 |
| 4  | 투자비용 급등과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라  |
| 5  | 열악한 인프라 사정을 감안하라       |
| 6  | 구인난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라     |
| 7  | 늘어나는 파업에 대처하라          |
| 8  | 공단부지 확보에 유념하라          |
| 9  | 원부자재 조달여건을 꼼꼼히 따져라     |
| 10 | 환경규제 강화에 조심하라          |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세계 각국의 베트남 투자와 베트남 내수시장의 확대가 베트남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진출을 모

161) WTO 가입에 관한 의정서 비준안에 대한 국회 결의(Resolution)에 의해 WTO 양허안 서비스업 일정에 포함된 업종은 51%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권해석을 하였다.

162)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2008년 5월에 발표한 것임.

색하여야 할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외국인투자의 대형화 및 첨단업종으로의 이동에 따라 베트남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에는 베트남 인프라건설프로젝트 및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또는 이와 연계한 수출기회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현재 베트남 정부는 무역수지적자 해소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향후 긴축경제정책을 지속 또는 강화할 수 있으며 수입제한조치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sup>163)</sup>

---

163) 이러한 전망은 최근의 KOTRA,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2008. 9)을 인용한 것으로 연구자 개인의 의견은 아니다.

# 참 고 문 헌

계경문, 베트남의 법제에 관한 연구 :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2004)

고동원, 베트남 금융관계법의 최근 제·개정 동향과 시사점, 저스티스(2005. 8)

권재열, 베트남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적 환경, 비교사법 제3권 제1호(1996)

법무부, 베트남 改革開放法制 概觀(2005)

박원석,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13권(2002)

서헌제 외 2인, 베트남 기업법, 법학논문집(2008. 8)

아세아법연구소, 베트남토지법제에 관한 연구(2007)

이재열,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 상법과 기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2006. 3)

이재열, 베트남 파산법에 대한 개관 : 2004년 파산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2007. 3)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로드맵(2007)

KOTRA, 베트남 투자 A to Z(2008)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2007)

KOTRA,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2008. 9)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2008)

Nguyen Dinh Cu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VIETNAM'S ENTERPRISE LAW AND INVESTMENT LAW FROM PERSPECTIVE OF REGULATORY REFORM, 2008 International Forum on Economic Transition

Luật Đầu Tư Và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2007)

Luật Doanh nghiệp(2007)

Giải đáp những câu hỏi khó của các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Luật Đầu tư(2007)

Giải đáp những câu hỏi khó của các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Luật Doanh nghiệp(2007)

=인터넷 사이트=

<http://www.vietlaw.gov.vn/LAWNET/index.html> : 베트남 법령 검색

[http://www.vietnamlaws.com/online\\_database.aspx](http://www.vietnamlaws.com/online_database.aspx) : 베트남 법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http://www.luatvietnam.vn> : 베트남 법령 자료

<http://news.vnanet.vn/vietnamlaw/index.asp> : 베트남 법령 자료

<http://fia.mpi.gov.vn/Default.aspx> :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외국투자국(Foreign Investmetn Agency)

<http://www.gso.gov.vn> : 베트남 통계청

<http://www.customs.gov.vn/Default.aspx> : 베트남 관세청

<http://www.ssc.gov.vn> :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main/index.jsp> : 주베트남 대사관

<http://www.kotra.or.kr/wps/portal/dk> : 한국무역진흥공사

<http://www.chaovietnam.co.kr/index.php> : 짜오 베트남(베트남 정보 웹진)

<http://www.ois.go.kr> : 해외진출정보시스템(해외투자 유관기관의 ONE-STOP 통합정보)

<http://www.buyusa.gov/vietnam> : The U.S. Commercial Service in Vietnam



2008. 11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전 병 서